

제36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7월12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 간호·조산법안
4. 간호법안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2.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53.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물리치료사법안
7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
- 23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
- 233.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질병관리본부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 국민연금공단
 -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9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3. 간호·조산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규희·신창현·김세연·김병기·변재일·전재수·이인영·유성엽·기동민·원혜영·윤종필·인재근·정성호·김관영·박주선·박지원·김광수·오제세·안호영·윤소하·신경민·이상현·정춘숙·심기준·송갑석·이상민·천정배·신동근·이용호·서영교·김종희 의원 발의) 19
- 4. 간호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성찬·김영우·정용기·김기선·윤종필·나경원·김광립·김승희·이은권·정우택·박대출·정동영·경대수·오신환·이장우·이명수·송언석·유재

- 중 · 송석준 · 이완영 · 박완수 · 이채익 · 김한표 · 박맹우 · 백승주 · 정성호 · 여상규 · 이만희 · 장석
 춘 · 김재경 · 권성동 · 김상희 · 이용호 의원 발의) 1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김중희 · 김성찬 ·
 이종명 · 박덕흠 · 김현아 · 이명수 · 황주홍 · 민경옥 · 여상규 의원 발의) 19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조승래 · 기동민 · 이동섭 · 이용득 · 이규희 · 강훈식 · 윤호중 · 박홍근 · 신창현 · 이석현 · 안민석 의
 원 발의) 19
7.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황주홍 · 이동섭 · 홍문표 · 유성엽 ·
 이상현 · 정유섭 · 천정배 · 이용주 · 위성곤 · 성일중 · 오영훈 · 윤영일 · 주승용 의원 발의) 19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최인호 · 송옥주 · 강훈식
 · 정세균 · 이철희 · 고용진 · 김민기 · 이춘석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9
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오영훈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의원 발의) 19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19
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김현권 · 백재현
 · 변재일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0
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최인호 · 송옥주 · 강훈식 · 정세균
 · 이철희 · 고용진 · 김민기 · 이춘석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0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위성곤 · 안호영 · 김해영 · 우원식
 · 노웅래 · 강훈식 · 김병기 · 어기구 · 소병훈 의원 발의) 20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이완영 · 박덕흠 · 박인숙 · 박성중
 · 김석기 · 박완수 · 김명연 · 신보라 · 최교일 의원 발의) 20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 · 신보라 · 김선동 · 원유철 · 서청원
 · 이종명 · 정유섭 · 윤영석 · 홍문중 · 이명수 의원 발의) 20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 · 조훈현 · 김광립 · 박대출 · 홍철호
 · 박명재 · 김선동 · 이채익 · 주호영 · 김한표 의원 발의) 20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안호영 · 최재성 · 신창현 · 한정애
 · 정인화 · 김종민 · 박찬대 · 소병훈 · 윤소하 의원 발의) 20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김병욱 · 임재훈 · 채이배 · 황
 주홍 · 주승용 · 김중희 · 정세균 · 강훈식 · 이찬열 · 하태경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70) 20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김병욱 · 임재훈 · 황주홍
 · 주승용 · 김중희 · 정세균 · 채이배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94) 20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윤종필 · 이명수 · 성일중 · 곽대훈
 · 백승주 · 문진국 · 조훈현 · 주광덕 · 김석기 · 박덕흠 · 이철규 · 김종석 의원 발의) 20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 · 원유철 · 이명수 · 정우택 · 성일중
 · 박명재 · 박덕흠 · 박인숙 · 임이자 · 이종명 의원 발의) 20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황주홍 · 이동섭 · 홍문표 · 유성엽 ·
 이상현 · 정유섭 · 천정배 · 이용주 · 위성곤 · 성일중 · 오영훈 · 윤영일 · 주승용 의원 발의) 20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황주홍 · 주승용 · 채이배
 · 신용현 · 임재훈 · 김관영 · 김동철 · 김광수 · 김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54) 20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중 · 김선동 · 김성원 · 경대수 · 윤종필 의원 발의) 20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신창현 · 강훈식 · 김철민 · 맹성규

· 이학영 · 이규희 · 정춘숙 · 김성수 · 박주민 의원 발의)	20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안호영 · 기동민 · 안민석 · 강훈식 · 전해숙 · 이규희 · 정세균 · 신동근 · 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61)	20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41)	20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20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신동근 · 소병훈 · 이용득 · 김상희 · 박완주 · 신창현 · 김병기 · 유동수 · 민홍철 · 어기구 · 김철민 · 박정 · 김현권 · 심기준 · 맹성규 · 한정애 의원 발의)	2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김혜영 · 박홍근 · 이철희 · 이규희 · 유동수 · 박광온 · 박찬대 · 전해숙 · 김성수 의원 발의)	20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김성찬 · 박덕흠 · 이완영 · 김상훈 · 박성중 · 박인숙 · 조정태 · 광상도 · 이명수 의원 발의)	20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명연 · 김재원 · 김성원 · 박성중 · 김승희 · 박덕흠 · 윤종필 · 박명재 · 이은권 · 김성찬 · 성일중 · 송희경 · 김세연 · 김순례 의원 발의)	21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이찬열 · 주승용 · 김관영 · 임재훈 · 채이배 · 황주홍 · 김중회 · 송석준 의원 발의)	21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 · 윤상직 · 박인숙 · 박명재 · 박덕흠 · 최연혜 · 김석기 · 이명수 · 정태욱 · 박맹우 의원 발의)	21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황주홍 · 정인화 · 정춘숙 · 강훈식 · 김수민 · 장정숙 · 김성찬 · 윤준호 · 조배숙 · 유성엽 · 손금주 · 이찬열 의원 발의)	21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강훈식 · 김중회 · 박정 · 송갑석 · 신창현 · 오영훈 · 유승희 · 윤후덕 · 이종걸 · 정동영 의원 발의)	21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21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권미혁 · 김경협 · 박선숙 · 박정 · 송옥주 · 송영길 · 윤후덕 · 이석현 · 이종걸 · 이찬열 · 한정애 의원 발의)	21
3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1
4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정태욱 · 유기준 · 이완영 · 김석기 · 김태흠 · 강효상 · 김규환 · 민경욱 · 김세연 의원 발의)	21
4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정춘숙 · 기동민 · 신창현 · 송갑석 · 윤호중 · 윤후덕 · 소병훈 · 백혜련 · 고용진 · 인재근 의원 발의)	21
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조승래 · 신동근 · 윤일규 · 정춘숙 · 김종민 · 박홍근 · 이용득 · 박정 · 인재근 · 김경협 · 정세균 · 신창현 · 오제세 · 전현희 · 김상희 · 우원식 · 금태섭 · 신경민 · 맹성규 · 박찬대 의원 발의)	21
4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현재 · 박덕흠 · 정유섭 · 송언석 · 이현승 · 홍철호 · 박순자 · 윤종필 · 이완영 의원 발의)	21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경대수 · 김명연 · 김선동 · 김순례 · 김정재 · 윤상현 · 윤영석 · 이양수 · 이은권 · 임이자 · 함진규 의원 발의)	21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제윤경 · 임종성 · 심재권 · 이종걸 · 서삼석 · 설훈 · 김철민 · 윤준호 · 박찬대 의원 발의)	21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	

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1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위성곤 · 이개호 · 이용득 · 신동근 · 신창현 · 윤관석 · 윤영일 · 이찬열 · 노웅래 의원 발의)	21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장정숙 · 박정 · 송갑석 · 백혜련 · 김병기 · 신창현 · 박지원 · 서영교 · 인재근 의원 발의)	21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윤소하 · 장병완 · 천정배 · 박주현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정인화 · 최도자 의원 발의)	21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 · 문진국 · 주호영 · 박덕흠 · 민경욱 · 이종명 · 염동열 · 이종구 · 조경태 · 송희경 의원 발의)	21
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임종성 · 서형수 · 맹성규 · 윤후덕 · 김상희 · 조정식 · 박정 · 이용득 · 강훈식 의원 발의)	21
52.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김민기 · 맹성규 · 유동수 · 홍익표 · 김상희 · 정춘숙 · 강훈식 · 윤일규 · 송갑석 · 김해영 · 인재근 · 김성수 · 신창현 · 오제세 의원 발의)	21
53.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천정배 · 정인화 · 김경진 · 조배숙 · 김중회 · 유성엽 · 장병완 · 황주홍 · 이찬열 의원 발의)	22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 · 신창현 · 민홍철 · 기동민 · 이규희 · 표창원 · 윤후덕 · 고용진 · 최재성 · 안호영 · 임종성 의원 발의)	22
5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 · 유동수 · 정성호 · 이종명 · 박주민 · 김진태 · 이개호 · 소병훈 · 박완수 · 김현권 의원 발의)	22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제윤경 · 전재수 · 심재권 · 정춘숙 · 표창원 · 김병기 · 이종걸 · 윤후덕 · 남인순 · 노웅래 의원 발의)	22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강창일 · 고용진 · 김민기 · 김병기 · 소병훈 · 송갑석 · 송옥주 · 신창현 · 유동수 · 윤호중 · 윤후덕 · 이찬열 · 인재근 · 전해숙 · 최재성 의원 발의)	22
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박찬대 · 김중회 · 최도자 · 김경진 · 유의동 · 천정배 · 정인화 · 황주홍 · 이찬열 의원 발의)	22
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유동수 · 신창현 · 이규희 · 송갑석 · 김성수 · 소병훈 · 김해영 · 오영훈 · 임종성 · 인재근 의원 발의)	22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김중회 · 박지원 · 유성엽 · 장정숙 · 정인화 · 천정배 · 황주홍 · 이용호 · 정동영 · 금태섭 의원 발의)	22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이동섭 · 박선숙 · 최도자 · 김삼화 · 정동영 · 유동수 · 이상현 · 강병원 · 김관영 · 추혜선 의원 발의)	22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권칠승 · 장정숙 의원 발의)	22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여영국 · 손혜원 · 박주현 · 채이배 · 김수민 의원 발의)	22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 · 임재훈 · 권은희 · 채이배 · 김수민 · 최도자 · 김삼화 · 이동섭 · 황주홍 · 이찬열 · 조배숙 · 윤종필 · 박선숙 · 장병완 · 정춘숙 의원 발의)	22
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 · 강석호 · 김순례 · 김종석 · 김태흠 · 성일중 · 신상진 · 유민봉 · 정유섭 · 정중섭 · 추경호 의원 발의)	22
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박정 · 김병기 · 전해숙 · 윤종필 · 김상희 · 이학영 · 박순자 · 정춘숙 · 박완주 · 제윤경 · 이철희 · 백혜련 · 남인순 의원 발의)	22
6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이규희 · 기동민 · 신창현 · 박홍근 · 송갑석 · 김성수 · 소병훈 · 김영호 · 맹성규 · 정춘숙 · 신경민 의원 발의)	22

6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김용태 · 문진국 · 권성동 · 정갑윤 · 김재경 · 김세연 · 정운천 · 이철규 · 김중로 · 윤한홍 의원 발의)	22
6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김중희 · 박지원 · 유성엽 · 장병완 · 장정숙 · 정인화 · 천정배 · 황주홍 · 이용호 · 정동영 의원 발의)	22
70. 물리치료사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여영국 · 이정미 · 정춘숙 · 윤종필 · 박지원 · 김상희 · 이인영 · 정성호 · 오영훈 · 신창현 · 전해숙 · 기동민 · 김광수 · 최도자 · 김세연 · 김종대 · 인재근 의원 발의)	22
7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조웅천 · 김성수 · 박정 · 심기준 · 임종성 · 백혜련 · 최재성 · 신창현 · 김병기 · 윤관석 · 서형수 의원 발의)	22
7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22
7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박찬대 · 김중희 · 최도자 · 유의동 · 정인화 · 황주홍 · 이찬열 · 전해숙 · 박지원 · 윤소하 · 정춘숙 의원 발의)	22
7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이정미 · 김종대 · 김광수 · 천정배 · 서영교 · 윤후덕 · 김상희 의원 발의)	23
7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윤종필 · 정용기 · 김세연 · 신상진 · 김승희 · 유재중 · 나경원 · 정양석 · 임이자 · 이만희 · 김규환 · 정유섭 · 이양수 · 강효상 · 이명수 의원 발의)	23
7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23
7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3
7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 · 장정숙 · 최도자 · 이찬열 · 주승용 · 정인화 · 조배숙 · 장병완 · 김중희 · 김광수 의원 발의)	23
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기동민 · 김상희 · 맹성규 · 정춘숙 · 우원식 · 이용득 · 안호영 · 제윤경 · 신동근 의원 발의)	23
8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오영훈 · 임종성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23
81.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신창현 · 윤관석 · 정춘숙 · 이규희 · 기동민 · 윤소하 · 윤일규 · 한정애 · 안호영 · 서형수 · 인재근 의원 발의)	23
82.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위성곤 · 전재수 · 신창현 · 임종성 · 윤후덕 · 김민기 · 신동근 · 이석현 · 안호영 · 이찬열 의원 발의)	23
83.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 · 김광수 · 장정숙 · 이찬열 · 정인화 · 장병완 · 박찬대 · 윤영일 · 조배숙 · 유성엽 의원 발의)	23
8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신창현 · 윤관석 · 정춘숙 · 이규희 · 기동민 · 윤소하 · 윤일규 · 한정애 · 안호영 · 서형수 · 인재근 의원 발의)	23
8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천정배 · 황주홍 · 최경환(평) · 조배숙 · 송영길 · 정인화 · 유성엽 · 장병완 · 정동영 의원 발의)	23
8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 · 김명연 · 기동민 · 남인순 · 박덕흠 · 성일중 · 송석준 · 신용현 · 오제세 · 원유철 · 이철규 · 임이자 · 정우택 의원 발의)	23
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박완주 · 김영춘 · 유동수 · 맹성규 · 서삼석 · 표창원 · 심재권 · 송갑석 · 전재수 · 윤준호 · 노웅래 의원 발의)	23
8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중희 · 정동영 · 손금주 · 주승용 · 이찬열 · 황주홍 · 윤소하 · 정세균 · 이동섭 · 윤영일 · 김삼화 · 하태경 · 박선숙 의원 발의)	23

- 8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김경진 · 유승민 · 장정숙 · 이동섭 · 문진국 · 박인숙 · 이현재 · 윤소하 · 김선동 의원 발의) 23
- 9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문진국 · 김성원 · 김상훈 · 김무성 · 안상수 · 박인숙 · 박덕흠 · 정갑윤 · 홍철호 · 김재원 의원 발의) 23
- 9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안호영 · 조승래 · 이동섭 · 이용득 · 박홍근 · 윤호중 · 기동민 · 맹성규 · 신동근 의원 발의) 23
- 9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 · 이철규 · 이진복 · 윤상직 · 윤재옥 · 유의동 · 이양수 · 김세연 · 추경호 · 성일종 의원 발의) 23
- 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전해숙 · 황주홍 · 이동섭 · 이상헌 · 김정호 · 김삼화 · 김철민 · 유동수 · 박용진 · 전재수 의원 발의) 23
- 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전해숙 · 김종희 · 정인화 · 김광수 · 김경진 · 임재훈 · 천정배 · 정춘숙 · 박찬대 · 윤소하 의원 발의) 24
- 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철민 · 남인순 · 노웅래 · 박찬대 · 서삼석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유동수 · 윤일규 · 윤후덕 · 이수혁 · 이용득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24
- 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강훈식 · 금태섭 · 김병관 · 백혜련 · 오영훈 · 유승희 · 원혜영 · 윤후덕 · 표창원 의원 발의) 24
- 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24
- 9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박찬대 · 송영길 · 송갑석 · 김병욱 · 강창일 · 김병기 · 신창현 · 표창원 · 최재성 · 정인화 · 신경민 · 김철민 · 추미애 · 윤후덕 의원 발의) 24
-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윤소하 · 장병완 · 천정배 · 박주현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정인화 · 최도자 의원 발의) 24
- 1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이찬열 · 박정 · 김성수 · 윤후덕 · 유은혜 · 조승래 · 김해영 · 변재일 · 권칠승 의원 발의) 24
-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윤관석 · 권칠승 · 김현권 · 윤영일 · 이학영 · 박정 · 조정식 · 송기현 · 강훈식 · 기동민 · 송갑석 · 이찬열 의원 발의) 24
- 10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윤관석 · 권칠승 · 김현권 · 윤영일 · 이학영 · 박정 · 조정식 · 송기현 · 강훈식 · 기동민 · 송갑석 · 이찬열 의원 발의) 24
- 1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4
- 1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장정숙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 24
- 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 · 변재일 · 이원욱 · 백혜련 · 표창원 · 김병욱 · 윤후덕 · 소병훈 · 김영진 · 신경민 의원 발의) 24
- 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상희 · 전해숙 · 윤후덕 · 장정숙 · 기동민 · 김영진 · 김경협 · 강훈식 · 이용득 · 박정 · 오영훈 · 소병훈 · 윤소하 의원 발의) 24
- 1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황주홍 · 주승용 · 김삼화 · 정세균 · 강훈식 · 이찬열 · 김종희 · 조배숙 의원 발의) 24
- 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김영진 · 우원식 · 정춘숙 · 송갑석 · 이인영 · 서삼석 · 기동민 · 김상희 · 설훈 의원 발의) 24
-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 · 서청원 · 윤상현 · 정유섭 · 안상수 · 황영철 · 함진규 · 홍문중 · 원유철 · 문진국 의원 발의) 24
-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정갑윤 · 주호영 · 문진국 · 박명재 · 김성원

- 김상훈 · 김승희 · 김무성 · 박완수 · 안상수 · 이완영 · 박덕흠 · 김재원 · 홍철호 · 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19) 24
- 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정갑윤 · 주호영 · 문진국 · 김성원 · 김상훈 · 김승희 · 김무성 · 박완수 · 안상수 · 이완영 · 박덕흠 · 김재원 · 홍철호 · 이명수 · 김광림 · 성일종 · 김현아 · 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80) 24
- 1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신창현 · 윤관석 · 정춘숙 · 이규희 · 기동민 · 윤소하 · 윤일규 · 한정애 · 안호영 · 서형수 · 인재근 의원 발의) 24
- 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김성수 · 신창현 · 강창일 · 이찬열 · 정재호 · 이훈 · 박정 · 송옥주 · 유승희 · 고용진 · 위성곤 · 김종민 · 송기현 · 김상희 · 김영호 · 노옹래 · 김병기 · 이용득 · 한정애 · 표창원 · 이철희 · 심기준 · 김한정 · 백재현 · 어기구 · 김두관 · 임종성 · 설훈 · 이개호 · 안호영 · 홍의락 · 박영선 · 문희상 · 윤후덕 의원 발의) 24
- 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신창현 · 윤관석 · 정춘숙 · 이규희 · 기동민 · 윤소하 · 윤일규 · 한정애 · 안호영 · 서형수 · 인재근 의원 발의) 25
- 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김삼화 · 오제세 · 김종희 · 주승용 · 유의동 · 김중로 · 박주선 · 서삼석 의원 발의) 25
-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5
-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권칠승 · 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63) 25
- 1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권칠승 · 장정숙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14) 25
- 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임재훈 · 김경진 · 정인화 · 천정배 · 박찬대 · 전혜숙 · 윤소하 · 조배숙 · 정춘숙 의원 발의) 25
- 1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김철민 · 윤일규 · 이종걸 · 민홍철 · 기동민 · 서형수 · 이철희 · 이석현 · 남인순 의원 발의) 25
- 1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25
-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박명재 · 유승민 · 김석기 · 김선동 · 김상훈 · 곽대훈 · 박완수 · 성일종 · 조정태 · 임이자 · 정진석 · 김규환 · 정태욱 · 이철규 · 김광수 · 이명수 의원 발의) 25
-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춘 · 김용태 · 윤종필 · 원유철 · 문진국 · 유민봉 · 박인숙 · 김승희 · 최교일 의원 발의) 25
-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장정숙 · 김종희 · 김광수 · 정인화 · 윤영일 · 황주홍 · 박지원 · 조배숙 · 최경환(평) · 이용호 의원 발의) 25
-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문진국 · 이은권 · 민경욱 · 서청원 · 성일종 · 이채익 · 주호영 · 정유섭 · 김성원 · 조원진 의원 발의) 25
-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이동섭 · 최도자 · 박주선 · 권은희 · 이찬열 · 채이배 · 김경진 · 윤영일 · 조배숙 의원 발의) 25
-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김영진 · 송갑석 · 기동민 · 강창일 · 김영호 · 유승희 · 박선숙 · 김상희 · 오영훈 · 우원식 · 이규희 의원 발의) 25
-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강창일 · 정세균 · 이찬열 · 신창현 · 송갑석 · 이개호 · 김해영 · 인재근 · 박홍근 · 정인화 · 채이배 · 강훈식 · 김현권 의원 발의) 25
- 1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박정 · 최인호 · 황희 · 김해영 · 박광은 · 위성곤 · 전혜숙 · 정세균 · 이훈 · 전해철 · 오제세 의원 발의) 25

1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5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조경태 · 김순례 · 박명우 · 홍문중 · 윤상현 · 이장우 · 최연혜 · 이진복 · 이완영 의원 발의) 25
1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이명수 · 전해숙 · 이찬열 · 윤일규 · 김병관 · 박덕흠 · 김영호 · 이상민 · 박주민 의원 발의) 25
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옥 의원 대표발의)(민경옥 · 김명연 · 문진국 · 이은권 · 김현아 · 신상진 · 박덕흠 · 윤재옥 · 박성중 · 김규환 의원 발의) 25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송영길 · 김명연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종 · 김선동 · 오제세 의원 발의) 26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26
1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박명재 · 장석춘 · 이현재 · 김도읍 · 박명우 · 정진석 · 최교일 · 정갑윤 · 김상훈 의원 발의) 26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김영진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김관영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26
1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재원 · 정갑윤 · 주호영 · 김세연 · 김승희 · 이명수 · 김정재 · 김성원 · 이학재 의원 발의) 26
1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박덕흠 · 김성원 · 이명수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민경옥 · 윤종필 · 김현아 의원 발의) 26
14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황주홍 · 주승용 · 채이배 · 신용현 · 임재훈 · 김관영 · 김동철 · 김광수 · 김종희 의원 발의) 26
14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김혜영 · 박홍근 · 이철희 · 이규희 · 유동수 · 박광온 · 박찬대 · 전해숙 · 김성수 의원 발의) 26
14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정유섭 · 박인숙 · 이양수 · 김성원 · 박덕흠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이종배 · 김현아 · 민경옥 · 이명수 의원 발의) 26
1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황주홍 · 주승용 · 김삼화 · 정세균 · 강훈식 · 이찬열 · 김종희 · 조배숙 의원 발의) 26
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권철승 · 송갑석 · 신창현 · 백혜련 · 금태섭 · 소병훈 · 윤관석 · 김성수 · 송옥주 의원 발의) 26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김영호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26
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최인호 · 송옥주 · 강훈식 · 정세균 · 이철희 · 고용진 · 김민기 · 이춘석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6
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6
1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 · 변재일 · 이원욱 · 백혜련 · 표창원 · 김병욱 · 윤후덕 · 소병훈 · 김영진 · 신경민 의원 발의) 26
14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 정성호 · 김경협 의원 발의) 26
1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안호영 · 기동민 · 백혜련 · 안민석 · 강훈식 · 전해숙 · 이규희 · 정세균 · 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63) 26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 · 김종민 · 서형수 · 이수혁 · 민홍철 · 신창현 · 이종걸 · 김두관 · 김정호 · 손혜원 의원 발의) 26

1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삼화 · 임재훈 · 김수민 · 정인화 · 이동섭 · 김병욱 · 황주홍 · 주승용 · 김종희 의원 발의) 26

1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 · 조경태 · 장병완 · 황주홍 · 장정숙 · 박주민 · 채이배 · 안민석 · 정동영 · 정인화 의원 발의) 26

1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44) 26

1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권철승 · 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65) 26

1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박덕흠 · 김성원 · 이명수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민경욱 · 윤종필 의원 발의) 27

1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1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 · 변재일 · 이원욱 · 백혜련 · 표창원 · 김병욱 · 윤후덕 · 소병훈 · 김영진 · 신경민 의원 발의) 27

1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 · 김경진 · 김명연 · 김세연 · 박덕흠 · 송희경 · 유재중 · 이명수 · 이주영 · 임이자 의원 발의) 27

1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규희 · 신창현 · 김세연 · 김병기 · 변재일 · 전재수 · 이인영 · 유성엽 · 기동민 · 원혜영 · 윤종필 · 인재근 · 정성호 · 김관영 · 박주선 · 박지원 · 오제세 · 안호영 · 윤소하 · 신경민 · 이상현 · 정춘숙 · 심기준 · 송갑석 · 이상민 · 천정배 · 신동근 · 이용호 · 서영교 · 김종희 · 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46) 27

1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김성찬 · 김영우 · 정용기 · 김기선 · 윤종필 · 나경원 · 김광립 · 김승희 · 이은권 · 정우택 · 박대출 · 정동영 · 경대수 · 오신환 · 이장우 · 이명수 · 송언석 · 유재중 · 송석준 · 이완영 · 박완수 · 이채익 · 김한표 · 박맹우 · 백승주 · 정성호 · 여상규 · 이만희 · 장석춘 · 김재경 · 권성동 · 김상희 · 이용호 의원 발의) 27

1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전혜숙 · 이동섭 · 유승희 · 황주홍 · 김철민 · 정성호 · 유동수 · 신경민 · 위성곤 의원 발의) 27

1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조승래 · 신동근 · 윤일규 · 정춘숙 · 김종민 · 박홍근 · 이용득 · 박정 · 인재근 · 김경협 · 정세균 · 신창현 · 고용진 · 전현희 · 김상희 · 우원식 · 신경민 · 맹성규 · 박찬대 의원 발의) 27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성찬 · 이찬열 · 김학용 · 최도자 · 김태흠 · 변재일 · 권성동 · 전혜숙 · 안민석 의원 발의) 27

1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송옥주 · 이규희 · 이상현 · 금태섭 · 김성수 · 임종성 · 김광수 · 오제세 의원 발의) 27

1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박명재 · 강석진 · 추경호 · 신보라 · 이만희 · 이현승 · 김한표 · 박순자 · 김광립 의원 발의) 27

1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김영호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95) 27

1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박정 · 김병기 · 윤종필 · 이학영 · 전혜숙 · 박순자 · 정춘숙 · 박완주 · 제윤경 · 이철희 · 남인순 의원 발의) 27

1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 · 강병원 · 강훈식 · 기동민 · 남인순 · 박정 · 박찬대 · 신창현 · 윤소하 · 전해철 의원 발의) 27

1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김중로 · 민홍철 · 제윤경 · 이상현 · 정재호 · 이원욱 · 김병기 · 김두관 · 김성찬 · 유승희 · 이훈 · 안호영 · 심기준 · 채이배 의원 발의) 27

1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김영진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김관영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14) 27

- 17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신동근 · 민홍철 · 이찬열 · 이학영 · 이원욱 · 김상희 · 전혜숙 · 강훈식 · 김현권 의원 발의) 27
- 17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중 · 김선동 · 김성원 · 오제세 의원 발의) 27
- 17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강창일 · 김경협 · 김성수 · 박재호 · 변재일 · 서영교 · 송영길 · 송옥주 · 원혜영 · 윤후덕 · 이상돈 · 이석현 · 이종걸 · 이찬열 · 한정애 의원 발의) 27
- 17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용태 · 주승용 · 전혜숙 · 김상훈 · 김관영 · 기동민 · 강석진 · 최도자 · 남인순 · 맹성규 · 김동철 · 신창현 · 김부겸 · 김상희 · 송옥주 · 유승희 · 박선숙 · 오제세 · 김성환 · 고용진 · 김병욱 · 이철희 · 서형수 · 김해영 · 소병훈 · 강창일 · 서영교 · 유성엽 의원 발의) 28
- 17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윤소하 · 장병완 · 천정배 · 박주현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정인화 · 최도자 의원 발의) 28
- 17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윤소하 · 김병기 · 임종성 · 김상희 · 장정숙 · 윤일규 · 김경협 · 이용득 · 박정 · 강훈식 의원 발의) 28
- 1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28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이찬열 · 유성엽 · 장정숙 · 김경진 · 황주홍 · 정인화 · 정동영 · 박주현 · 천정배 의원 발의) 28
- 18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송갑석 · 강훈식 · 김민기 · 원혜영 · 신창현 · 김성수 · 이규희 · 송옥주 · 박광은 의원 발의) 28
- 18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이상현 · 유동수 · 최재성 · 신창현 · 이정미 · 이용득 · 황주홍 · 김철민 · 신경민 · 한정애 · 이인영 의원 발의) 28
- 18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천정배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28
- 18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종걸 · 어기구 · 이원욱 · 이규희 · 안민석 · 전재수 · 이석현 · 김두관 · 정성호 의원 발의) 28
- 18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 · 신동근 · 채이배 · 정춘숙 · 윤관석 · 김정호 · 정세균 · 최재성 · 박재호 · 서형수 · 이동섭 · 이인영 · 손혜원 · 송옥주 · 조승래 · 정인화 · 김병기 · 안민석 · 노웅래 의원 발의) 28
- 185.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 · 정세균 · 서삼석 · 홍문표 · 박재호 · 김현권 · 김철민 · 이찬열 · 황주홍 · 심기준 의원 발의) 28
- 186.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서형수 · 윤준호 · 정세균 · 신창현 · 신동근 · 박재호 · 최인호 · 김철민 · 정재호 의원 발의) 28
- 1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46) 28
- 1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박정 · 전현희 · 최인호 · 이후삼 · 송갑석 · 민홍철 · 이재정 · 윤일규 · 김병기 · 김경협 · 조승래 의원 발의) 28
- 1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도종환 · 김병기 · 신창현 · 원혜영 · 김현권 · 노웅래 · 최재성 · 강창일 · 김민기 의원 발의) 28
- 1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28
- 19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영호 · 박범계 · 송기현 · 인재근 · 박주민 · 윤준호 · 오영훈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28

- 1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조승래 · 기동민 · 이동섭 · 이용득 · 이규희 · 강훈식 · 박홍근 · 신창현 · 이석현 · 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23) 28
- 19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정춘숙 · 기동민 · 신창현 · 송갑석 · 윤호중 · 윤후덕 · 소병훈 · 백혜련 · 고용진 · 인재근 의원 발의) 29
- 1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이정미 · 김종대 · 김성수 · 김종훈 · 소병훈 · 이철희 · 여영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74) 29
- 19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이정미 · 김종대 · 김성수 · 김종훈 · 소병훈 · 이철희 · 여영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78) 29
- 19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 · 정세균 · 서삼석 · 홍문표 · 박재호 · 김현권 · 김철민 · 이찬열 · 황주홍 · 심기준 의원 발의) 29
- 19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유동수 · 기동민 · 신창현 · 강창일 · 송갑석 · 박홍근 · 조승래 · 고용진 · 김종민 · 박선숙 · 김성수 · 이규희 의원 발의) 29
- 19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박인숙 · 김광립 · 정유섭 · 이양수 · 김성원 · 박덕흠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김승희 · 김현아 · 민경옥 · 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08) 29
- 19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박명재 · 박덕흠 · 안상수 · 정유섭 · 김광립 · 정갑윤 · 박인숙 · 홍철호 · 김성원 · 민경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01) 29
- 20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김종희 · 박지원 · 유성엽 · 장병완 · 장정숙 · 정인화 · 천정배 · 황주홍 · 이용호 · 정동영 의원 발의) 29
- 2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원유철 · 문진국 · 송석준 · 이완영 · 윤상현 · 심재철 · 유재중 · 이주영 · 박명재 의원 발의) 29
- 202.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경대수 · 김선동 · 김순례 · 김정재 · 윤상현 · 윤영석 · 이은권 · 임이자 · 함진규 의원 발의) 29
- 203.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이찬열 · 권철승 · 장정숙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 29
- 204.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29
- 205.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이원욱 · 안호영 · 윤관석 · 주승용 · 김종민 · 김경협 · 최인호 · 추미애 · 송옥주 · 정춘숙 · 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07) ... 29
- 206.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서삼석 · 황희 · 이원욱 · 이규희 · 맹성규 · 안호영 · 김철민 · 김영진 · 김종민 · 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4) 29
- 2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안호영 · 김상희 · 위성곤 · 김해영 · 우원식 · 노웅래 · 강훈식 · 김병기 · 어기구 · 소병훈 의원 발의) 29
- 2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인재근 · 윤일규 · 신창현 · 김성수 · 이상현 · 이인영 · 강훈식 · 장정숙 · 윤소하 · 채이배 · 김상희 의원 발의) 29
- 2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김종희 · 이찬열 · 천정배 · 황주홍 · 조배숙 · 정인화 · 유성엽 · 정동영 · 장정숙 의원 발의) 29
- 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 · 성일종 · 문진국 · 유민봉 · 정유섭 · 김순례 · 정종섭 · 정태욱 · 유동수 · 김상훈 · 여상규 의원 발의) 29
- 2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 · 김세연 · 김정재 · 조원진 · 박완수 · 김진태 · 박순자 · 이은권 · 이연주 · 민경옥 의원 발의) 29
- 2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김병기 · 오영훈 · 박정 · 강훈식 · 김종민 · 서영교 · 백혜련 · 이종걸 · 노웅래 의원 발의) 30

2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태흠 · 김진태 · 추경호 · 곽대훈 · 이완영 · 주호영 · 이채익 · 정점식 · 여상규 의원 발의) 30

2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 · 주승용 · 최교일 · 정진석 · 황주홍 · 김중로 · 김성원 · 권은희 · 정운천 · 이명수 · 하태경 의원 발의) 30

2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김중대 · 이정미 · 여영국 · 추혜선 · 심상정 · 맹성규 · 인재근 · 최도자 · 김종훈 의원 발의) 30

21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 · 추경호 · 김성찬 · 이명수 · 정인화 · 이채익 · 정세균 · 김한표 · 최연혜 · 송언석 · 김태흠 의원 발의) 30

21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김병욱 · 황주홍 · 조배숙 · 주승용 · 정세균 · 강훈식 · 이찬열 · 천정배 의원 발의) 30

218.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 · 신보라 · 김선동 · 원유철 · 서정원 · 이종명 · 정유섭 · 윤영석 · 홍문중 · 이명수 의원 발의) 30

21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윤종필 · 이명수 · 성일종 · 백승주 · 문진국 · 조훈현 · 주광덕 · 김석기 · 박덕흠 · 이철규 · 김종석 의원 발의) 30

22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황주홍 · 이동섭 · 홍문표 · 유성엽 · 이상현 · 정유섭 · 천정배 · 이용주 · 위성곤 · 성일종 · 오영훈 · 윤영일 · 주승용 의원 발의) 30

2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유승민 · 김동철 · 문진국 · 윤준호 · 유승희 · 박정 · 금태섭 · 한정애 · 황주홍 의원 발의) 30

2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종희 · 정동영 · 손금주 · 주승용 · 이찬열 · 황주홍 · 윤소하 · 정세균 · 이동섭 · 윤영일 · 김삼화 · 하태경 · 박선숙 의원 발의) 30

22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안규백 · 유승희 · 김영춘 · 이종걸 · 김두관 · 김부겸 · 박재호 · 김종민 · 민병두 · 조승래 의원 발의) 30

22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규희 · 신창현 · 김세연 · 우원식 · 윤소하 · 변재일 · 전재수 · 이인영 · 유성엽 · 원혜영 · 기동민 · 인재근 · 정성호 · 서영교 · 신경민 · 안호영 · 이상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31) 30

22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규희 · 신창현 · 김세연 · 우원식 · 윤소하 · 변재일 · 전재수 · 이인영 · 유성엽 · 원혜영 · 기동민 · 인재근 · 정성호 · 서영교 · 신경민 · 안호영 · 이상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73) 30

226.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이학재 · 김무성 · 문진국 · 정갑윤 · 정운천 · 원혜영 · 김명연 · 유기준 · 김현아 · 김상희 · 하태경 의원 발의) 30

2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이상현 · 이동섭 · 김정진 · 장병완 · 조배숙 · 정동영 · 윤영일 · 채이배 · 홍문표 · 김종희 의원 발의) 30

2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안호영 · 조승래 · 이동섭 · 이용득 · 이규희 · 강훈식 · 윤호중 · 신창현 · 이석현 · 안민석 의원 발의) 30

2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신창현 · 송갑석 · 이규희 · 소병훈 · 우원식 · 박홍근 · 이학영 · 김병기 · 김병욱 의원 발의) 30

2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이원욱 · 안호영 · 윤관석 · 김영진 · 주승용 · 김종민 · 김경협 · 윤영일 · 최인호 · 고용진 · 기동민 · 추미애 · 조웅천 · 송옥주 · 전혜숙 의원 발의) 31

2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윤상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31

23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1

233. 업무보고 35

- 나. 질병관리본부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 국민연금공단
-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시04분 개의)

○위원장 金世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보건복지 위원장이 된 김세연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신 이명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 김명연 간사님, 최도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속에서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원만하게 운영되면서도 많은 결실을 함께 거두어 왔습니다. 저도 앞으로 1년간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온 위원회의 전통과 분위기를 이어서 더욱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회가 열리게 되니 위원회 구성에 변화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본회의에서 인사말씀으로 전해 드렸던 것과 같이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애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를 중심으로 한 무한한 가능성의 신산업 분야 육성도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진선미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고, 6월 28일 자로 전혜숙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인재근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재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반갑습니다. 인재근입니다.

우선 김세연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간사님, 김명연 간사님—아직 안 오셨네요—최도자 간사님, 반갑고 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변한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현안 많고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은 여성가족부장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간사님께서 오전에 빙모상을 당하셔서 오늘 회의에 출석이 어려우신 사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감염병 총괄 업무 수행 관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운동 식품기준기획관은 제4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경제인 간담회 참석으로 12시 반경부터 이석할 예정이며,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제1회 자폐증 엑스포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안을 함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각 기관별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청취한 후 이에 대하여 한꺼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만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한 업무보고를 듣고 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인사말씀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9분)

○위원장 金世淵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들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위원님과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 간호·조산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규희·신창현·김세연·김병기·변재일·전재수·이인영·유성엽·기동민·원혜영·윤종필·인재근·정성호·김관영·박주선·박지원·김광수·오제세·안호영·윤소하·신경민·이상현·정춘숙·심기준·송갑석·이상민·천정배·신동근·이용호·서영교·김중희 의원 발의)

4. 간호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성찬·김영우·정용기·김기선·윤종필·나경원·김광림·김승희·이은권·정우택·박대출·정동영·경대수·오신환·이장우·이명수·송언석·유재중·송석준·이완영·박완수·이채익·김한표·박맹우·백승주·정성호·여상규·이만희·장석춘·김재경·권성동·김상희·이용호 의원 발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김중희·김성찬·이종명·박덕흠·김현아·이명수·황주홍·민경욱·여상규 의원 발의)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조승래·기동민·이동섭·이용득·이규희·강훈식·윤호중·박홍근·신창현·이석현·안민석 의원 발의)

7.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황주홍·이동섭·홍문표·유성엽·이상현·정유섭·천정배·이용주·위성곤·성일종·오영훈·윤영일·주승용 의원 발의)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최인호·송옥주·강훈식·정세균·이철희·고용진·김민기·이춘석·이후삼·노웅래 의원 발의)

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민·신창현·윤소하·이규희·김경협·오영훈·인재근·서영교·정춘숙 의원 발의)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김현권·백재현·변재일·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최인호·송옥주·강훈식·정세균·이철희·고용진·김민기·이춘석·이후삼·노웅래 의원 발의)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위성곤·안호영·김해영·우원식·노웅래·강훈식·김병기·어기구·소병훈 의원 발의)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완영·박덕흠·박인숙·박성중·김석기·박완수·김명연·신보라·최교일 의원 발의)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신보라·김선동·원유철·서청원·이종명·정유섭·윤영석·홍문중·이명수 의원 발의)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조훈현·김광림·박대출·홍철호·박명재·김선동·이채익·주호영·김한표 의원 발의)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안호영·최재성·신창현·한정애·정인화·김종민·박찬대·소병훈·윤소하 의원 발의)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김병욱·임재훈·채이배·황주홍·주승용·김종희·정세균·강훈식·이찬열·하태경·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70)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김병욱·임재훈·황주홍·주승용·김종희·정세균·채이배·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94)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윤종필·이명수·성일중·곽대훈·백승주·문진국·조훈현·주광덕·김석기·박덕흠·이철규·김종석 의원 발의)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원유철·이명수·정우택·성일중·박명재·박덕흠·박인숙·임이자·이종명 의원 발의)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황주홍·이동섭·홍문표·유성엽·이상현·정유섭·천정배·이용주·위성곤·성일중·오영훈·윤영일·주승용 의원 발의)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황주홍·주승용·채이배·신용현·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광수·김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54)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덕흠·박명재·이은권·김재원·김성찬·성일중·김선동·김성원·경대수·윤종필 의원 발의)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신창현·강훈식·김철민·맹성규·이학영·이규희·정춘숙·김성수·박주민 의원 발의)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안호영·기동민·안민석·강훈식·전혜숙·이규희·정세균·신동근·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61)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41)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신동근·소병훈·이용득·김상희·박완주·신창현·김병기·유동수·민홍철·어기구·김철민·박정·김현권·심기준·맹성규·한정애 의원 발의)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해영·박홍근·이철희·이규희·유동수·박광온·박찬대·전혜숙·김성수 의원 발의)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성찬·박덕흠·이완영·김상훈·박성중·박인숙·조경태·곽

- 상도·이명수 의원 발의)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명연·김재원·김성원·박성중·김승희·박덕흠·윤종필·박명재·이은권·김성찬·성일종·송희경·김세연·김순례 의원 발의)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이찬열·주승용·김관영·임재훈·채이배·황주홍·김종희·송석준 의원 발의)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윤상직·박인숙·박명재·박덕흠·최연혜·김석기·이명수·정태욱·박맹우 의원 발의)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황주홍·정인화·정춘숙·강훈식·김수민·장정숙·김성찬·윤준호·조배숙·유성엽·손금주·이찬열 의원 발의)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강훈식·김종희·박정·송갑석·신창현·오영훈·유승희·윤후덕·이종걸·정동영 의원 발의)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박광운·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김경협·박선숙·박정·송옥주·송영길·윤후덕·이석현·이종걸·이찬열·한정애 의원 발의)
3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4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욱·유기준·이완영·김석기·김태흠·강효상·김규환·민경욱·김세연 의원 발의)
4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기동민·신창현·송갑석·윤호중·윤후덕·소병훈·백혜련·고용진·인재근 의원 발의)
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조승래·신동근·윤일규·정춘숙·김종민·박홍근·이용득·박정·인재근·김경협·정세균·신창현·오제세·전현희·김상희·우원식·금대섭·신경민·맹성규·박찬대 의원 발의)
4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현재·박덕흠·정유섭·송언석·이현승·홍철호·박순자·윤종필·이완영 의원 발의)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경대수·김명연·김선동·김순례·김정재·윤상현·윤영석·이양수·이은권·임이자·함진규 의원 발의)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제윤경·임종성·심재권·이종걸·서삼석·설훈·김철민·윤준호·박찬대 의원 발의)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위성곤·이개호·이용득·신동근·신창현·윤관석·윤영일·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장정숙·박정·송갑석·백혜련·김병기·신창현·박지원·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윤소하·장병완·천정배·박주현·유성엽·황주홍·장정숙·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문진국·주호영·박덕흠·민경욱·이종명·염동열·이종구·조경태·송희경 의원 발의)
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임종성·서형수·맹성규·윤후덕·김상희·조정식·박정·이용득·강훈식 의원 발의)
52.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민기·맹성규·유동수·홍익표·김상희·정춘숙·강훈식·윤일규·송갑석·김해영·인재근·김성수·신창현·오제세 의원 발의)

53.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천정배·정인화·김경진·조배숙·김종희·유성엽·장병완·황주홍·이찬열 의원 발의)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신창현·민홍철·기동민·이규희·표창원·윤후덕·고용진·최재성·안호영·임종성 의원 발의)
5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유동수·정성호·이종명·박주민·김진태·이개호·소병훈·박완수·김현권 의원 발의)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제윤경·전재수·심재권·정춘숙·표창원·김병기·이종걸·윤후덕·남인순·노웅래 의원 발의)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강창일·고용진·김민기·김병기·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창현·유동수·윤호중·윤후덕·이찬열·인재근·전혜숙·최재성 의원 발의)
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박찬대·김종희·최도자·김경진·유의동·천정배·정인화·황주홍·이찬열 의원 발의)
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유동수·신창현·이규희·송갑석·김성수·소병훈·김해영·오영훈·임종성·인재근 의원 발의)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희·박지원·유성엽·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금태섭 의원 발의)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동섭·박선숙·최도자·김삼화·정동영·유동수·이상현·강병원·김관영·추혜선 의원 발의)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윤일규·금태섭·이찬열·김철민·권칠승·장정숙 의원 발의)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여영국·손혜원·박주현·채이배·김수민 의원 발의)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임재훈·권은희·채이배·김수민·최도자·김삼화·이동섭·황주홍·이찬열·조배숙·윤종필·박선숙·장병완·정춘숙 의원 발의)
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강석호·김순례·김종석·김태흠·성일중·신상진·유민봉·정유섭·정중섭·추경호 의원 발의)
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박정·김병기·전혜숙·윤종필·김상희·이학영·박순자·정춘숙·박완주·제윤경·이철희·백혜련·남인순 의원 발의)
6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규희·기동민·신창현·박홍근·송갑석·김성수·소병훈·김영호·맹성규·정춘숙·신경민 의원 발의)
6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용태·문진국·권성동·정갑윤·김재경·김세연·정운천·이철규·김중로·윤한홍 의원 발의)
6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희·박지원·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 의원 발의)
70. 물리치료사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여영국·이정미·정춘숙·윤종필·박지원·김상희·이인영·정성호·오영훈·신창현·전혜숙·기동민·김광수·최도자·김세연·김종대·인재근 의원 발의)
7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김성수·박정·심기준·임종성·백혜련·최재성·신창현·김병기·윤관석·서형수 의원 발의)
7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7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박찬대·김종희·최도자·유의동·정인화·황주홍·이찬열·전혜숙·박지원·윤소하·정춘숙 의

- 원 발의)
7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광수·천정배·서영교·윤후덕·김상희 의원 발의)
7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윤종필·정용기·김세연·신상진·김승희·유재중·나경원·정양석·임이자·이만희·김규환·정유섭·이양수·강효상·이명수 의원 발의)
7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7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7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장정숙·최도자·이찬열·주승용·정인화·조배숙·장병완·김중희·김광수 의원 발의)
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기동민·김상희·맹성규·정춘숙·우원식·이용득·안호영·제윤경·신동근 의원 발의)
8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민·신창현·윤소하·이규희·김경협·오영훈·임종성·인재근·서영교·정춘숙·박찬대 의원 발의)
8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윤관석·정춘숙·이규희·기동민·윤소하·윤일규·한정애·안호영·서형수·인재근 의원 발의)
8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위성곤·전재수·신창현·임종성·윤후덕·김민기·신동근·이석현·안호영·이찬열 의원 발의)
8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김광수·장정숙·이찬열·정인화·장병완·박찬대·윤영일·조배숙·유성엽 의원 발의)
8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윤관석·정춘숙·이규희·기동민·윤소하·윤일규·한정애·안호영·서형수·인재근 의원 발의)
8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천정배·황주홍·최경환(평)·조배숙·송영길·정인화·유성엽·장병완·정동영 의원 발의)
8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명연·기동민·남인순·박덕흠·성일중·송석준·신용현·오제세·원유철·이철규·임이자·정우택 의원 발의)
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박완주·김영춘·유동수·맹성규·서삼석·표창원·심재권·송갑석·전재수·윤준호·노웅래 의원 발의)
8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중희·정동영·손금주·주승용·이찬열·황주홍·윤소하·정세균·이동섭·윤영일·김삼화·하태경·박선숙 의원 발의)
8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경진·유승민·장정숙·이동섭·문진국·박인숙·이현재·윤소하·김선동 의원 발의)
9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문진국·김성원·김상훈·김무성·안상수·박인숙·박덕흠·정갑윤·홍철호·김재원 의원 발의)
9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안호영·조승래·이동섭·이용득·박홍근·윤호중·기동민·맹성규·신동근 의원 발의)
9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이철규·이진복·윤상직·윤재욱·유의동·이양수·김세연·추경호·성일중 의원 발의)
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이동

섭 · 이상헌 · 김정호 · 김삼화 · 김철민 · 유동수 · 박용진 · 전재수 의원 발의)

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전해숙 · 김종희 · 정인화 · 김광수 · 김경진 · 임재훈 · 천정배 · 정춘숙 · 박찬대 · 윤소하 의원 발의)

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철민 · 남인순 · 노웅래 · 박찬대 · 서삼석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유동수 · 윤일규 · 윤후덕 · 이수혁 · 이용득 · 이후삼 · 전재수 의원 발의)

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강훈식 · 금태섭 · 김병관 · 백혜련 · 오영훈 · 유승희 · 원혜영 · 윤후덕 · 표창원 의원 발의)

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9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박찬대 · 송영길 · 송갑석 · 김병욱 · 강창일 · 김병기 · 신창현 · 표창원 · 최재성 · 정인화 · 신경민 · 김철민 · 추미애 · 윤후덕 의원 발의)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윤소하 · 장병완 · 천정배 · 박주현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정인화 · 최도자 의원 발의)

1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이찬열 · 박정 · 김성수 · 윤후덕 · 유은혜 · 조승래 · 김해영 · 변재일 · 권칠승 의원 발의)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윤관석 · 권칠승 · 김현권 · 윤영일 · 이학영 · 박정 · 조정식 · 송기현 · 강훈식 · 기동민 · 송갑석 · 이찬열 의원 발의)

10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윤관석 · 권칠승 · 김현권 · 윤영일 · 이학영 · 박정 · 조정식 · 송기현 · 강훈식 · 기동민 · 송갑석 · 이찬열 의원 발의)

1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

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1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장정숙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

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 · 변재일 · 이원욱 · 백혜련 · 표창원 · 김병욱 · 윤후덕 · 소병훈 · 김영진 · 신경민 의원 발의)

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상희 · 전해숙 · 윤후덕 · 장정숙 · 기동민 · 김영진 · 김경협 · 강훈식 · 이용득 · 박정 · 오영훈 · 소병훈 · 윤소하 의원 발의)

1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황주홍 · 주승용 · 김삼화 · 정세균 · 강훈식 · 이찬열 · 김종희 · 조배숙 의원 발의)

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김영진 · 우원식 · 정춘숙 · 송갑석 · 이인영 · 서삼석 · 기동민 · 김상희 · 설훈 의원 발의)

1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 · 서청원 · 윤상현 · 정유섭 · 안상수 · 황영철 · 함진규 · 홍문중 · 원유철 · 문진국 의원 발의)

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정갑윤 · 주호영 · 문진국 · 박명재 · 김성원 · 김상훈 · 김승희 · 김무성 · 박완수 · 안상수 · 이완영 · 박덕흠 · 김재원 · 홍철호 · 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19)

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정갑윤 · 주호영 · 문진국 · 김성원 · 김상훈 · 김승희 · 김무성 · 박완수 · 안상수 · 이완영 · 박덕흠 · 김재원 · 홍철호 · 이명수 · 김광립 · 성일중 · 김현아 · 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80)

1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신창현 · 윤관석 · 정춘숙 · 이규희 · 기동민 · 윤소하 · 윤일규 · 한정애 · 안호영 · 서형수 · 인재근 의원 발의)

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성수·신창현·강창일·이찬열·정재호·이훈·박정·송옥주·유승희·고용진·위성곤·김종민·송기현·김상희·김영호·노웅래·김병기·이용득·한정애·표창원·이철희·심기준·김한정·백재현·어기구·김두관·임종성·설훈·이개호·안호영·홍의락·박영선·문희상·윤후덕 의원 발의)

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윤관석·정춘숙·이규희·기동민·윤소하·윤일규·한정애·안호영·서형수·인재근 의원 발의)

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김삼화·오제세·김종희·주승용·유의동·김중로·박주선·서삼석 의원 발의)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윤일규·금태섭·이찬열·김철민·권칠승·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63)

1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윤일규·금태섭·이찬열·권칠승·장정숙·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14)

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임재훈·김경진·정인화·천정배·박찬대·전혜숙·윤소하·조배숙·정춘숙 의원 발의)

1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철민·윤일규·이종걸·민홍철·기동민·서형수·이철희·이석현·남인순 의원 발의)

1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박명재·유승민·김석기·김선동·김상훈·곽대훈·박완수·성일중·조경태·임이자·정진석·김규환·

정태욱·이철규·김광수·이명수 의원 발의)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김용태·윤종필·원유철·문진국·유민봉·박인숙·김승희·최교일 의원 발의)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장정숙·김종희·김광수·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최경환(평)·이용호 의원 발의)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문진국·이은권·민경욱·서청원·성일중·이채익·주호영·정유섭·김성원·조원진 의원 발의)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동섭·최도자·박주선·권은희·이찬열·채이배·김경진·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진·송갑석·기동민·강창일·김영호·유승희·박선숙·김상희·오영훈·우원식·이규희 의원 발의)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강창일·정세균·이찬열·신창현·송갑석·이개호·김해영·인재근·박홍근·정인화·채이배·강훈식·김현권 의원 발의)

1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최인호·황희·김해영·박광온·위성곤·전혜숙·정세균·이훈·전해철·오제세 의원 발의)

1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조경태·김순례·박맹우·홍문중·윤상현·이장우·최연혜·이진복·이완영 의원 발의)

1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명수·전혜숙·이찬열·윤일규·김병관·박덕흠·김영호·이상민·박주민 의원 발의)

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명연·문진

국 · 이은권 · 김현아 · 신상진 · 박덕흠 · 윤재옥 · 박성중 · 김규환 의원 발의)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송영길 · 김명연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중 · 김선동 · 오제세 의원 발의)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박광운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1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박명재 · 장석춘 · 이현재 · 김도읍 · 박맹우 · 정진석 · 최교일 · 정갑윤 · 김상훈 의원 발의)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김영진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김관영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1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재원 · 정갑윤 · 주호영 · 김세연 · 김승희 · 이명수 · 김정재 · 김성원 · 이학재 의원 발의)

1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박덕흠 · 김성원 · 이명수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민경욱 · 윤종필 · 김현아 의원 발의)

14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황주홍 · 주승용 · 채이배 · 신용현 · 임재훈 · 김관영 · 김동철 · 김광수 · 김종희 의원 발의)

14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김해영 · 박홍근 · 이철희 · 이규희 · 유동수 · 박광운 · 박찬대 · 전해숙 · 김성수 의원 발의)

14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정유섭 · 박인숙 · 이양수 · 김성원 · 박덕흠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이종배 · 김현아 · 민경욱 · 이명수 의원 발의)

1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황주홍 · 주승용 · 김삼화 · 정세균 · 강훈식 · 이찬열 · 김종희 · 조배숙 의원 발의)

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박정 · 권칠승 · 송갑석 · 신창현 · 백혜련 · 금태섭 · 소병훈 · 윤관석 · 김성수 · 송옥주 의원 발의)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김영호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최인호 · 송옥주 · 강훈식 · 정세균 · 이철희 · 고용진 · 김민기 · 이춘석 · 이후삼 · 노용래 의원 발의)

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1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 · 변재일 · 이원욱 · 백혜련 · 표창원 · 김병욱 · 윤후덕 · 소병훈 · 김영진 · 신경민 의원 발의)

14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 정성호 · 김경협 의원 발의)

1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안호영 · 기동민 · 백혜련 · 안민석 · 강훈식 · 전해숙 · 이규희 · 정세균 · 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63)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 · 김종민 · 서형수 · 이수혁 · 민홍철 · 신창현 · 이종걸 · 김두관 · 김정호 · 손혜원 의원 발의)

1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김삼화 · 임재훈 · 김수민 · 정인화 · 이동섭 · 김병욱 · 황주홍 · 주승용 · 김종희 의원 발의)

1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 · 조경태 · 장병완 · 황주홍 · 장정숙 · 박주민 · 채이배 · 안민석 · 정동영 · 정인화 의원 발의)

1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44)

1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

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권철승 · 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65)

1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박덕흠 · 김성원 · 이명수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민경욱 · 윤종필 의원 발의)
1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 · 변재일 · 이원욱 · 백혜련 · 표창원 · 김병욱 · 윤후덕 · 소병훈 · 김영진 · 신경민 의원 발의)
1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 · 김경진 · 김명연 · 김세연 · 박덕흠 · 송희경 · 유재중 · 이명수 · 이주영 · 임이자 의원 발의)
1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규희 · 신창현 · 김세연 · 김병기 · 변재일 · 전재수 · 이인영 · 유성엽 · 기동민 · 원혜영 · 윤종필 · 인재근 · 정성호 · 김관영 · 박주선 · 박지원 · 오제세 · 안호영 · 윤소하 · 신경민 · 이상현 · 정춘숙 · 심기준 · 송갑석 · 이상민 · 천정배 · 신동근 · 이용호 · 서영교 · 김종희 · 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46)
1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김성찬 · 김영우 · 정용기 · 김기선 · 윤종필 · 나경원 · 김광림 · 김승희 · 이은권 · 정우택 · 박대출 · 정동영 · 경대수 · 오신환 · 이장우 · 이명수 · 송언석 · 유재중 · 송석준 · 이완영 · 박완수 · 이채익 · 김한표 · 박맹우 · 백승주 · 정성호 · 여상규 · 이만희 · 장석춘 · 김재경 · 권성동 · 김상희 · 이용호 의원 발의)
1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전해숙 · 이동섭 · 유승희 · 황주홍 · 김철민 · 정성호 · 유동수 · 신경민 · 위성곤 의원 발의)
1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조승래 · 신동근 · 윤일규 · 정춘숙 · 김종민 · 박홍근 · 이용득 · 박정 · 인재근 · 김경협 · 정세균 · 신창현 · 고용진 · 전현희 · 김상희 · 우원식 · 신경민 · 맹성규 · 박찬대 의원 발의)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성찬 · 이찬열 · 김학용 · 최

도자 · 김태흠 · 변재일 · 권성동 · 전해숙 · 안민석 의원 발의)

1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송옥주 · 이규희 · 이상현 · 금태섭 · 김성수 · 임종성 · 김광수 · 오제세 의원 발의)
1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박명재 · 강석진 · 추경호 · 신보라 · 이만희 · 이현승 · 김한표 · 박순자 · 김광림 의원 발의)
1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김영호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95)
1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박정 · 김병기 · 윤종필 · 이학영 · 전해숙 · 박순자 · 정춘숙 · 박완주 · 제윤경 · 이철희 · 남인순 의원 발의)
1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 · 강병원 · 강훈식 · 기동민 · 남인순 · 박정 · 박찬대 · 신창현 · 윤소하 · 전해철 의원 발의)
1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김중로 · 민홍철 · 제윤경 · 이상현 · 정재호 · 이원욱 · 김병기 · 김두관 · 김성찬 · 유승희 · 이훈 · 안호영 · 심기준 · 채이배 의원 발의)
1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김영진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김관영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14)
17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신동근 · 민홍철 · 이찬열 · 이학영 · 이원욱 · 김상희 · 전해숙 · 강훈식 · 김현권 의원 발의)
17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종 · 김선동 · 김성원 · 오제세 의원 발의)
17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강창일 · 김경협 · 김성수 · 박재호 · 변재일 · 서영교 · 송영길 · 송

- 옥주 · 원혜영 · 윤후덕 · 이상돈 · 이석현 · 이종걸 · 이찬열 · 한정애 의원 발의)
- 17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용태 · 주승용 · 전해숙 · 김상훈 · 김관영 · 기동민 · 강석진 · 최도자 · 남인순 · 맹성규 · 김동철 · 신창현 · 김부겸 · 김상희 · 송옥주 · 유승희 · 박선숙 · 오제세 · 김성환 · 고용진 · 김병욱 · 이철희 · 서형수 · 김해영 · 소병훈 · 강창일 · 서영교 · 유성엽 의원 발의)
- 17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윤소하 · 장병완 · 천정배 · 박주현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정인화 · 최도자 의원 발의)
- 17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윤소하 · 김병기 · 임종성 · 김상희 · 장정숙 · 윤일규 · 김경협 · 이용득 · 박정 · 강훈식 의원 발의)
- 1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이찬열 · 유성엽 · 장정숙 · 김경진 · 황주홍 · 정인화 · 정동영 · 박주현 · 천정배 의원 발의)
- 18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송갑석 · 강훈식 · 김민기 · 원혜영 · 신창현 · 김성수 · 이규희 · 송옥주 · 박광운 의원 발의)
- 18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이상현 · 유동수 · 최재성 · 신창현 · 이정미 · 이용득 · 황주홍 · 김철민 · 신경민 · 한정애 · 이인영 의원 발의)
- 18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천정배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 18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종걸 · 어기구 · 이원욱 · 이규희 · 안민석 · 전재수 · 이석현 · 김두관 · 정성호 의원 발의)
- 18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 · 신동근 · 채이배 · 정춘숙 · 윤관석 · 김정호 · 정세균 · 최재성 · 박재호 · 서형수 · 이동섭 · 이인영 · 손혜원 · 송옥주 · 조승래 · 정인화 · 김병기 · 안민석 · 노용래 의원 발의)
- 185.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 · 정세균 · 서삼석 · 홍문표 · 박재호 · 김현권 · 김철민 · 이찬열 · 황주홍 · 심기준 의원 발의)
- 186.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서형수 · 윤준호 · 정세균 · 신창현 · 신동근 · 박재호 · 최인호 · 김철민 · 정재호 의원 발의)
- 1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46)
- 1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박정 · 전현희 · 최인호 · 이후삼 · 송갑석 · 민홍철 · 이재정 · 윤일규 · 김병기 · 김경협 · 조승래 의원 발의)
- 1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도종환 · 김병기 · 신창현 · 원혜영 · 김현권 · 노용래 · 최재성 · 강창일 · 김민기 의원 발의)
- 1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춘석 · 김정우 · 이원욱 · 김병기 · 김재원 · 김관영 · 정갑윤 · 송영길 · 김세연 의원 발의)
- 19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영호 · 박범계 · 송기현 · 인재근 · 박주민 · 윤준호 · 오영훈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 1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조승래 · 기동민 · 이동섭 · 이용득 · 이규희 · 강훈식 · 박홍근 · 신창현 · 이석현 · 안민석 의

원 발의)(의안번호 20423)

19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기동민·신창현·송갑석·윤호중·윤후덕·소병훈·백혜련·고용진·인재근 의원 발의)
1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김성수·김종훈·소병훈·이철희·여영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74)
19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김성수·김종훈·소병훈·이철희·여영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78)
19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정세균·서삼석·홍문표·박재호·김현권·김철민·이찬열·황주홍·심기준 의원 발의)
19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유동수·기동민·신창현·강창일·송갑석·박홍근·조승래·고용진·김종민·박선숙·김성수·이규희 의원 발의)
19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박인숙·김광림·정유섭·이양수·김성원·박덕흠·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김승희·김현아·민경욱·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08)
19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박명재·박덕흠·안상수·정유섭·김광림·정갑윤·박인숙·홍철호·김성원·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01)
20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희·박지원·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 의원 발의)
2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원유철·문진국·송석준·이완영·윤상현·심재철·유재중·이주영·박명재 의원 발의)

2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경대수·김선동·김순례·김정재·윤상현·윤영석·이은권·임이자·함진규 의원 발의)
20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윤일규·이찬열·권철승·장정숙·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2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2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이원욱·안호영·윤관석·주승용·김종민·김경협·최인호·추미애·송옥주·정춘숙·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07)
2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서삼석·황희·이원욱·이규희·맹성규·안호영·김철민·김영진·김종민·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4)
2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안호영·김상희·위성곤·김해영·우원식·노웅래·강훈식·김병기·어기구·소병훈 의원 발의)
2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인재근·윤일규·신창현·김성수·이상현·이인영·강훈식·장정숙·윤소하·채이배·김상희 의원 발의)
2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희·이찬열·천정배·황주홍·조배숙·정인화·유성엽·정동영·장정숙 의원 발의)
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성일종·문진국·유민봉·정유섭·김순례·정종섭·정태옥·유동수·김상훈·여상규 의원 발의)
2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세연·김정재·조원

진·박완수·김진태·박순자·이은권·이
언주·민경욱 의원 발의)

- 2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병기·오영훈·박정·강훈식·김종민·서영교·백혜련·이종걸·노웅래 의원 발의)
- 2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태흠·김진태·추경호·곽대훈·이완영·주호영·이채익·정점식·여상규 의원 발의)
- 2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주승용·최교일·정진석·황주홍·김중로·김성원·권은희·정운천·이명수·하태경 의원 발의)
- 2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종대·이정미·여영국·추혜선·심상정·맹성규·인재근·최도자·김종훈 의원 발의)
- 21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성일중·추경호·김성찬·이명수·정인화·이채익·정세균·김한표·최연혜·송언석·김태흠 의원 발의)
- 21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김병욱·황주홍·조배숙·주승용·정세균·강훈식·이찬열·천정배 의원 발의)
- 21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신보라·김선동·원유철·서청원·이종명·정유섭·윤영석·홍문종·이명수 의원 발의)
- 21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윤종필·이명수·성일중·백승주·문진국·조훈현·주광덕·김석기·박덕흠·이철규·김종석 의원 발의)
- 22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황주홍·이동섭·홍문표·유성엽·이상헌·정유섭·천정배·이용주·위성곤·성일중·오영훈·윤영일·

주승용 의원 발의)

- 2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유승민·김동철·문진국·윤준호·유승희·박정·금태섭·한정애·황주홍 의원 발의)
- 2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종희·정동영·손금주·주승용·이찬열·황주홍·윤소하·정세균·이동섭·윤영일·김삼화·하태경·박선숙 의원 발의)
- 22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안규백·유승희·김영춘·이종걸·김두관·김부겸·박재호·김종민·민병두·조승래 의원 발의)
- 22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규희·신창현·김세연·우원식·윤소하·변재일·전재수·이인영·유성엽·원혜영·기동민·인재근·정성호·서영교·신경민·안호영·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31)
- 22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규희·신창현·김세연·우원식·윤소하·변재일·전재수·이인영·유성엽·원혜영·기동민·인재근·정성호·서영교·신경민·안호영·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73)
- 2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학재·김무성·문진국·정갑윤·정운천·원혜영·김명연·유기준·김현아·김상희·하태경 의원 발의)
- 2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상헌·이동섭·김경진·장병완·조배숙·정동영·윤영일·채이배·홍문표·김종희 의원 발의)
- 2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안호영·조승래·이동섭·이용득·이규희·강훈식·윤호중·신창현·이석현·안민석 의원 발의)
- 2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신창현·송갑석·이규희·소병훈·우원식·박홍근·이학영·김병기·김병욱 의원 발의)

2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이원욱·안호영·윤관석·김영진·주승용·김종민·김경협·윤영일·최인호·고용진·기동민·추미애·조응천·송옥주·전혜숙 의원 발의)

2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윤상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1분)

○**위원장 金世淵**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2항 윤소하 의원이 소개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3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맹성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의원** 존경하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2월 28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은 약 36만 가구에 이르고, 이들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빈곤율이 높아 양육비 지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양육비 지급을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마련되고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률은 18년 기준 32.3%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에 맞는 위상 및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고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고의로 양육비를 해태한 경우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만 5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든 주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낮은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아동빈곤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안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양육비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마땅히 저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맹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57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제출 법률안 및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

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의원 개설 신고 등 의료법 내 각종 신고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정부 전체 규모는 총 6조 7000억 원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복지부 소관은 3486억 원이며, 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안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대응 분야 5개 사업과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민생 지원 분야 6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복지부 추경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 해소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추경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경 편성 방향은 국민의 일상에서 식·의약 안전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기본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식약처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14억 원으로서 저가 불량 마스크의 시장 유통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건용 마스크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식약처가 식품 및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빈틈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및 주요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같이 금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안전사용과 품질확보를 위한 검사시스템을 확대하고 아울러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등 대국민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 예산액 5110억 원보다 14억 원 증가한 51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1개 사업으로 지방청 등 소속기관의 보건용 마스크 품질확보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시험·검사장비 구입비 13억과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 및 청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28건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137건에 대하여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희** 먼저 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검토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03억 원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083억 원 등 총 34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9개 세부사업의 경우 2019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는데 유사한 목적으로 또 추경이 편성되었으므로 추경요건과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 등의 경우 본예산편성 당시 예산 부족이 예측되었음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으로 증액된 금액은 1221억 3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의료기관에 전년도 진료비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을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의 경우 진료비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초고농도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마스크 구입비용을 지원

하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은 323억 원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간호·조산법안과 김세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간호법안은 간호인력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간호서비스의 다양화, 전문화를 반영하여 다른 의료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역 유형별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체계 개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윤종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리베이트 행위를 하고 아직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의약품 공급자도 개정법률 시행 후 리베이트 행위를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정지 처분이 해당 약제를 필요로 하는 선의의 환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처분 대상을 소급 적용하여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약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급여정지보다 항구적인 약가인하 처분이 더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조기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연금 수급자가 되어서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게 되면 어떠한 혜택

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연금 수급자가 조기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24항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혈액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설하려는 정책원의 업무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9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지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증액 편성한 114억 4100만 원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규 이용자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활동지원급여를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예산 부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7년 12월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편성 시 신규 이용자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장비 구입사업 추경예산안은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규격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13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지만 금년 4월에

본예산을 활용하여 식약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장비의 일부를 이미 구입하였으므로 중복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정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임신부의 임신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를 달리 정하되 기존의 낙태 허용범위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낙태죄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과 제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세연·임이자·김동철·인재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는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도 입법보조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명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65세 미만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성 질병의 발병 시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결정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추가 재정의 확보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3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33.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질병관리본부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 국민연금공단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시31분)

○위원장 **金世淵**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33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청취하고 질병관리본부 및 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들의 인사말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되었으니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건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지지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아파도 비용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31년 만에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제를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임세원 사건, 진주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새로운 보건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의료, 돌봄 등 국민 삶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입니다.

김현주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감사관입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근 국제협력관입니다.
 최태봉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입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입니다.
 장재혁 복지정책관입니다.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이강호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광숙영 노인정책관입니다.
 김상희 보육정책관입니다.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김서중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금렬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염민섭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박 옥 질병예방센터장입니다.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정호원 생명의과학센터장입니다.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MRI·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병원급 2·3인실 급여화 등 3대 비급여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 응급의료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선 등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수가 모형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협진 활성화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병 대응과 결핵관리에 필요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방·건강투자 강화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대장내시경검사 실시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 예방을 강화하고 퇴원 환자, 자·타해 환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공공 목적의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기업 연계를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득기반 마련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과 위기 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자활급여 인상, 자활장려금 도입을 통해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연령 확대 등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산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권익 신장입니다.

7월 1일부터 획일적 장애등급제 대신에 장애인 욕구에 따른 지원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지원, 거주시설부터 시작하여 향후 이동지원, 소득·고용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신설, 방과후활동서비스 확대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

스원을 설립·운영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돌봄·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외래진료비 경감 등 의료지원 및 임신·출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등 아동보호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쉼터 확충 등 취약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유아·초등생 돌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씩 추가 확충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내실화하여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도 완화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 지원입니다.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를 적극 지원하여 공적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주주권 행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10만 개 추가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를 지속 확충하고 개인 욕구에 따른 통합재가급여 지원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도 내실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안과제입니다.

13쪽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입니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조

2000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약 3600만 명의 국민들이 보장성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발표된 계획에 따라 보장성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관리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입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완화대책 마련, 의료 과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의료이용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은 현장 혼란 없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조사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활동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례관리 등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지자체 및 연금공단 현장인력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17쪽 이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항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처 주요 업무의 추진현황과 현안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듯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과 계절을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 국경을 넘나드는 질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요인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과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각종 생활용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처는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안전의 기본은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처 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약품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식약처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처가 추진하고 있는 상세한 정책과제는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약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입니다.

김진석 기획조정관입니다.

백혜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입니다.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참고자료의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먹거리 안전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사전통보 없이 전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도 HACCP 기준에 대해 사전인증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이력이 있는 학교를 전수점검하고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식재료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축수산물과 수입식품을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유통 단계 관리를 위해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등록된 농약만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는 PLS 제도를 1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관 전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발생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실사를 방해·기피하거나 무응답한 경우 해당 업체 식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하여 기준치 이상 방사능 검출 시 통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에 대해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하여 수입제한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다이어트 식품, 탈모방지 샴푸 등 온라인 유행제품을 기획조사하고 불법판매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있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검사를 신청한 노니 제품과 천연 에센스 등을 수거·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을 회수 조치하는 등 국민 관심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의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편의점 도시락 등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식생활 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약, 의료기기, 생활용품의 안심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인 세포와 조직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을 추진하고 세포의 품질·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 또는 생성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해 허

가·등록 시 안전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유통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위탁생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의료기기 제품별로 허가·유통·사용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표준코드 부착이 4등급 의료기기부터 의무화됩니다.

7쪽입니다.

사용자 보호를 확대하고 생활 속 안전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올해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임상 진행상황과 이상반응 등이 공개됩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 취급자를 선별하여 집중감시하고 있고 전담팀을 통해 마약류 불법유통 현장을 집중단속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하고 인공눈물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의 안전사용 정보와 식품의 섭취·보관 시 주의사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에 따뜻함과 소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뇌전증 치료제 등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 심장수술용 인공혈관 공급도 재개하였고 올해 6월부터는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 수입·공급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관리도 지원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에 이어 어르신이 이용하는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관리서비스를 7월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음식점에서 식재료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카페인을 함유한 의약외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표시 확

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맞춤형 규제에 혁신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첨단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4월 제정된 혁신의료기기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을 운영하여 융·복합 제품의 품목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맞춤형 허가·심사와 제품화도 지원하고 있으며 최초 개발신약 등에 대한 특별심사팀을 운영하는 등 허가·심사 체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를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하여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관리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이상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진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으로 인보사케어주 사건의 진행경과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인보사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사건의 진행경과를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환자안전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간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9일 인보사 제조·판매 업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제품의 주성분 중 2액이 당초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식약처에 보고하였습니다.

3월 31일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업체는 인보사를 제조·판매 중지하였고 정부는 환자에 대한 추가 처방과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탑재하고 의사분들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업체의 보고 이후 식약처는 국내 제품에 대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

였고 국내 제품 역시 신장세포로 확인되어 4월 15일 업체에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투여 환자 정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업체는 5월 3일 자 주주 공시를 통해 17년 3월 코오롱티슈진이 실시한 시험에서 2억이 신장세포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쪽입니다.

식약처는 허가 내용과 다른 제품이 만들어진 경위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체 시험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업체 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업체가 허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고 허가 전에 확인된 주요한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의 주요 조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자료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7월 3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허가와 다른 내용의 의약품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형사고발했습니다.

15쪽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과 일정 기간 후 세포가 자연히 사멸하는 시험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까지는 환자안전에 큰 우려는 없으나 만약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차질 없이 환자안전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환자안전 대책입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중점관리를 위해 모든 투여 환자 등록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최초 투여 후 15년간 투여 환자 전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이상반응을 추적조사하겠습니다.

종양 발생 여부 등 이상사례에 대해 연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부작용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상사례와 인보사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겠습니다.

장기 추적조사와 별도로 보험청구자료 등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환자의 부작용 이력을 조사할 계획이며, 인보사와 부작용 간 인과관계

가 입증될 경우 환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업체와 구체적 보상 방식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허위자료 제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허위자료로 허가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와 별개로 약사법상 최고 양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허위자료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확대하고 품목별 특별심사팀 운영과 공동심사 등을 통해 심사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여 허가 전 연구개발 단계부터 세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허가를 신청할 때 그간 사용된 모든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시험법과 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직접 시험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세포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제조·품질 관리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여 이후 장기 추적조사를 의무화하여 환자의 이상반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약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인사말씀을 들을 텐데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더욱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위험요인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에볼라병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 거부에 따라 홍역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내성과 의료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건강 향상을 위해 감염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인 위기대응체계를 완비하고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장 중심의 검역으로부터 다층적인 검역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출국 전 정보 제공, 입국 시 환자 선별과 유증상자에 대한 지원,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 연계 및 스마트 정보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 결핵 퇴치를 목표로 올해 5월 발표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범부처,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형, C형 등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건강정보의 수집 및 통합 분석을 통해 정밀의료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백신 연구 개발, 정밀의료, 재생의료 연구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첨단의료 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상세한 건강수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업하여 기저질환자 대상 건강수칙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및 기저질환자의 질병악화 기전과 예방·중재기술을 연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365일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시행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0불대에 의료보험을 시작해서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성취했습니다.

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많은 나라들이 제도 초기부터 오늘날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필수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이제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보장성 강화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도전은 더욱 커질 것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주도형 돌봄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보험료 부과 재원을 다양화해서 수입을 늘리고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여 지출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에서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착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입니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공단의 주요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단은 국민과 함께 개선해 나가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대학교와 사업장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 참여 인원은 상반기에만 약 6만 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들께서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6.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초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최초로 7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17년 7월 6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또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철저히 준비해서 장애인의 시각에서 세심히 살피며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합조사 인력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공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준 기금이사입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입니다.

(임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운영에 잘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수행한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원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3인실 병실료의 보험적용 확대, 흉부·복부 MRI와 비뇨기 초음파의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DUR을 고도화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 일련번호 등록률을 제고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그동안의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8월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의료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심사평가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지원, 의료기기 규제 개혁 등 혁신성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원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입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입니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우리 원의 주요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 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협의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무리 시간 1분을 추가해서 드렸던 부분을 하지 않고 7분 시간이 되면 일단 질의를 종료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金世淵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잠시 듣고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자료 요구 제가 부탁드립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님, 자료 요구입니다.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증가되면 보험료가 증가되지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김승희 위원 그 상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

○김승희 위원 하여튼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보험료 인상 가구 수와 추가 보험료 수입액 추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김승희 위원 9월 달, 이것 추계자료를 알아야지 보험료 인상률을 정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또 자료 요구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지요? 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또 보험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김승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계자료 좀 부

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위원장 金世淵 의사진행발언 더 없으시면 질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김세연 신임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3개월여간의 상임위다운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한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각성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전 같으면 긴급현안 상임위가 계속 열려서 이야기했어야 할 중대한 사태를 우리 국민들은 맞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인사 말씀에도 국민께 정중한 사과는 없었고 업무보고의 경과보고에 앞서 약간의 유감 표명을 한 인보사 케이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보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식약처장님, 5월 28일에 발표한 식약처의 조사 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자면 코오롱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일단 허위 서류를 제출했고, 두 번째 당시 식약처는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 그다음에 식약처도 속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맞습니까, 저기 제가 제시한 것? ‘예, 아니오’……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까, 기본 정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맞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렇습니다.

코오롱은 가짜 유전자세포치료제를 만들어서 식약처를 속여 허가를 받았고 3100여 명의 환자와 6만 명에 가까운 주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입니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능, 연구진과 학계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고의든 아니든 모두가 공조한 결과물이고 기업, 관련 공무원, 관련 연구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인보사의 허가과 관리를 책임졌던 식약처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앞전과 달

리 드라이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한 말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제가 국민 여러분께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미 검찰 고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언론에 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의혹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처장님이 식약처장으로 부임한 날이 언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올해 3월 9일입니다.

○**윤소하 위원** 3월 11일 아니던가요? 식약처장 취임한 후 20일도 안 돼서 인보사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지요?

화면은 인보사 사태 발생 이후 식약처의 대응 일지입니다. 3월 22일 사건을 인지하고도 국내 제품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9일 늦게 공표했고 그 때문에 27명이나 추가, 관련 주사를 맞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개발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지 단 하루 만에 허가 취소와 형사고발을 발표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리 다녀왔다면 허가 취소 결정도 그만큼 당겨졌겠지요.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아니, 허가 당시 그 세포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허가 취소까지 과연 두 달이나 넘게 걸릴 필요가 있었던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사이에, 맨 처음 사건의 발단은 미국에서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도 신장세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식약처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그런 조사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윤소하 위원**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입니다. 미국에 회사가 있을 뿐입니다.

일부러 지연시킨 것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윤소하 위원** 저희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를 근거로 질의드릴게요.

처장님, 이 신청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를 건강보험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작년이지요, 2018년 10월 심평원에 신청한 약제평가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 보신 적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신청서는 기업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신청서는.

○**윤소하 위원** 없다?

아니, 신청서에 첨부된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 보세요.

인보사의 건강보험의 등재 필요성과 그 경제성을 담은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예요? 처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이 연구는 제가 수행했습니다만 신청서는……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맞아요, 안 맞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맞습니다.

○**윤소하 위원**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인보사에 대한 용역을 맡으셨던 겁니다.

혹시 용역비용 얼마나 받았는지 밝힐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받으셨던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는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 이상입니다. 첩터별로 하지 맙시다.

다음의 자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평가 연구 내용을 보면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과 진행을 억제시키는 약제로 대체 가능한 약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통증 및 기능 개선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면서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급여의 기준에 적합하다’, 즉 인보사를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가 된다면 3년 만에 총 8791명이 사용할 것으로 봤고 건강보험 4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재정영향분석까지 했어요.

처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지요? 이 내용 다 기억하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 학교에서 저희 연구팀이 작성한 것 맞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 부분에, 거기 기재가 돼 있잖아요. 인보사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던 분이 인보사 사

태 수습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사태 수습이 객관적으로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보사의 경제성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가 난 그다음 단계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만 보지 경제성은 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소하 위원 그렇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경제성은 그다음에 보험급여 등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그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내려가야 돼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앓는 것을 전제로 해서 3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위원장 **金世淵** 그러면 2·3차 질의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해서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김상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희 위원 괜찮습니다.
.....

○윤소하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식약처가 초기에 대응이 늦었던 이유, 국회로의 자료 요구 등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인보사의 허가 취소까지 두 달이 넘게 지연됐던 이유, 식약처장이 인보사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결과를 보면 대단히 의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되어 있다..... 왜, 실제로 마지막 단계의 제한적인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되면 600만 원~700만 원 사이의..... 보면 3100명이 1년 몇 개월 만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 수요 예측은 다 해서 나왔던 건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급여로 등재됐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은 등재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 대상인 환자 부분들을 총합으로 해서 3년 동안 8000명이 넘게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급여 대상으로 되고 가격이 인하됐다고 생각합시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민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효도 상품으로 소문난 만큼, 입소문으로 나 가지고 700만 원짜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급여 대상이 됐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이 연구는 인보사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수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조건은 식약처 허가 내용이 그대로 효과가 있다, 인보사 사건 이전에 그 당시의 효과를 갖고 연구한 거고, 두 번째.....

○윤소하 위원 2018년 10월에 신청한 부분에 첨부됐던 것이에요. 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 연구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였습니다.

○윤소하 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 해명해 주시고.

만약 이 보고서로 인해서 건강보험 등재가 됐다 그러면, 연간 100억 원 이상씩 이 보고서에 의하면 거짓 치료제에 건강보험재정이 들어갔을 것이고 수천 명의 환자가 치료제로 사용해서 몇 배는 더 늘었을 것이다.....

처장님이 코오롱으로부터 수행한 이 연구, 지금 상황에서까지 연구결과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책임을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보사 문제만큼은 이의경 식약처장도 공조했던 연구자가 되는 거고 직접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보사 사태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 식약처장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개입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검찰수사와 별개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부당한 개입이 하나라도 확인됐다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저는 이 경제성평가 연구에 대해서 국민 앞에 떳떳합니다.

경제성평가는 신약을 보험급여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이고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연구로서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적은 상황에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인보사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사퇴할 의향도 있고, 저는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심평원에 있는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내용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윤소하 위원 식약처장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쪽 설명해서 보고서로 본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김세연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책 시행으로 3600만 명의 환자가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는 성과를 얻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또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남인순 위원 문재인 정부.
○김상희 위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남인순 위원 참여정부라고.
○김상희 위원 제가 참여정부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왜 그랬을까요?
(웃음소리)

그렇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최근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 남용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대형병원 쏠림 현상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주 익숙한 기사 제목들이 보일 것입니다.

‘빅5 병원 쏠림, 손볼 때 됐다’, 이게 2008년 7월 기사인데요. 쪽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쏠림 현상이,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문재인 케어가 이 부분을 더 확대했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통계를 보니까 전체 입원일수 중에서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에 14.9%인데요, 2018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나서 16.7%였습니다. 증가는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원 점유율도 보니까 2008년에 4.1%고 2018년에 5.6%로 나타납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역시 지난 10년 동안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정감사나 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문제인데요. 1989년에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1·2·3차 의료기관을 정해가지고 각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보험급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1998년에 지역 간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명분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의료전달체계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적절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 다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 1월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정권이 바뀌고도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리고 권고문까지 채택을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기자회견 통해서 요구한 사항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인데 장관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의사협회에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서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보면 보험료 폭탄, 적립금 소진, 재정 파탄, 아주 굉장히 공포스러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를 낮추려면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마땅하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당초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할 당시 국민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시 2018년 예상 적자가 얼마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당초 예상은 저희들이 1조 한 12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1778억의 적자가 났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상희 위원 이 적자는 정부의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는 좀 적게 났습니다.

○김상희 위원 최근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3.2%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인상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은 연평균 3.2% 정도의 보험료 인상률로 한다면……

○김상희 위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계획된 대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적립금에 대해서도 지금 한 10조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 지불준비금 10조 원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희 위원 어쨌든 문제는 국고지원인데요. 작년과 올해 지원율이 13.4%입니다. 법정 20%를 못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지원율이 15.7%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이렇게 건강보

험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 정부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결국 예산을 배정해야 될 재정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예산부터는 좀 더 국고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희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목소리만 갖고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건강보험 관련해서 재정관리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복지부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이 재정관리TF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TF가 어떤 주체들로 구성될지는 제가 조금 더 여쭙보고 싶습니다라는 예컨대……

○김상희 위원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라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가 TF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거라면 기재부라든지 또 사회 부처를 관장하고 있는 전체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TF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희 위원 재정절감 대책을 포함해서 건강보험재정 관리를 대처하기 위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다 포함이 되고요. 기재부와 그리고 연관되는 부처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在仲 위원 자유한국당 유재중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한 유능하신 김세연 위원장님 모시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2차 질의 안 할 테니까 10분으로 시간을 좀 맞춰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시는 자료는 올해 4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재무전망입니다.

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재정추계 적자를 좀 축소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거든요.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까지 누적 적자가 9조 5000억에 달하고 이로 인해 20조 원이 넘는 법정준비금은 11조 원으로, 반 토막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님, 재정지출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법정준비금 1.5개월분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이번 종합계획의 재무전망에서 앞전 재무전망과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작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과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가정을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보험료 인상률이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수가 인상률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하고. 단지 지출 관리에 있어서 보험급여비의 지출 절감을 1%에서 3%로 3배나 높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앞서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柳在仲 위원 재정적자 보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재정적자 보전하기 위해서……

○柳在仲 위원 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재정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명분이 선다는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柳在仲 위원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출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柳在仲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좀 솔직해 봅시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를 작게 보이려고 수치를 부풀린 게 아주 눈 감고 아웅 식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이 자료는 작년 9월 국회에 보고된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의 1% 지출 절감액입니다. 1% 지출 절감액의 내용을 보면 3% 절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올해 보험급여비의 예상액은 68조 5000억 규모로 1% 지출 절감액이 6800억이나 됩니다.

1%라는 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6800억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는 8500억으로 매년 600억 가까이 증가합니다. 1%로 표현돼 금액이 적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수천억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지출 절감액을 1%로 재가정해 가지고 추계한 자료를 담당 부서에 요청했거든요. 그 결과가 보시는 자료입니다.

누적 적자는 9조 5000억에서 3조 6000억이 늘어난 13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2023년도 법정준비금은 7조 4000억입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앞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셨던 10조 원보다도, 지키겠다는 건데, 훨씬 아래로 떨어져요. 7조 4000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관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존 재정추계대로 하면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폭탄을 숨기기 위해서 지출 절감을 부풀려, 절감률을 부풀려 적자를 축소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1%에서 3%로 지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눈속임하는 거예요.

자, 과연 3%, 금액으로는 7조 원을 5년간 절감이 가능할까요? 3% 이렇게 지출 가능할까요?

제가 확인을 위해서 작년도 절감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1% 지출 절감 실적 목표치인 6000억 원도 안 됐어요. 6000억 절감도 안 됐어요, 1%도. 1000억이 부족한 5000억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상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하는데 5

년간 7조 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또 이렇게 3%로 하게 되면, 5년간 7조 원을 줄이겠다는데 그 계획을 달라니까 달랑 A4 2장으로 왔습니다. 이마저도 지금까지 1% 지출 줄이겠다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1%도 줄이지 못하는데 이 내용 가지고 3%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속임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지출 절감이 되겠습니까? 좀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적자를 내면서 자꾸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하면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장관님, 이 순간은 좀 모면할지 몰라도 문 케어가 머지않아 재정폭탄이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겨우 2%를 지킬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3.49%나 지속적으로 높이면, 절반을 부담해야 할 기업과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살펴봐야 되지요.

제가 보장성 확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재정안정성과 국민부담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문 케어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경제 여건이 재정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은 그러고 싶겠지요. 1% 절감해서 3%로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 재정적자를 지키겠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앞선 계획에서도 1% 줄인대도, 6000억 줄이겠다는데도 5000억밖에 줄이지 못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려면, 여기 3% 하려면…… 지출 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계획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오는 계획은 실현되지 않는 거고,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정부 지원을 대폭 하든지 수가를 인상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3% 줄여 가지고 법정준비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조 원 이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장관님,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柳在仲 위원 또 이야기가 있겠지요, 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柳在仲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데이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실 이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컨대 재정지출 1%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과 3%의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저희 행정부의 부담으로 볼 때는 1%가 훨씬 보고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보고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또 매년 그 결과치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양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柳在仲 위원 잠깐만요. 그 강한 의지 좋아요, 의지. 그런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숫자를 넘으로 인해서 속이는 거예요. 1%도 요양병원 다 나와요. 이렇게 강화하겠다 해서 1% 해서 6000억을 줄이겠다는데 5000억밖에 줄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3%, 더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요. 왜냐? 3%를 하는 것은 법정 재정추계를, 재정적자 나는 추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눈속임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그 5개년 계획에……

○柳在仲 위원 장관님, 몰라요, 내 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5개년 계획에 밝혀져 있는 재정수지는 저희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추계한 겁니다.

○柳在仲 위원 아니, 데이터에 나와 있고 여기 있잖아요. 보험료, 여기 재무전망에 나와 있잖아요. 지출 관리 전년도하고 이번하고 보고했던 내용에서 1%로 계속 가게 되면 재정적자가 많아지니까 지출 관리를 3%로 올려 가지고 적게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적게 보이면…… 3%에 좀 전에 장관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의지가, 내용이 여기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A4 2장. 이것도 1% 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니깐 더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 있어요. 특별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겠다, 정부 지원을 높이겠다 이러면 내가 또 이해는 돼요. 그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수치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말씀하신 재정조달 방안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가 종합해서 결과가 앞으로 5년 뒤에 지불준비금이 얼

마나 남을지 결정될 겁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부담할 재정 지원은 저희들이 가장 적게 잡았습니다. 13.6%로 고정된 걸로 잡았는데……

○**柳在仲 위원** 정부 지원을 높이든지, 그것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나 똑같은 돈입니다만, 국민 돈인데 지원을 높이든지 인상을 해야 되지 지출 관리를 1%에서 3%로 한다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거지. 그게 지출 관리가 절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柳在仲 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 국민 눈을 속이는 거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 중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의료의 과이용……

○**柳在仲 위원** 그래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건보재정이 적자로 가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까지는 괜찮겠지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인상하게 되면 기업도 부담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도 부담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솔직해야지, 솔직해. 정부 정책을 솔직하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됐네.

추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목표치 삼은 대로 단계적으로 1%, 2%, 3% 이렇게 재정지출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柳在仲 위원** 하여튼 추경도 보니까 완전히 정부가 재정 중독에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되든 간에 돈 퍼 주기 식 하는 이 추경, 면밀히 따져서 추경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이석을 하게 돼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식약처장님께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를 건강보험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약제평가신청서를 냈는데 거기에 첨부된 보고 작성서가 있는데요. 작성자로서 거기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 계약사항은 코오롱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사항으로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까는 전반에 대해서 다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주신다고 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계약서 조건에 동의…… 보고서 자체는 저희 계약서 조건하에 양쪽 계약자가 동의를 해야만 외부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동의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동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윤소하 위원** 지금 이 사태에 그게 성립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계약……

○**윤소하 위원** 아니, 작성하신 그 원본만 내주시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법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자면 오전 질의를 위원님들 여러 일정들을 감안해서 맹성규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미세먼지였습니다. 복지부에서 작년 추경에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고요. 올해 추경에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자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8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복지시설의 환경이

천차만별인데도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 기준을 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큼니다.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나 재가노인시설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몇 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9개 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복지부는 시설의 크고 작은 이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개소별 200만 원씩 배정했어요. 그러면 규모가 큰 시설과 규모가 작은 시설을 이렇게 똑같이 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표로.

이 표를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223개 중 중증 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의 방이 총 4228개인데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숫자는 499대에 안 됩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583대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지금 예산으로는 217개, 시설별로 보면 3대씩 총 651대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도 여전히 2932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가 약 3000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못해도 칠팔십%는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상당히 옳으신 말씀 하셨고요. 다만 예산편성할 때는 하나의 편성기술적인 문제로 일률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145㎡ 이상 시설에 대해서 3대씩.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각 시설별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배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정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나눠 줄 때는 각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비례적으로 나눠 주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만.

○최도자 위원 편성도 이것은 말이 아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편성할 때에 좀 깊이 생각해서 현장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증장애인들은 건강상태가 더욱 안 좋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보다도? 건강이 허약한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거의 실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도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 이것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예산 올리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

○최도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어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민수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할 때는 단기 사업이라고 내년도 예산에 안 넣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민수 기재부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도자 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223개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의 칠팔십% 이상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도록 하면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계산해서 내 주시면 예산심사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리고 장관님, 지난 4월 5일 날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최도자 위원 그래서 보육시간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관님과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6월 22일 날 5년 만에 표준보육료 산정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최도자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용역 이것을, 표준보육료 산출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 주실 것으로 믿고.

이번 용역 결과를 보니까 0세 받은 22.4% 인상이 되어야지만 운영이 효율적으로 된다,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보니까 평균 20% 이상을 올려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상을 해 줘야만 운영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좀 더…… 용역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용역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제가 1초만 쓰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용역 결과도 보육 지원 체계의 개편을 위한다면, 지금까지 용역 결과 나와도 그것을 무시하고 표준보육료 단가를 안 쳐줬잖아요. 그러면 이 표준보육료 단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예산에다가 좀 신경을 써서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증액시키고 하면 그게 예결위 가면 또 삭감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운영되게끔 복지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면 그 결과를 기초로 저희들이 표준보육료를 산정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걸 기초로 지금 서로 상의 중에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감사합니다.

오늘은 협의된 바에 의해서 마이크 시간을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우선 김세연 위원장님, 앞으로 큰 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인보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보사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질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면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올리타정과 발사르탄, 여러 가지 신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보다도 몇 배의 파괴력이 있는, 식약처의 무능을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는 내용이 도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보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인보사 사태 관련해서 식약처의 조사 결과만을 따르다면 마치 코오롱생명과학이, 업체가 대국민 사기극을 꾸민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식약처가 허가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인보사 1액과 2액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EK 293이 태아신장유래세포에서 발현이 된 액이고 이것이 현재까지 체내에 주입할 수 없는 물질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여태까지 인체에 투입한 경험이 없는 물질입니다.

○김순례 위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보사 관련 1차 중앙약심위에서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여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1차 회의에서는 ‘불가’가 나왔는데 그 이후 두 달 만에 허가가 나는 그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1차 회의록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식약처 직원이 ‘7년 이상 추적을 했는데 중앙 발생 보고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까지, 해명을 해 줘요. ‘구조 개선보다는 증상 개선 목적으로 한 제품이다’ 이런 해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장님, 식약처는 규제기관입니까, 아니면 산업진흥기관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기관이고 여기 나온 내용은 저희가 당시에 제출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김순례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중앙약심을 또 들여다보니 심의위원 중 한 분이 질문을 통해서 안전성·유효성 개선 많은 품목인데, 생명 위협 질환도 아닌데 이렇게 규정상 품목허가 대상이 맞는지 물으니 식약처 직원은 ‘과거 규정은 무분별한 연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식약처의 자의적인 해석이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1차 중앙약심에서는 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허가를 했고 1명이 불허를 얘기했고 불과 두 달 후 2차 심의에서는 반대를 했던, 의의제기를 했던 3명이 불참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위원 5명이 보임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2차 심의위원으로 참가했던 신규 위원을 제가 면면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기업 성향의 기업 대표를 겸직하는 분들이 잔뜩 모여 계시더라고요, 이게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2차 약심에 참여한 김선영 대표라는 분을 제가 알아봤더니 인보사 업체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와 돈독한 유지 관계가 있었고 출신 학교부터 직장까지 동일한 데서 한 8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고 또 한 언론을 통해서 ‘김수정 상무는 2002년 김선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바이로메드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한 8년 동안 일했다’……

처장님, 식약처에서 심의위원을 규정하고 신임을 할 때 중앙약심위원회에 대한 제척과 기피 사유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근거 문헌을 갖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라서 직무윤리 서약서도 받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약사법 시행령 14조에도 제척 사항과 기피 사항에 대해서 저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오롱의 김수정 상무는 인보사 개발 참여 업무를 통해서 상무까지 진급했고 또 이번에 최근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하셔서, 인보사 사건으로 3000명의 환자와 2만여 명의 주식 개미투자자가 아주 독박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이 관련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공분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표창 수거 명령하시고요. 이것 진행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 그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중앙약심의 신규 위원인 강창을 대표도 셀리드라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김선영 대표와 과거 2000년도에 팬체노믹스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바가 있는 멤버고요. 또 신규 위원 중 송해룡 대표도 (주)오스힐이라는 업체의 대표자이면서 이분들이……

안전성·유효성을 지적하며 자료 보완 요청을 했던 1차 심의위원들이 배제되고 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분들을 모두 모아서 의결했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2차 중앙약심 위원장을 맡았던 유향숙 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데, 안건의 시작과 종료에 따라서 위촉과 해촉이 됐던 비상임위원입니다. 이렇게 위중한 안건을 다루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식약처 대응 방식도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약심의 회의록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답을 받았고, 또한 검찰수사 대상 중에 중앙약심위원 포함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우리 처에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는 이용렬 회장과 그의 동창인 이관희 교수, 이 사람은 인보사의 코오롱티슈진, 미국 바이오 협회 대표를 맡은 바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뭐 주시는데 이따 답변 바랍니다.

2017년 6월부터 9월 사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 10만 주를 팔아 가면서 이번에 이 문제가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모든 주식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식약처를 포함해서 공적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관희 교수 또 식약처의 직원, 중앙약심위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체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에서부터 연루됐던, 인보사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를 정중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전에 감사원 청구를 하셨지요? 저도 동일하게 감사원 청구를 요청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예, 간사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차 약심의 위원들 구성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중앙약심 상임위원 숫자를 맞추는 그런 과정 그리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그렇게 구성된 것이고 다른 의도를 갖고 특정 전문가를 배제하거나 참여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척·기피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규정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중앙약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중앙약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감사원 요청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을 당해서 검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저희 규정 상으로는 검찰수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원 청구를 해도 기각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끝난 다음에도 의혹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제안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식약처 주변에 인력풀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심위원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몇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둘러막기

같은 행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절제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요청도 있으셨기 때문에 3당 간사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 남다른 식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세연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너무나 오랜만에 열려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특히 인보사 관련해서는 별도의 현안질을 할 만큼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를 하다 보니까 다른 법안이나 예산 분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식약처장님, 인보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인보사에 회수·폐기를 공식 명령하였잖아요? 그리고 처분 사유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는 정당한 것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남는 문제는, 오늘 여러 각도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환자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서는 지난 달 5일에 환자 안전 대책 수립을 하겠다고 했고 오늘 보고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장기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보사 투여 환자 중점관리를 위해서 환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자 등록이 많이 안 됐어요. 투여 환자 3700명에 비해서 36%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요?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오늘 현재 1955명이고 전체 환자의 65%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진한 것은 이 의약품이 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협조 없이는 등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협조를 좀 독려할 수 있도록 저희 식약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빨리 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부작용 보고 사례를 제가 받았는데 약 199건에 달하더라고요. 부작용 보고 사례가 별로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199건인데, 물론 이것이 부작용과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췌장암이라든지 위암종이라든지 간신생물,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사해서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반응을 추적조사해야 되는데 보니까 앞으로 15년간 추적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식약처가 총괄하고 업체에서 이행하고 비용을 식약처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용 부담하고 하는데 환자단체 등에서는 그 관리를 정부기관이 같이 포함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환자 장기 추적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산하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관련된 전문기관입니다. 법적으로도 인증이 된 기관이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사후적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이 과정에 참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한번 잠깐 말씀해 보시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환자 조사나 추적관리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대한 책임은 약사법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협의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장관님, 어제도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셔서 오늘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문 케어와 관련해서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문제인 케어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외래환자에 대해서 보면, 중증질환 치료를 힘써야 될 상위 5대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보면 점점 이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래비용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개선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아주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동시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급병원들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쪽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면 자연스럽게 중증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단기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 단기 대책은 말씀 들었는데요. 사실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하려면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 재정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없이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이렇게 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2016년도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할 때 그때 당시 서울대병원장이 출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 쟁점이 뭐였느냐면 서울대병원에 첨단 외래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면 광역 단위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 중의 하나인데, 관리를 물론 교육부가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국공립, 국립대병원과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해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견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공립대학병원을, 특히 국립대학병원을 직접적으로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긴밀히 몇 차례 논의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겠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고 지금 그것을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두고 보면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저는 마포울의 무소속 손혜원입니다.

위원장님, 교문위 활동에 이어서 여기에서 다시 뵈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식약처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여상 전 프로야구 선수 야구교실의 유소년 불법 스테로이드 투여 사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처장께서는 유소년이라는 선수의 나이대를 몇 살부터 몇 살로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보도에 의하면 고등학교까지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유년·소년 해서 보통 14세 이하 정도를 얘기하는데 스포츠 관련해서는 유소년이라는 말, 어린이라는 말 대신에 유소년이라는 말을 쓰면서 고등학교까지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니까, 제게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적발이 된 두 명의 선수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다시 또 확대해서 여러 야구교실이라든지 다른 선수들한테도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지금 해당 야구교실을 운영하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고요. 더 확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동영상 하나,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여상 야구교실에서 일을 하던 코치입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이분들의 얘기를 이해하고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전부 취소를 하면서 뭔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요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과 보내는 자의 이름이 노출이 되면서 택배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약물에 대해서, 약물들이 이렇게 불법 유통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식약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요새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물 이런 데 공개가 되다 보니까 SNS 이런 것에 친숙한 젊은층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위원** 불법적인 약물은 아닙니까, 이때 유통됐던 것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약물 자체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유통 자체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불법유통이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지금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여상 전 선수에 관련된 사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한테 이것이 투약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맞으려고 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소년 선수들한테 팔았던 액수가 1억 6000만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가 맞으려고 했다라는 게 1억 6000만 원어치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약품을 권유했고 그리고 판매했고 투약을 지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직접 주사를 놔다라는 증언도 나오는데 자기가 맞으려고 했다라는 얘기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두 명이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국장께서 말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김진석** 기획조정관입니다.

공급책에 대해서……

○**위원장 金世淵** 마이크를 쓰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김진석** 불법 의 약품을 유통시킨 유통 공급책……

○**위원장 金世淵**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김진석** 기획조정관 김진석입니다.

불법 스테로이드 약품을 공급한 조직책이나 공급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있고요. 그 약을 내용 정황을 알지 못하고 투약을 받은 학생, 유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 처벌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

체부나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이런 부분이 달리 나눠져서 우리 해당이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구별하기에는 이 대상들이 유소년이라는 것이지요. 이 학생들의 미래가 이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입에 프로 선수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봐 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지금 여기서만 자행된 일이 아니라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좀 아프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후에 또 필요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 온라인쇼핑협회하고 업무협력을 통해서 더 열심히 사전 차단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서 이런 불법 의약품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 위원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후에는 질의를 생략할 테니까 2~3분 좀 더 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재활난민이 되고 있는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시설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받아서 2018년 10월에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 2022년까지 9개 권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우고 민간 재활 인프라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계획도 엄청 축소되고, 수도권도 제외되고요. 그리고 예산도 한 70병상에 450억이 필요한데 80억만 국고가 지원 돼서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게 재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다음에 심평원장님, 소아재활 치료 이것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가를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수가 조정 언제 나오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수가 조정 부분

이 몇 월에 나오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한번 확인을 해서 가지고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하나,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가 지금 법무부에 일임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은 그다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도, 영국·독일·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는 보건정책 부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제도를 좀 보완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마련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맹성규 위원** 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19일 2주년을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응답자 중에 54% 이상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56% 이상이 '더 늘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전 중에 많은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맹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지출 효율화고요. 절약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 규모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도 필요하다면 적정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재정당국에 필요하다면 국고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의사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쭙볼 텐데요.

담당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님.

오전에 유재중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걱정을 하시면서. '1%도 지출을 줄이

는 것이 어려운데 과연 3%가 되겠느냐,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무자로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할 때는 지출 효율화를 1%로 정했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에 3%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해서 23년 뒤면 90조가 넘어서는 순간인데 지금 저희가 지출 효율화를 1%한다고 하면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3%까지는 가야 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안도 있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 장기 추진과제로 분류해서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것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개선은 11월부터 저희가 4년에 걸쳐서 추진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정보 교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중복 진료를 줄이면 그만큼 검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확대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좀 더 확장해 나갈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암환자의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도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이나 일부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경증질환까지 산정특례를 다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국민한테 지지를 받고 국민한테 필요한 제도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서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발굴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지금 보건복지부가 준비하시는 대로 3%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국고 그다음에 보험료, 적립금 사용하는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다음에 보험료 인상 관련해서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 8%에 근접하기 위해서 26년까지 즉 정부 보험료율 인상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해 본 바로는 3.49%를 안 올리고 매년 3.2%를 올려도 목표 연도인 26년에는 보험료율이 거의 8%에 가깝게 달성성이 되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험료율을 0.29% 추가 인상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1700억입니다. 1700억은 충분히 국고보조의 확대 또는 지출효율화로 감당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불필요하게 소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건보심심의 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이 국고지원 확대를 이유로 건강보험료 인상 심의를 일단은 거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일단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맹성규 위원** 유보되어 있는데, 3.2를 계속 올려도 충분히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앞서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다가 끊어졌는데요. 저희들이 보험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고지원도 13.6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했고 보험료율도 맵시범으로 올린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였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결과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를 드렸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책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들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그때그때 가장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이 좀 많아지면 그해는 보험료율을 좀 낮추고 사회적으로 순응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정책 대안을 조합해 가면서 제도를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부여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특례업종 제외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대책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기국회 때는 문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리고 인보사 관련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보겠습니다.

환자 대책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이것은 우리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가는 데 굉장히 심각한, 신뢰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약처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식약처장님,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갖고 계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 식약처에서 허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옥석 가리기를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허가 심사할 때 교차검토라든지 세계 최초로 허가되는 신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심사한다든지 허가심사체계를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식약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제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제도도 개선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회가 오랜만에 열린 만큼 그동안 밀려있던 업무보고 또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이 좀 길어지면서 오전 질의가 늦어진 점,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기관장님과 간부님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

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金世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제세 위원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대한민국 복지의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에 비해서 부족하다 하는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새 많이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제세 위원 그다음에는 복지가 미흡한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비롯해서 보험료라든지? 그 보험료가 낮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복지가 낮는데 내는 돈도 낮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그다음에는 내는 돈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받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다 하는 것도 제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낮다 이렇게 제가 또 정의를 내렸는데요. 사회복지종사자라고 하면 우선 의사를 비롯해서 건강보험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여러 가지 수가에 대해서, 수가가 낮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보육을 공보육을 하고 있는데 공보육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또 보육복지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우리가 도입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설치한 분들이나 요양보호사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처우가 가장 낮은 직종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거의, 그 수준에서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렵다, 처우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고 또 내는 돈도 낮고 거기에 비해서는 받는 혜택은 더 많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가 낮고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수행자들, 의사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OECD 전체로 볼 때 조세부담률은 한 20%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지출은 지금 GDP 대비 10%로 그렇게 나와 있고,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한 25% 정도 되고 공공복지 지출은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지출은 지금 OECD는 평균 GDP 대비 7%인데 우리나라는 2.7%밖에 안 돼서 이 영향으로 지금 노인의 빈곤율이 OECD는 평균 한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3배가 높은 45%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지표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도 OECD 평균은 GDP 대비 1.9%인데 우리나라는 0.6%, 그래서 이것도 노인복지와 비슷하게 장애인복지도 OECD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표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낮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OECD 평균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낮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상당히 빈곤층이 많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덜 내고 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부담률이 OECD

는 25%인데 우리는 20%밖에 안 되니까 5%가 낮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GDP 대비 5%면 약 70조~100조 정도 우리는 세금을 덜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율도 보면 건강보험료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6.1%인데 독일은 우리보다 2배가 훨씬 많은 14.6%이고요. 일본은 10%이고 프랑스도 13.6%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2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의료보험료도 덜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장성은 우리가 60%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80%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9%인데 미국은 12%, 일본은 18%, 독일도 18%, 스웨덴도 18%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소득대체율은 우리는 40%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40~50% 정도이기 때문에 내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내는 돈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받고 있는 수혜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덜 내고도 상당히 높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가 국민이나, 특히 우리 복지위원회, 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아직 OECD에 비해서 낮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네. 30초만 할까요?

○위원장 **金世淵** 지금 마이크는 더 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제세 위원 그러면 3분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예, 알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데 더 내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케어조차도 우리가 65%에서 70%로 보장성을 높이면, 다른 나라는 지금 80%의 보장성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료를 거의 14%, 13%를 건어야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재인 케어를 70%로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의료보험료는 안 올리겠다고, 아주 최소화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의 도구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우리가 복지가 낮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문재인 케어도 보장성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에 후속해서 ‘이것을 하려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부담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가장 효율화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올려야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런 복지 논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또 낮아서 노인빈곤이라든지 장애인빈곤이라든지 기타 사회빈곤층에 대해서 케어를 못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통합과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 수준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부담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정부…… 다른 나라는 거의 국가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비롯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다 민간이……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다른 것들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데 대신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가 그 수행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장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아주 큰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동감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물론 의료계까지도 사회복지종사자로 분류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직군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임에 틀림이 없고, 그 나머지 직군들은 상대적으로 보거나 또 절대적으로 보거나 처우가 전부 다 열악합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정책대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각 정당 대표님들 다 모셔서 사회복지 현안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서 저도 갔었는데 그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나오신 4개 정당의 대표님들은 다 한결같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행정적으로 가능하려고 그러면 또 저희들 부처의 주된 업무과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급여가 많아지고 혜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부담의 주체가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각자 자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의 시장경제 중심에서 혼합경제가 좀 더 강화되는 그 방향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과거에는 민간이나 개인에게 책임이 맡겨졌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들이 이제 국가가 많은 부분을 개입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크지만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거둬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그에 타당한 재원조달 방안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인보사와 관련돼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복마전인 것 같습니다.

인보사 관련해서 R&D 지원사업, 즉 연구개발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 147억 2500만 원 국민 혈세가 투입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에 복지부가 신약개발 지원사업에 13억 원, 복지부·과기부 합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에 82억 1000만 원,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따로 지원했고, 여기 인보사에만 지원된 액수입니다.

국민 혈세가 이렇게 투입됐는데 이게 허가받은 내용과는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도 거의 없고 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관절약이라는 의혹도 심하고.

1회 주사비용이 무려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지금 보험사들을 통해 지급된 보험료만 300억 원이 넘게 나와 있어요. 아마 곧 보험사들의 소송도 진행될 거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는 인보사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95억 1000만 원 복지부 지원, 산자부 합쳐서 147억 2500만 원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대책 마련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산자부 또 과기부가 다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환수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 있었던 복지부와 과기부가 같이 공동으로 한 8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명간에 최근 연도부터 환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마전에 이 많은 국민 혈세가 투입됐는지, 이게 국가를 끌여가는 행정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수대책 정확히 세워서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환수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엇그저께 보도된 메디톡신, 일명 보톡스지요. 이 사태를 죽 보면서 식약처가 허가권을 빌미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면 필요한 임상시험을 수행했던 임상연구소장 김 모 교수가 아내의 이름으로 주식 2000주를 사고 액면가 5000만 원이 갑자기 뺏겨서 7억으로 둔갑을 하고, 허가 과정 속에서 식약처나 허가권자와 이해관계가 연루되어 있는, 당시에는 임상시험평가기관이지요, 독성연구원장

인 길 모 원장—지금은 이것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변했지요—거기도 차명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식약처장님, 답변하셔야 돼요.

허가할 당시—그때에는 식약청장이지요—양 모 식약청장이 또 조카 이름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 주요 결정권자들이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던 말이지요.

인보사에서 메디톡스까지 거대 제약사들 논란이 터질 때마다 항상 그 중심에 우리 식약처가 있습니다. 식약처의 철저한 자기반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식약처 대대적인 구조조정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처장님 입장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내부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한번 내부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과거에 의혹이 있었던 부분은 타 법령 위반사항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도 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이도록 애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하시겠다는 말은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식약처가 못 됩니다, 지금 상황이. 항상 검토만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물론 처장님이 오신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는 식약처 관련…… 항상 그 중심에는 식약처가 있으니까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민을 설득해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거듭나겠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 의견을 모아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답답합니다.

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투약과 관련하여, 이게 지금 단기간에 근육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근력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사실은 이게 유소년들한테 정자 감소 등 고환 기능이 억제된다는지 남성 탈모, 간세포 종양 증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온라인 불법판

매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 약품판매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2만 8657건, 그중에서 특히 이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건수가 2018년, 작년엔 600건에서 올해 5월 현재 4373건, 무려 7배 이상 급증해 버렸어요. 아마 이 추세로 올해 연말 가면 거의 한 20배 가까이 급증하지 않을까 싶은데 처장께서 알고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보고받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그 관련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실효성 있고 현장감 있는 대안이 되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광수 위원 의약품 불법 판매나 유통에 대한 식약처의 대책이 매우 미흡해요. 지금 식약처뿐만이 아니고 복지부나 전 정부부처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까 손혜원 위원께서 판매현장 녹음 테이프를 틀었는데 이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규 위원 윤일규입니다.

지금 시중에 액상담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짚어 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복지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JUUL이라는 이 액상담배는 청소년과 여성들 흡연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의 근본적인 금연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어전략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이겠지요?

○**윤일규 위원** 지금 JUUL이라는 담배를 젊은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실은 국가 금연정책으로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게 MPOWER 중에서 가격상승을 이용한 금연정책 그 일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같은 MPOWER 등은 WHO에서 하는 거지요. 특히 여성이나 젊은 이들의 담배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WHO의 MPOWER 정책이 나오는데 지금 JUUL이라는 이 담배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금연에 대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가부하고 또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JUUL 담배 판매행위를 집중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유해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액상담배들이, 특히 전자담배들이 청소년을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 세계 보건기관들의 공통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아예 통째로 이것을 못 팔게 하거든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이게 또 금연구역에서 표가 안 나게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마치 이것은 금연하기 위해 사전에 금연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수단의 흡연 행동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이 일반 담배보다 훨씬 순한 것처럼, 훨씬 피해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된 상태로 이게 날로…… 그런데다가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이미 방어시스템이 없는 이런 정도로 무

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좀 세심한 준비가 계시는지 하는 의견을 물었는데……

그런데다가 이게 전자담배이다 보니까 폭발사고가 나 가지고 외국에서는 생명을 잃는 선례까지 있는 정도로 위험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정부에 준비를 물어본 겁니다. 장관님 말씀 대충 알았고요.

식품안전처에서 그러면 지금 이 JUUL 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지금 복지부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요청을 5월 28일 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분석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문제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크게 이야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흡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는 데 치밀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것보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심하지 않은 일반 미세먼지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의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담배에 대한 방안을 보면 어쨌든 미세먼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의 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라는 담배회사에서 지금 가격을 완전히 다운해 가지고, 1000원씩 깎아 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 4500원 할 때, 작년에 권준욱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MPOWER에서 마지막인 레이징(raising)이라는, 가격을 10% 올리면 흡연자가 3% 내지 5%가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그 방법을 통해서 얼마가 줄어들었다면 다시 언제쯤에는 가격을 또 올리거나…… 그 가격을 올릴 때 효과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많이 차단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정책하고 반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나라 담배 정책은 좀 꼼꼼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거든요, 이것 가격 보면요.

그런데다가 선전을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광고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도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나라는 담뱃세를 받아 가지고 의료보험에다가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정작 담배에 대한 방어기전에 있어서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에서까지, 광고에까지, 가격에까지, 젊은이들이 접근하는 데까지 하나하나 촘촘하게 해야 제대로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데……

담배 때문에 죽어 가는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면…… 거의 3분의 1은 뇌혈관질환으로 죽고요. 적어도 한 3분의 1은 폐질환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을 유도하는 것이고, 실제로 담배와 유사하게 사실 미세 먼지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가의 정책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장관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MPOWER 갖고도 많이, 권준욱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별반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오늘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계기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담배 인화 판매, 담배 가격 결정은 또 기재부와도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저희 부처의 주무 일이라 할 수 있는 담배의 유해성 문제 그리고 청소년 접근에 대해서는 여가부, 이렇게 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 오늘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전에 또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을 이끌어 주셨던 전임

이명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김세연 위원장, 기동민 간사와 사회교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보건복지위원회에 취임해 주신 김세연 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또 기동민 간사님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위원장대리 기동민 잠깐 일이 있으서 가지고요.

○장정숙 위원 말씀은 들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식약처장님, PPT 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이 언론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정숙 위원 국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성분을 알고도 서류를 조작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신약 허가를 받은 어떤 기업에 대한 기사입니다.

처장님, 이것은 한국 바이오산업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장정숙 위원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허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계십니다.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식약처의 역할이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장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역시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주고 2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요? 또 그것도 자체 검사가 아니에요. 코오롱 협력사가 알려 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알게 되셨단 말입니다.

처장님,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제조업체에게 떠넘기는 식약처의 행태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개선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우신 건 사실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장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식약처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8일 날 식약처는 환자안전 대책으로 전체 투여 환자 3707건에 대한 특별관리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시면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데 식약처는 해외 환자 현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외 환자를 여쭙습니다. 어저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외 환자가 100여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지금 병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환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고 그것은 하고 계시다는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적관리 한다고 하시던데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오후 1시쯤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식약처는 분명 환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해외 환자의 경우 현재까지 1명 정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약처는 환자안전 대책으로 15년간 장기 추적조사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2017년 1차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니까 이미 유전자 치료는 15년 장기 추적을 해서 안전성을 관찰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있는 식약처 제도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재당하는 것이 식약처의 관행, 습관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중앙약심 회의록에 있는 것은 15년 장기 추적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저희가 위해관리 정책의, 제도의 일환으로 했던 거고 이번에 15년 하는 것은 전체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장정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훨씬 더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장정숙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보니까, 2차 중앙약심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2차 중앙약심위원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1차 약심과 3차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에 실시한 중앙약심 자문 결과가 서로 상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케이스가 인보사 케이스밖에 없더라고요. 여태 10년 동안 이렇게 2회 이상 중앙약심을 개최한 사례가 4건밖에 없었는데 3건은 자료 부족으로 인한 거였고요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는 인보사 케이스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그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표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1차 중앙약심위원회를 할 때 3상 임상시험 시 결과 자료 다 공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유하셨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다시 열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약심위원회 위원장, 그 당시 아마 유무영 식약처 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사,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님이셨을 텐데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건이었으면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참석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 위원이 위원장, 간사에 대한 다른 중앙약심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자료도 받아 봤는데 지난 5년간 두 명 모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

○**장정숙 위원** 그래서 식약처는 도대체 업무를 제대로 하는 조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인보사 사태를 통해서 바이오제약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3상 조건부 허가 문제 지적에 대한 식약처의 대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PPT 한번 보세요.

‘식약처와 금융위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의약당

국, 금융당국 간 정보교환 상시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하고 식약처에 문의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18년 9월 6일 이후입니다—비정기적으로 단순설명 정보에 대한 유선상담이 수차례 있었다’, 답변이 그게 다였습니다.

저 추가질의 3분…… 그냥 계속해서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기동민 추가질의 3분 하시면 2차질의는 못 하시는 겁니까.

○장정숙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는요?

○위원장대리 기동민 3차 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MOU 맺은 데서 실적 및 성과 없습니다.

지난 5년간 바이오제약 시장은 2014년 시가총액 24조에서 18년에는 시가총액이 115조로 4.7배나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식약처는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식약처는 금융위가 주무부서이고 우리는 주무부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 몰라라 식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인보사의 거짓 정보에 대한 자료 검증 방법이 식약처 나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대응이 이렇게 미흡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식약처가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계약사가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과학적 논리로 검증하고 유익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답변 누가 못 합니까? 답변 너무 현란하지 않습니까? 아까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제가 여쭙았지요? 코오롱 쪽에만 책임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교수 시절에 인보사 경제성평가 수행한 책임자셨습니다. 도의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처장님께서.

또 인보사 경제성평가 관련해서 18년 10월 29일에 심평원에 접수했지요. 그리고 12월 14일에 자진취하했습니다. 자진취하를 한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못 밝히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심평원에 신청하고 자진취하하는 것은 전적으로 업계가 하는 거고 저는 경제성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공하면 그것에 대한 심평원과의 관계는 기업이 하는 거지 저희 연구진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나중에 국감 때 계속 연이어서 물어보겠지만, 심평원에서 인보사의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 효과성에 대한 학회의 의견을 요청하셨지요? 그랬는데 ‘경제성평가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재논의 결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피드백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처장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인보사 사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부분이.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고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도덕적 타격은 치명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7억 원의 지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어떻게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재탕하는 대책,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오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경제성평가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는 안전성하고 유효성만 보지 경제성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보험 등재 여부를 할 때 보는 게 경제성평가이기 때문에 식약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업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약심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타 저희의 옥석을 가리는 전문성 역량에 대한 것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논의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기동민** 고생하셨습니다.
인재근 위원님.

○**인재근 위원** 인보사 사태가 굉장히 중요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앞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의 1차 질의 때는 좀 쉬시라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할 텐데요.

최근에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상습적인 음주진료를 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심지어 어떤 전공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주일 된 갓난아기에게 적정량의 100배나 되는 인슐린을 투여해 가지고 아기한테서 저혈당 쇼크가 왔어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복지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조사 중이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음주 정황이 있는 4명 중 1명은 병원 자체에서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추가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음주나 약물흡입 상태에서 하는 진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일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의료인의 음주진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복지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환자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후의 시술이라는 것은 참 사회적으로 용납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 의료계에서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의료계 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해서 같이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대개 의료계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입법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 보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인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음주하고 진료행위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데 그것을 의사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가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재근 위원** 제가 발의한 법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 도와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다음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갔어요. 이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또 오랫동안 장애인분들이 기다렸고 국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장애인등급 폐지는 시작되었지만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 신설이 상당수 완료되지 못했고 관련 법령 개정도 미비한 상태이고 조례 정비 현황도 더 심각합니다.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장애등급제 관련되어 있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1년 전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어떤 부분을 사전에 손을 봐야 되고 또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지 다 파악을 해서 관련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협조를 다 구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방은 특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독촉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내용들이 대부분은 단순한 용어 변경입니다. 예컨대 1급·2급·3급을 중중으로 바꿔야 되는 그 정도의 용어 변경이라서 지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 싶어 그렇게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지침상으로는 그런 용어 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다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그러나 법령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우리 복지위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추가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그분들을 상담한다거나 여러 가지 종합조사를 하는 인력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애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좀 더 늘려 달라는 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인재근 위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동민** 고생하셨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장관님,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 케어 2주년 성과발표를 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께서 ‘이번 정부는 솔직하지 못하다, 자꾸 속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건보재정지출 효율화는 물론 재정대책에 대해서 국민한테 솔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도……

○**김승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이 오후에 지적하신 것은 ‘복지가 증가하면 부담도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솔직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그 부분을 강조하셨고 ‘솔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지적하니깐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국민 개개인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복지가 증가하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지하려 그러면? 복지부가 그 사실을 알려 줘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의 중간발표는 정말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2017년 8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할 때 핵심이 뭐였느냐면 그때는 3800개라고 그랬지만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를 해서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5년간 30조 6000억을 들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

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장관님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또 고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급여’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을 넓히겠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거든요.

의학적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하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용어 자체를……

○**김승희 위원** 동일한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리고 말씀하셨던 3800가지와 3600가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알았습니다.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당시에 ‘3601개의 비급여를 2022년 임기 내에 다 급여화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 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이 그 항목도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요.

○**김승희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가능합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다시 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이게 이번에 발표한 자료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3600만 명의 문재인 케어 성과를 쭉 나열했어요. 그중에, 수혜자 3660만 명 중에 저기 보면 선택진료 폐지가 2098만 명인데 그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선택진료란 건 뭐냐 하면 옛날에 특진료를 받던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것 박근혜정부 때 시작해 가지고 4분의 3 정도는 진행됐고 나머지 한 거거든요.

문 케어로 해 갖고 수혜자가 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마치 문 케어로 해 갖고는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장률을 발표했어요. 상급종합병원은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항상 보통 보장률보다 높았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요? 그것을 68.8% 증가했다고 마치 70%의 보장률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7만 1470개 중에 0.06%에 해당되는 42개뿐이 없어요. 또 진료비 기준으로 봐도 전체 총진료비 77조 8714억 원 중에 13조 4552억 원, 17.3%에 불과하거든요.

원래 높았던 것을, 지금 현재 더 많이 높아졌지요. 그것을 가지고 보장성이 내가 목표한 대로 마치 70%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국민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지 무엇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목표 달성,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게 바로 저거예요.

지금 전체 비급여 6조 8000억 중에서 28%인 1조 9000억의 비급여를 해소했어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실제 항목 수로 보면 8.9%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됐고, 액수로 보면 28%만이 안 됐어요. 그런데 28%도 고가에 해당되는 MRI하고 초음파예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이 남아 있고 그것은 저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절대로 5년 안에 다 비급여를 급여화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면 위원님 질문 다 끝나면 제가 답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요, 지금 간단하게 도달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 노’만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예스’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2년까지……

○김승희 위원 장관님, 지금 장관님 교체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못 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가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의료비가 본인한테 절감됐다, 그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보험료에서 내는 거잖아요.

제로섬 게임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보험료는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마치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의료기관에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상을 두고 그것을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한다고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진정성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료비를 누군가 부담하지요. 그리고 그 부담은 국민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부담을 해서 아픈 사람을 도와준다는 보험의 원리가 있는 것이지요.

○김승희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 자체가 건강한 사람이 돈을 내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부담 국민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 원리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는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보험료율이 앞으로 어떻게 인상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이 얼마만큼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보험료율은 연평균 3.2%로 인상한다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금 적립해 놓은 것도 고갈되고 보험도 작년부터 적자잖아요.

작년부터 적자라는 말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했습니다.

○**김승희 위원** 우리가 지적할 때 그때 답변하셨지 이것 홍보할 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위원장대리 기동민** 이제 그만 정리를 해 주셨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적립금 20조 원을 사용해서 10조 원이 되도록 내려간다는 말 했을 때 그 말 뜻 자체가 당기순적자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기동민** 장관님도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동민** 오래간만에 하는 상임위니까 좀 뜨겁지요?

고생하셨고요.

정춘숙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3800가지 3600가지를 혼동하신 것은 한의까지 포함을 하면 3800가지이고 의약만 포함하면 3600가지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승희 위원** 제가 3601개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줄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3601개가 지금 도달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리고 3600가지 항목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2022년까지 3600가지 다 급여화를 합니다.

.....

○**위원장대리 기동민** 정춘숙 위원님 하십시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소위를 들어가야 돼서 이번에 3분을 같이 쓰

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기동민** 예, 그러십시오.

○**정춘숙 위원**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이 꾸준히 발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케어라고 다루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과 일부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올바른 지적도 있었는데 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로 실제로 어떤 분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증가의 수준이 다른 데랑 크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질적인 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평원 자료를 살펴봤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전문질병군이고 빨간색이 단순질병군인데 이 표를 보시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에 경증환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볼 수 있는 중증환자분들께서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환자 비중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더 많이 아프신 중증환자분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인 케어의 발표 이전에 국민의 아픔보다는 건보재정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분들께서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분석자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석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병원 환자집중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중요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병원 환자집중 문제 그리고 의료전

달체계 개편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춘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해서 질 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최저인건비 반영이 어려워서 굉장히 운영이 힘듭니다. 제가 지역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원장님들 만나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번 추경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정 영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무척 담고 싶었지만 추경의 처음 의도가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담지를 못했지만 추경에서 이게 상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참 크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긴급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자 이런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복지부와 함께 증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그리고 휴게시간 보장 이런 근로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그래서 19년 말까지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제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말씀 들어 보면 원장님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적극 협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조교사를 뽑을 때마다 4대 보험료 그리고 퇴직적립금 이런 사용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이 선생님들에게 4대 보험 하다 보면 나머지 다른 비용들을 굉장히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채용하라고 권고하고서는 그 부담을 전부 다 사용자들에게 돌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찬가지로 보조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신설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재정당국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쳐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 담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보육료 지원하는 것 그리고 보조교사 사용자부담금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추경에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또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3월에 제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면지 마스크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자료 보니까 약 233만 명에게 미세면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봤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기정화장치 지원에 관해서 질의가 있는 건데요, 복지부가 생활시설 중 국고지원 시설을 위주로 시설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동의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생활시설 중에 국고지원시설인데도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못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정신요양시설·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인데 이번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에, 이번 추경안에 안 담기면 내년에도 사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겠다 이런 걱정이 하나 들고요.

사실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정신요양시설·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이 다른 데 비교를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에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저도 같이하겠습니다.

이 시설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신요양시설·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이예요. 여기는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위원님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달에 입국해서 출국까지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것은 우리 부과체계의 사각지대인데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발표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이런 사람들이 22만 8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액이 419억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회의에는 법이 상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걱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내신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법을 우리가 개정하려면 복지부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보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식약처장님,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받은 거다, 그 결과 현재 품목허가 취소했고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식약처가 직접 검증하는 절차, 식약처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허위자료 제출과 고의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환자안전 보호를 위해서 최선

을 다해야 한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허가 당시 업체의 허위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책임에서 식약처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허가 과정에서 특혜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수사 중이어서 감사원 감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수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투명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고 또 검찰수사 결과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인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기동민** 고생하셨고요.

신상진 위원님.

○**신상진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상진입니다.

문제인 케어가 취지는 좋으나 거기에 대한 재정대책이 없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모든 진보 또 좌파 정책들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2000년도 의약분업 그리고 지금 문제인 정부에서 하는 최저임금, 가난한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 많이 좀 올려주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의약분업 때 무리해서 현장을 잘 모르고 추진함으로써 고가약제비의 청구액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첫해에 4조 이상의 돈이 들고, 그리고 제작년 통계로 보면 7조 2000억의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3%밖에 안 해요. 약속도 안 지키고 20% 하기로 한 것을 13% 하는데도 7조가 넘어요.

정책의 취지는 좋아요. 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근로시간이 적고 한 달 수입이 더 줄어들어요. 이러한 정책들의 허점이, 저는 문제인 케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자기부담이 줄어드는 거 누구나 좋지요.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찬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재정부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부에서 준비 안 하고 하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떠 주기 또 전시성 이런 어떤 저급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높이지 않고서 좋은 혜택만 받게 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솔직히 제시를 하면서 국민의 동의와 국민의 의료혜택을 같이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의 있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당장 국민들이 좋아할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점수 따려고 하는 그런데 급급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기순이익이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3조, 이렇게 적자 예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상진 위원 그리고 계속 이게 누적 적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MRI 찍는 사람들이 새벽 2시, 밤 10시에 와라, 12시에 와라, 아주 미어터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진들, 오너들은 좋겠지요, 돈벌이가 돼서.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적절하게 응급의료 이용해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입원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모 빅5 병원에 갔다가 상태가 굉장히 위독한데 입원실이 없어서, 응급실도 자리가 없어서 집에 갔다가 며칠 후에 와라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문 케어 이후에 상급종합병원들의 환자쏠림 현상이 대단히 큼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의료전달체계와 고려를 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펴야지……

돈 부담만 줄여 주면 거기에서 당장,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고 국민들을 너무 업신여겨 보는, 돈만 아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줌……

(기동민 간사, 김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펴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만 3세 이하, 의료보험 적용 대상, 그리고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하루에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해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피라자라는 약이 주사 한 번에 9300만 원이에요. 여기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으로 930만 원이면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9300만 원, 이거 치료받으라는……

문 케어라고 전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듯이 대대적인 광고·홍보를 하면서 이런 것은 왜 못 고칩니까?

그리고 4세가 이 질병에 걸리면 9300만 원 내고 3세 이하면 본인부담 930만 원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왜 안 고쳐요? 특별히 아주 구석구석의 어려운 부분은 고칠 생각 안 하고 그저 다수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하면서 상당히 광고 효과만 노리고 정치 과잉의 이런 의료정책을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말씀 다 하시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중증 아토피 환자도 모 치료약이 있어요, 주사약이. 비급여지요.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 일본의 경우 이 주사약을 맞는 데 건보 적용을 해서 월 25만 원이면 돼요. 우리나라는 200만 원이에요. 이게 문 케어가 지향하고 고치지 않아도 되는 방향입니까?

이런 것들, 정말 잘못되고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이런 수가 정책들, 급여 정책을 먼저 고치는 그게 굉장히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문 케어를 너무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한 섬세한, 정말 디테일한 맞춤형 정책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지나가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에 저는 질타를 합니다.

답변, 꼭 하실 것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상진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 사항이, 오랜

만에 국회가 열려 가지고……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더 하고 나중에 말씀 들을게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상진 위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작년 12월인가요? 국회 제출이 됐지요, 개혁안이.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상진 위원** 4개 안으로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미래세대에 저출산 때문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수급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아지고 연금을 내야 될 젊은층들은……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金世淵** 오늘 1분 더 드리는 것은 안 하기로 아까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신상진 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하는 줄 알고 여유 있게 했네요.

그러면 3분 더 해도 돼요?

○**위원장 金世淵** 2·3차 질의 안 하시면 3분 더 하시는 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못 와 가지고 1분 더 주는 걸 안 주시는지 몰랐네요. 어떻게 해요? 그만뒤요?

○**위원장 金世淵** 간단히 마무리하실 것 같으면 그냥 마이크 없이 해 주시고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신상진 위원** 2분만 더 주세요. 3분 것, 뒤에 것을 갖다가 쓸게요.

○**위원장 金世淵**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내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1분이라도 덜 받을게요, 양심상.

그래서 연금개혁안도 결국은 국민 눈치 보느라고 계속 정부에서 네 가지 국회에 넘겨 놓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도 책임 없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국회에 넘겼다고 그냥 미루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보사 얘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보사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미묘해요. 2017년 4월에 1차 불허됐다가—정권 바뀌기 전이지요—2017년 7월 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권 바뀌고 그때 허가가 났습니다.

원래 중앙약심위에서 4월 달에 불허가 났다가

6월 12일 날 허가가 났어요. 또 중앙약심위 위원이 5명인가 새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정권 교체기에 일어나서 저는 이런 것이 어떤 외압이나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인보사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했고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향후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이나 또 전문심사제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적인 신뢰 하락과 우리 정부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신상진 위원** 그렇지만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건보공단의 김용익 이사장님, 장관님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언론 보고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모르겠고.

하여튼 노조 성과급, 직원 성과급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는데 제대로 성과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갈 겁니까? 노조에 균등배분으로 나갈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지금도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만약에 성과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식으로 한다면 저는 고발까지도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굉장히 위배되는, 대한민국 바로 서는 데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노조 차원의……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려운 차원에서 다르게 풀어 가야지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노조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질문할 건 많은데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간단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저도 또 더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답변 주신 것……

○**신상진 위원** 제 의견에 반론보다는 잘못했다고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웃음소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반론을 펼 것은 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에서 재정 안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것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 전달체상에서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고 조만간에 장단기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에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셨던 척수성 근위축증에 대해서 그 약을 왜 3세 이하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질문하신 신상진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험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어느 정도 시기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약이 과연 그 약값에 상응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냐는 것을 기초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는 척수성 근위축증의 경우에는 3세 이하에 발병했을 때는 그 약이 실효성이 있지만 4세 이상부터 발병했을 때는 약값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학계의 자문이라 그럴까요 그런 권고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험약가를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증 아토피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4개 안을 드린 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단일안으로 수렴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다수안·소수안으로라도 의견이 좀 더 집약이 되면 국회 논의가 한결 쉬워지면서 개혁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은 거기까지 답을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끝으로 하나만요.

(우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보시면 척수성 근위축증 환우회에서 저한테 이것 불합리하다고, 4세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들께서 많이 보내 온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잘 따지셔야 돼요. 만약에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3세, 36개월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37개월, 38개월 환우는 안 돼요. 그렇게 칼로 자르지 마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의학적인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높으면 거기에 보험료율을, 보험 적용을 절반만 해 준다거나, 뭔가 재정도 생각하면서 나이가 높아 가면 적용을 본인부담을 좀 늘려 간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칼로…… 안 그래요? 한 달 차이로 이 급여가 안 되면, 한 달 차이로 의학적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섬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피눈물 나는 부모들의 편지예요.
.....

○**위원장 金世淵**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장관님 더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이의경 처장님, 인보사케이주의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뭔가 인보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으면 좀 억울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억울합니다.

○**기동민 위원** 많이 억울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많이 억울합니다.

○**기동민 위원** 예전에 처장님이 밖에 계실 때 국내유통 글로벌기업의 신약 약가가 OECD의 한 4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처장님의 논문이 인용이 된 적 있어요. 그리고 또 중외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도 진행을 하셨지요? 저는 그게 티끌이다, 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성평가를 해 나가는 전문가 집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독보적이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그게 뭔가 흑막과 거래가 있는 듯한 당사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우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일단 일견 공감하면서 제가 더욱더 경계하고 더 공정하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그걸 성과로 보여 주셔야 돼요, 일로 보여 주셔야 되는 거고.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심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억울했다면 그 자리에 앉지 마셨어야지요. 그 자리에 앉으셨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왕관의 무게를 이기셔야지요.

그런데 어떠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는 결백을 호소하는 얘기가기도 하지만 개인의 거취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단언하지 마십시오.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제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가 확보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예, 꼭 그래 주시고요.

신상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 저는 많이 수긍이 가는데 그중에서도 품목허가 시점이 참 미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문기 전 처장께서 퇴임하신 날이 17년 7월 12일입니다. 품목허가된 날이 7월 12일이예요. 유영진 식약처장이 부임된 날이 당연히 7월 13일입니다. 자연스럽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식약처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지금 검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동민 위원** 그렇게 비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꼭 이렇게 정권 교체기에, 저는 새로운 정권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과거 정권이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문제이지요.

그런데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앙약심위원들을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5명을 교체해서 전 차 회의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식약처장이 그만두는 날 품목이 허가가 됐어요.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식·의약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결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의구심

까지 잘못된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아닙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밝히는 데 검찰에 수사 협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도 해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그 당시에 직무에 개입했던 사람들은 직무 배제를 해야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네……

○**기동민 위원** 잠깐만요.

조직적인 직무 배제도 가능한 것이고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스스로 직무 배제를 원하고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되게 우스워 보여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핵심 당직을 사퇴하거나 아니면 자연인의 신분에서, 탈당까지 진행을 해 가지고 자기의 무고함을, 억울함을 재판을 통해서 벗어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식약처는 자체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약처 말 못 할 사정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식약처도 공범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예,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지금 저희가 2017년 허가 당시의 심사 과정은 대기발령 중이고 허가 담당 과정은 타 직위로 전보해서 허가하고 심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배제한 이유는 검찰수사나 내부조사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런 저희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7월 3일 날 허가 취소가 완전히 됐고 그 시점까지는 저희가 이 과정을 아는 직원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허가 취소가 완전히 된 이후였고 심사 담당 과정의 대기발령은 5월부터 대기발령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식약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식약처장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상식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식약처 차원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발 빠르게 그리고 좀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으나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식이고. 그에 못지않게 식약처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내부의 문제, 몸부림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가감 없이 보여 주는 것 역시 식약처가 혁신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고생하세요, 그만두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기동민 위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적과 질타도 많습니다. 또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그 과정에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사항들도 있는 거고요.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우려 사항들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는 과거 10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문 케어 이후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적 진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질문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저도 2차 질의 안 하고 3분 주시면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저는, 대책들을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라는 건 변명에 불과하고요. 대형병원 쏠림 현상, 특히 얼마 전에 소위 말하는 빅5 응급실이 어떻게 편법적으로 악

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생한 르포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예전에는 의사협회가 박차고 나갔지만 지금은 함께 논의하고자 하니 협의체를 빨리 구조화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국민과 함께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준비하시는 데 너무 뒤로 끌지 말고 한 7월 달 안에는 발표하실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7월 안에 발표할 겁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특히 여당 위원들과 함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국고보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0%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법을 정말 잘 알아서 ‘상당’이라고 해 놓으니까 10%도 상당이고 20%도 상당이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끄러운 거는요, 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평균 13.4%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는 15% 내지 16%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어제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 주시던데 ‘그래도 절대량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겨우 한 7조 8000억, 그 전에는 한 7조 정도였잖아요. 전임 정부에서도 7조 정도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장성 강화 얘기하고 있으면서 국고보조를 13.4%, 그것도 조금 더 올라서 13.6% 이렇게 생색내는 건 정말 낯뜨거운 문제 아닙니까? 하도 답답해서 당 지도부한테도 좀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은 기재부하고도 정면으로 부딪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고보조금 비율을 했을 당시에 그러면 적립금이 얼마나 쌓여 있었느냐? 20조 원 가까이 쌓여 있을 때도 15%, 16%를 지원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조 원에서 10조 원을 털어 먹겠다고 하는 건데 13.4%를 지원하고 있어요.

말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풀어 나가시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정말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이구요. 그래서 재정당국하고 올 초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예산부터는 올해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절대분은 물론 더 늘어나지만 적어도 비율도 더 높여 가계부담 의견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반드시 싸워서 이깁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국회에서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와 주신 제 전임자이신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자리를 옮겨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또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앉아서 지난 1년 동안 뭐가 달라지고 변화를 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자괴감이 더 많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많은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다는 건 저한테 책임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제 나름의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우선 제일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기준을 우리끼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꼭 야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와 정부에서 발표하고 성과를 내세우는 것과는 많은 거리감이 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 전반적으로 너무 단기 현안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에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냐.....

지금 당장 저출산이니 장애인, 여러 가지 각종 기본계획들이 최고 단위가 5년입니다. 한 정부의 그 텀에 맞는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맨날 지속 가능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저는 이 분야라면 앞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식약, 여러 가지 체계가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양보다 질의 시대입니다. 국민한테 몇 % 했다, 몇 % 올렸다, 얼마 확대했다, 돈 몇십조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시다만 과연 그 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형식이나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나 내실화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미흡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게 비단 정부만의 책임이고 어디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논의하면 모든 게 논의가 되고 모든 게 결론이 나고 결론이 난 게 실행이 된다면 실제 그런 일들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 많은 문제 제기하고 말씀하는데 과연 검토하고 조치되는 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거듭 말씀을 드린 게 보건복지 분야 전체 업무의 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면, 과거의 패턴대로 그대로 하면 늘 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고 보건복지 행정의 수요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에 맞게 우리가 변하고 있느냐, 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업무체계를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이양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방의 역할은 어떻게 표현하면 머리의 역할은 거의 없고 그저 행동하는 실천 현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늘 그런 종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행정이 이제 행정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어야 된다. 이번엔 장애인 그거 개편한다 그러는데 장애인들 들

어 보면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위주로 한 것 아닌가, 우리가 행정 위주로, 정부 위주로 ‘아, 이렇게 해 주면 되겠지’라고 합시다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체계를 바꿔야 되고요.

이 업무는 무엇보다 결국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복지부 관련 공무원들 계시지만 제가 공무원 처음에 해서 소위 수습사무관을 한 데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보건복지 업무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엄청나게 변해 있는데 지금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타 부처보다 승진도 높지 않고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저 나름대로는 사기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해 달라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제일 대비할 부분이 여기인데 과연 그런 미래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떨어지는 단기 현안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일본의 우리에게 대한 여러 가지 경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보건·복지·식품 쪽에도 이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고,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분야에 이런 게 다 될 때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 건가, 기후변화, 여러 가지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리더는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도 못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은 함께하는 사람한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래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그걸 실행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는 게 좀 적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차관이 또 한 분이 필요합니다. 보건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직접 청와대에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차관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데는 한 분의 차관 가지고는 안 되니 보건하고 복지를 나눠 주십시오. 제가 법도 19대부터 계속 내는데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장관님이 필요하면 ‘내가

일을 해 보니까 꼭 차관이 필요하더라’…… 직접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김연명 수석한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아직 아무 얘기가 없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일 업무체계나 업무에 대한 판단이나 추진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지금처럼 해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건 쉽지 않다. 지금도 굉장히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후한 점수를 못 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장 오늘 보니까 2.9% 내년도 최저임금 올라가지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가면 그만큼 관련 시설의 종사원들 다 문제 되는데 그런 걸 과연 고려해서 될 수가 있는 건가. 지금 당장 올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여러 분이 호소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달라……

시간이 제한돼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도 앞으로 제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이끌어 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장관님, 요즘 지자체의 현금 살포, 현금성 복지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15년에 현금복지사업이 291건에서 18년에는 1040건으로 취임 후 1년 만에 3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현금복지에 사용된 예산만 해도 3041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폭증했다고 보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자체에서 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

지만 나름대로는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뭔가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필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검토 절차에 대한 변화도 일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7년까지는 복지부에서 사업 검토 결과를 동의나 부동의 이런 식으로 지침을 통보했었는데 장관님 취임하신 이듬해에 협의·재협의 지침으로 변경됐지요? 그 변경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일방 통보하기보다는 조언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통보 지침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현금복지의 제동 권한을 포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복지부 검토 없이도 복지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서울시 중구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하다고 재협의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단시킬 방법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이전에도, 예컨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의·부동의의 경우에도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은 없었습니다. 그 수단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재협의로 되어 있어도, 지금도 강제 수단은 동일한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특정 지역의 공로수당 같은 경우도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들이 지금 현금복지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도 조장이 되고 복지 격차도 심화돼 가지고 재정부담은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복지부장관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제가 조금만 길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윤종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벗어나는, 지금은 거의 경쟁하다시피 현금 살포성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오죽하면 복지대타협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스스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현금복지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부가 이제까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연구 경험이나 데이터, 인력 이런 것 다 갖추어 가지고 현금성 복지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고 큰 그림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께서도 복지 전문가로 인정받아 가지고 장관 되셨고 그러신데 이제 곧 장관님 그만두시더라도 현금복지 확대 제대로 막지 못하면 지자체 재정 과탄이나 현장 혼란을 가속화시켰다는 이런 평가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만들고 또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방의회가 따져야 됩니다.

○윤종필 위원 지방의회가 하지만 아까 중구처럼 그런 것은 좀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예, 그런 면에서 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종필 위원 그 점 명심해 주시고.

또 장관님, 문 케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현장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수도 없이 예견이 됐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소병원이 문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런데 문 닫는

수보다는 늘어난 수가 더 많습니다.

○**윤종필 위원** 글썄요,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상급병원 2·3인실을 급여화 적용하면서 환자는 병실 잡기가 어려워져 힘들다, 그리고 MRI·초음파는 2~3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형병원으로 다 몰리다 보면 지방병원, 중소병원이 문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보게 되겠지요.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3600만 명, 약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봤다고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의료비 혜택을 보았다면 국민 누군가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부담했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다 이 얘기 말씀드리고요.

건보공단 이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윤종필 위원** 저 보도자료 알고 계시지요? 지난 6월에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긍정 평가했다고 보도자료 내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필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이런 조사를 했는지 질문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정부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본인부담금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지만 보면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앞 문장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은 넣어야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찬성이 53.9%에 불과한 점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무분별하게 퍼주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건보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지를 좀 더 살펴봤더니 보험료 인상은 2.8%만 찬성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보장성 강화정책 누구나 다 찬성합니

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종필 위원** 근본적으로는 이 정책을 우리 미래세대를 봐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지요.

65세 이상에서는 1인당 의료비가 65세 미만인 쓰는 돈의 4배가 넘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올해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40만 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현재의 760만 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전망인데 보장성 강화정책이 없더라도 건보료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건보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서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해서 건보공단과 함께 국민인식조사 제대로 다시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국민인식조사를 다시 하라는 것으로 내용을…… 어떤 내용이 될지 의원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金世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앞서 1차 질의 때 7분씩 시간을 사용하셨고 일부 위원님들은 3분을 좀 앞당겨서 사용하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김상희 위원님부터 시작하고 만약에 2차 질의는 계시는 위원님들 죽 한번 하시고 3차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다시 다음 라운드 때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님들처럼 융통성 있게 3차 질의를 안 하고 조금 더 써도 되

겠습니까?

○위원장 金世淵 ……

○남인순 위원 처음부터 물을 잘못 정했어요.

○김상희 위원 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인순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일반화시켜 버려서 한 번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윤소하 위원은 미리 양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다 해 버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운영을 하면 곤란합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위원장 金世淵 일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1차 질의에 붙여서 3분을 더 드린 경우는 2차 및 3차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신 위원님들께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앞에 3분을 더 쓰신 경우는 뒤에 하시는 게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정숙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추가질의로 3분만 더 쓰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실 때, 3차 질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金世淵 그래서 일단은……

○김상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뜨시는 위원님들께서 2차·3차 질의는 하지 않고 3분을 더 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위원장 金世淵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오늘 위원회 운영의 원칙으로, 오늘 하루의 원칙으로 삼아 주시고요. 저는 3차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5분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냥 2차 질의는 딱 5분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원칙이 자꾸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역시 3차 질의 안 할 테니까 또 달라 이러면 여기가 또 계속 딜레이되니까 5분 하고 3차 하세요.

○위원장 金世淵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일찍 이석하셔야 되는 사정 때문에 그런 예외 적용을 했는데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그 사정을 미리 다 못 들으시고 아까 3분을 쓰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2차 질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3차 질의를 안 하시는 대신에 2분만 더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더 하라고요, 3차 질의 안 하고?

○위원장 金世淵 예.

7분·5분·3분으로 1·2·3차 질의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하기로 했고요. 아까 미리 다 양해가 된 경우는 2·3차 질의 안 하시는 대신에 3분을 더 쓰셨고, 앞서 2분을 더 쓰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아까 신상진 위원님은 2분을, 뒤의 시간을 앞에서 쓰셨기 때문에 장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2차 질의는 5분으로 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상황은 다시 조정해서 저기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5분으로 하라고요?

○위원장 金世淵 예, 5분 하십시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장관님, 제가 아마 보건복지위에 처음부터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손보험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상희 위원 관련해서 제가 법도 냈고 지금 정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짚겠습니다.

지난달 각 방송사에서 백내장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손보험에서 지출된 백내장 입원진료비가 2017년 1200억을 돌파했어요. 3년 만에 6배가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1명 데려오면 현금 20만 원, 5명 모아 오면 1인당 30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준다고 하고요. 의사가 상담하면서 수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니까 된다고 안내를 다 해 주고 있었습시다. 비급여인 백내장 진료를 위한 눈의 계측검사비는 병원에 따라서 무려 17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시다. 지금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4년 46만 건에서 2017년 54만 건, 평균 5.9%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다른 수술이 2.5% 늘어난 것에 비하면 2배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짐작이 가지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상희 위원 실손보험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국민들은 다 병원에 가면 요즘에 이 실손보험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의료 남용의 주범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실손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제인 케어가 확대 시행이 되면 실손보험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이게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과 2019년 1분기 총 계약 건수가 무려 296만 건이나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의료 남용 문제 그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에도 상당한 부담을 결국은 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정부가 부처 협의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의 2년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건강보험, 문제인 케어와 관련해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찌보면 이것 하나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어렵습니까?

장관님, 이번 법안소위에서 이것 다뤄질 텐데요, 해결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꼭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기사 보고 놀란 게 있는데 참 정말 악의적입니다. ‘건보료 폭탄이 터진다…… 어르신, 개인연금 들었나요?’ 하는 조선일보의 기사 혹시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김상희 위원 너무너무 악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보건복지 공직자들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상희 위원 은퇴자가 금융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건보료가 오를 것이다. 20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인데요, 2000만 원 금융소득 발생하려면 은행에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략 한 2억 정도는 필요하지요.

○김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의 경

우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 10억 정도 필요하지요, 10억 정도.

○김상희 위원 2% 이자율을 생각하면 한 10억 이상을 금융기관에 갖고 있어야지 2000만 원 금융소득이 발생합니다. 아주 정말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 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사회 형평성……

○김상희 위원 당연히 보험료 더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가고 그 이후 10일 후에 이런 광고가 올라왔어요. 기사화 광고인데, ‘건보료 폭탄 없이 3억 굴리려면 개인연금을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기사가 같은 언론사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재테크 원 포인트 레슨’ 해 가지고 시중은행 소속 팀장이 건보료 회피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언론사가 이런 기사를 낼 수가 있는지, 언론사와 금융업계가 손을 잡고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봤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 그냥 두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언론사가 정말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이 약간의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김상희 위원 유감이 아니라 이건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하든지 뭔가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재테크 원 포인트 레슨’은 명백한 광고입니다, 광고. 금융업계하고 손잡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는 소송을 하든지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지금 대응 안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대응하십시오. 왜냐하면 ‘건보료 폭탄 터집니다…… 어르신, 개인연금 들었나요?’ 이것을 보고 어르신들이, 은퇴자들이 얼마나 불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겠습니까?

저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사실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이것 대응 안 하고 계시지요? 대응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자 위원 이의경 식약처장님께 인보사 사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보사 투약 환자들의 사후관리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처장님께서서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약 환자의 환자 등록과 병원 방문, 문진이라든지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통해서 15년간 장기 추적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말긴 꼴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장기 추적조사 계획을 열람해 봤는데요. 아주 부실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사후관리 비용도 산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코오롱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식약처장님께서 직접 챙겨 보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장기 추적조사 방안은 직접 챙겨 보고 있습니다. 환자 검진 일정, 부작용 피해 등등 해서 챙기고 추가 협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런데 직접 챙겨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정도다 그 말씀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구체적으로 더 챙기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실 찾아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처장님,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한 날 코오롱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알고 있고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코오롱은 허가 취소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효율성

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최도자 위원 사업의 존폐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코오롱이? 이렇게 사업의 존폐성이 달려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 안전성 조사 권한을 주고 추적관찰 자료를 분석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그런 조치인가, 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가 그냥 회사로 하여금 자발적,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식약처에서 프로토콜부터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하기관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있어서, 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정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전문성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산하기관과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런 직원들이 없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거기는 시판 후 안전관리여서 의약품이 팔린 다음에 부작용을 수집해서 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보완할 내용들은 의료 전문가와 병의원에 계신 분들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더 별도로 운영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가면서 계획을 다듬어 갈 예정입니다.

○최도자 위원 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은요 처장님이 밝힌 장기 추적이 환자의 편에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로는 환자의 피해와 인보사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정말 제가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장님.

환자의 사후관리를 해당 제약사가 아닌 독립적인 그런 데다가 맡기셔서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독립적인 그런 기관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회사의 잘못으로 생긴 부작용이기 때문에 회사도 일정 부분을 지도록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저희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리고 코오롱이 부도가 날 경우에 조사 비용을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텐데요. 처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런 경우도 저희

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대안이 모아지는 대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초기에 향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 비용을 보증보험 형식으로 받아 놓는 것도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보사 투여 환자의 사후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 일이 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자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철저하게 대책 세워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오산시 정신의료기관 세교 병원 사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전문의의 경우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도록 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 좀 읽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입원환자가 병상 수를 의미하는 건지, 실제 입원한 환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전국의 302군데의 정신병원 중에서 병상 수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05개의 병원이 위법이고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개의 병원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5월 17일 갑자기 11년 전에 만든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전국 302개의 정신병원 중에서 딱 한 곳인 이 세교 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기 PPT 보시면, ‘실제 입원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세교 병

원은 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셨고요, 공문이 나왔고. 또한 오산시에서는 바로 이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오산시는 불과 3일 뒤 세교 병원에 대해서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것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답변 나중에 해 주세요.

혐의가 있는 105개의 다른 병원은 다 모두 제쳐 놓고 유독 1개의 병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가고, 이어서 오산시의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이것,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화면 보십시오.

복지부와 안민석 의원실의 밀담을 했던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안민석 의원의 K모 비서관이 보건복지부 H모 정신건강 정책과장에게 지역구 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일, 다음 날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오산시보건소 직원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지역 사무실에서 또 미팅을 갖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오후 5시경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임원 사무실에서 박능후 장관님과 안민석 의원, 장관 정책보좌관, 3명이 또 이상한 미팅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17일에 이례적인 내용의 복지부 공문이 내려갔고 오산시는 그 공문을 근거로 하여 20일에 폐쇄조치에 돌입합니다.

장관님, 이것 좀 엄격한,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신병원이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일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시설입니다. 여당 실세 의원의 한마디에 부처 장관이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녹취록을 제가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들어 봐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이런 발언 하셨습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표현하신 ‘정부가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이것을 폐쇄시키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그런 발언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김순례 위원 아니시지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속기록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병원장이라는 한 개인을 헌법적 권리로 짓밟은 행위입니다. 박능후 장관께서 한 발언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신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한다면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선관위에 자문해 봤습니다.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안민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 목적을 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박능후 장관님께서 지금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7개월간에 최근 455건이나 보도자료를 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이버 기준 기사가 14건……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연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단식투쟁을 하다가 지금 실려 갔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가 1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 개인의 합법적·헌법적 권리를 빼앗고 겁박했다는 내용의 워딩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해명자료를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해명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사원 청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장관님의 해명을 좀 들겠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명자료 반드시 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하고 관련된 것은 오산시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판단을 해 달라고. 이것이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 저희들의 전부입니다.

저희들은 병상 수와 의사 수를 봤을 때는 정신병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답변의 전부입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면 세교 병원이 이렇게 혐오 시설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지에서는 벗어난다라는 판단이 서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혐오시설 여부를 저희들이 논의할 바가 전혀 없고요.

○김순례 위원 여기에 나오잖아요. 시민들이 막 열광적으로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 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권자는 오산시이기 때문에, 오산시가 저희들에게 문의해 온 것은 이러한 요건에 있을 때 이 요건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인지를 판정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요청사항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병상 수와 의사 수를 보면 정신병원에 해당되지 않고 정신과에 해당된다 하고 판정을 해 준 겁니다.

○김순례 위원 지금 변론을 하고 계신데 저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공문이 나간 거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는 1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기관, 세교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당시에는 허가 병상 수 기준에 따른 의료인 수를 두어야 하나 실제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전문의 수를 산정한 것이 잘못이었음’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저것을 근거로 지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을 판정해 줬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김순례 위원 그러면 지금 오산시에서 한 것은 상당히, 보낸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견해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더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이 판정 공문을……

○김순례 위원 그런데 물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국회 활동, 의원을 하시면서 정부를 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녹취록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의원님의 개인 활동사항이시니까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고.

이 공문을, 문의가 왔을 때 저희들의 답변이 내려가기 전날, 내려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허가 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하고는 어떤 관련이……

○**김순례 위원** 하여튼 사후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더 요구할 것이고요. 이런 의혹스러운 부분,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의 고위직이 결탁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웃음)

○**김순례 위원** 웃지 마십시오. 이것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김순례 위원** 이 병원이나 의료 관계에 물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리고 아까 어디에서 저하고 의원님하고 밀담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그 기관 행사에 갔다가 행사장에 찾아오셔서 만난 겁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면회 같이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제가 자료 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金世淵** 질문 내용이 중요한 대목이 중간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발언시간을 조금 더 양해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지금 문재인 케어가, 2023년까지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하고 문재인 케어 간의 재정지출 차이가 약 6.4조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6.4조가 더 드는 것으로 나왔지요? 6.4조 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종합계획하고 문재인 케어가 처음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강보험 지출 효

율화를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단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그것은 복지부와 심평원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약품비에 대한 지출 효율화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됐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건강보험 약품, 약가 관계에 대해서 일부 검토가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건강보험 약품비를 보면 총 진료비 중에서 약품비 비중이 24.6%에 달합니다. 그런데 OECD 주요국들을 보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좀 높은 편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약품비 비중은 한국이 좀 높은 편입니다.

○**남인순 위원** 높은 편이고 또 2018년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 금액 비중이 41.9%를 차지해서 고가약 처방 비율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좀 갖고 계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지금 약제비 관련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 연구결과는 언제 나오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연구결과는 아마 금년 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인순 위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올해 6월 달에 대체조제 활성화 및 전체 약품 비중 20% 수준에 불과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약품비를 절감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원칙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남인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참조해서…… 지금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품비 비중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심평원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다음으로 복지부장관님, 지금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해서 시행이 11개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11개월 만에 의향서 등록 추이를 보면 처음에 한 10만 명 정도 등록했다가 11개월 지난 지금, 금년 6월 정도를 보니까…… 어쨌든 11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25만 명 정도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 이행 추이를 보더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명의료 관련해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현재 연명의료관리센터 4개 팀으로 해서 각 의료기관에 여기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법인데 초기의 걱정과 달리 상당히 지금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 일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좀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는……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야, 설명을 해야 납득이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연명의료의향서를 결정해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바로 연명의료를 중단해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많은 상담과 계속 치료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결정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국민 홍보도 해야 되고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이런 교육에 관련한 예산이 지금 절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저희가 당장 내년에는 현재 19명을 한 26명 정도로 늘려 달라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종적인,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원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인력을 더 확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남인순 위원 다음으로 지금 의료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성형 앱이라고 해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 ‘강남언니’, ‘바비톡’ 해서 성형정보 앱이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는 의료법에서 인터넷 매체에 따른 성형 어플리케이션도 원래 의료광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행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것은 시급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조금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질의했던 세교에 있는 평안한사랑병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장관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혹시 님비현상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손혜원 위원 그렇지요? 공공에 이익은 되는 일이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속한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의 그런 현상이지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세교동의 정신병원에 대해서 님비현상이라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마 그 지역사회 내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문의하셨던 저희 부와 오산시 혹은 경기도하교의 관계는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단순

하게 행정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요건을 구비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체를 판정해 준 것입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지금 여쭙보는 말씀은, 아까 김순례 위원께서 충분히 디테일한 부분들은 얘기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태도를 바꾼 그런 사례거든요. 원래 이 병원의 원장과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을 확장해서 이전을 하면서 멀쩡하게 내주었던 병원의 허가를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취소를 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의사협회라든지 병원의 관계자들이 불복하면서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치가들에게 그리고 시장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허가가 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니까 정신질환 관련 시설에 대한 어떤 기피현상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 병원이 요건을 맞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병원이 적절한 의료법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것이 의료법에 어긋나는 어떤 요소들이 없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손혜원 위원 그러면 그 병원이 뭔가 요건을 위반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허가 취소로 들어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달의 시간을 주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정도의 위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그걸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어찌 되어 있다는 것만 알려 주는 것이지요.

○손혜원 위원 그런데 상위기관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자가 나날이 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신병을 치료하는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 대해 이런 님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대신 저희들은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나머지

정신재활시설 또 정신응급의료기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신질환은 전문적인 병원의 그리고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지요. 이런 큰 그림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은 최근에 일어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관련되는 것들로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0.15인 데 반해서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3.67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을 한번 보시면 이것 또한 6배에 달합니다, 비정신질환자가.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에서 이런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린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손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한번 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님비현상으로 계속 지난번의 장애인학교같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자를 위한 병원이나 시설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냥 팽을 당하는 그런 지역의 이기주의들을 보시면…… 지금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시면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일들을 맡겨서, 거의 낙농 관련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을 해서, 스페인인가요? 그 나라의 3대 낙농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일, 비단 ‘어떤 지역구 의원이 물어본 것만 우리는 대답해 줬을 뿐이다.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라

는 이런 태도보다는 뭔가 지금 같은 이런 정신질환자가 늘어 가는 사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 생각을 좀 더 하고 큰 그림을 그려 가는 그런 일이 장관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지난번 정신질환자에 의한 우발적 사고 그걸 전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임시대책이라고, ‘임시’라는 말은 붙였지만 이미 대책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들을 아주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일반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형까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아주 확실하게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이 세교동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보건복지부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가야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병원이 정신병원으로 설립 허가가 내려면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소로서, 병원으로서 허가가 내려면 그 요건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손혜원 위원 그 요건만 맞추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그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취소권 자체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요건만 갖추면 그 취소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까, 장관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경우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해라 마라라는 그 자체가 저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것도, 허가를 취소하라는 말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문의한 요건이, 그 병원이 어느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저

희들이 판정해 준 것이지요.

○손혜원 위원 그러면 일단 요건을 갖추도록 해 보고 그다음에 오산시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이 허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시군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장관과의 만남을 갖고 했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의 의견은,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했던 것은 그 판정 자체를 해 주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 허가권 자체는 시군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판정을 하신 다음에 지역구 의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판정을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시에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 온 그날 오산시는 허가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도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같은 날짜에 허가를 해 버렸고 저희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난 뒤에 허가 취소한 것은 저희들은 사실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손혜원 위원 지역구 의원하고의 만남 전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지 우리는 허가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허가가 취소된 다음에 하신 겁니까, 그 전에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허가 취소 전인 것 같은데요.

○손혜원 위원 전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손혜원 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 취소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요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취소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당연한 말씀이지요.

○손혜원 위원 그 전에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 장관님, 노인일자리 추경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007억여 원이 넘게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노인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나온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의 노인인구는 정점에 달하는데 이때 고령인구 부양비가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과연 일자리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 왜 합니까? 노인 소득보전 성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일자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렇지요? 노인 소득보전이지요?

그런데 공익활동형 일자리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27만 원 받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초연금 30만 원, 또 국민연금—평균 수급액입니다—35만 원까지 합하면 총 92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최소 노후 생활비로 1인당 108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08만 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 갈 수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거기다가 저소득층 노인은 국민 연금을 평균보다는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92만 원으로는 생계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또 소득보장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노인일자리는 양적이나 질적이나 모두 문제가 많다, 특히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럿 있다라고 지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임금에 단시간 노동을 두고 일자리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일자리 3만 개도 3~4개월에 그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고용의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생색내기용 추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빠졌던데 사회서비스형 또 인력파견형 이렇게 다른 유형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60만 원이 채 안 되고요. 또 인력파견형도 취업유지기간이 6개월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처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게 고용·복지 중 어떤 부분에 도대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굉장히 불분명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크게 봤을 때는 고용과 복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 같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같이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천만이에요. 제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7월 3일 날 의뢰를 했더니,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확충 관련 관계부처 협의 내역 혹은 연구결과 일체를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당당하게 ‘없음’ 이라고 한 장으로 딱…… 한 장도 아니지요. 두 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는 총괄하는 곳이 BH에 일자리수석이 있습니다. 일자리수석을 통해서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한 것이지, 부처 간 협의는 일자리수석을 제일 헤드로 해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장관도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같이 고령자 고용이 활발한 나라들을 보면 최소 30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도 짧습니다. 그렇지요? 또 노인일자리아업을 시작할 때 들었던 지적사항에서 아직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2004년도에 시작해서 일자리의 양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개선이 못 되고 있고요. 또 구직 당사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노인일자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급박하게 서너 달 짜리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고요.

계약기간 몇 달 늘려 주고 단기 일자리만 양산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 차원의 예산운용계획하고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번에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3~4개월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노인일자리의 특성이……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10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겨울 비수기에도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추경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가능한 한 1년 내내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27만 원이라는 너무 낮은 임금을 가지고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어르신들이 재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자리 수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많습니다. 너무 지원이 많아서,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27만 원 단가를 두 배로 올려 갖고 54만 원으로 만들면 일자리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의 취업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고루 넓게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좀 좁게 해서라도 적은 분에게 줄 것이냐 하는 정책 선택상의 어떤 애로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자료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규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약리학적 작용상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사용 목적이나 효능 그런 것들이 선전 또는 일반 설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 사회인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예방 목적이나 또는 그런 기능의 효용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될 때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본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러면 우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아토피(atopy) 또는 아토피 프론 스킨(atopy-prone skin)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단지 수터블(suitable)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지요. 적절한가, 즉 아토피 또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의 피부에도 '다른 화장품보다 이런 화장품을 써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나라처럼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 속에는 일반적인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윤일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건조함과 관계되는 질병은 아토피만 아니고 아시타시피 여러 가지 질병이 많지요. 습진도 있고 건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토피라는 질병을 딱 명시해 가지고 마치 환자들에게 많은 치료가 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상당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환자가 중증환자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이유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용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정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 줘야 되고 약사법 규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완화 또는 개선이라고 하면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일규 위원 이게 지금 말하면 여러 가지 상품에 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규제를 하는 문제하고 정부가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화장품의 여러 가지 기능을 좋게 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원래의 기능보다도 마치 의약품인 양 환자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오는 것처럼 그런 오인을 안 받도록, 그것은 분명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구 간소화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손보험하고 문제인 케어를 통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편익만 먼저 하게 되면, 지금 이 두 문제가 합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외형적인 이런 편익만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점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의 총의료비가 4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의료보험에서 환불받는 돈도 있고 실손보험에서 보상받는 돈도 있으면서 환자가 치료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경제적 이득을 보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복보장에 대한 이런 문제도 해결되어 있지 않고 또 실손보험은 문제인 케어로 인해서 약 6%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것 이득 환수에 대한 정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지 않은 분들한테 외국처럼 충분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10% 정도 할인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과하게 쓰면 쓸수록..... 그런 심리적인 접근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풀어 가는 게 옳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국민 편의적인 문제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서류를 떼는 것을 보험회사하고 전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공·사보험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나중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世淵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약처도 그렇고 심평원도 그런 것 같아요. 심평원도 이제 의료계의 전반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안전처나 식약처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막대한…… 그런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한 겁니다. 함부로 권한을 휘두르거나 또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얽혀서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장으로서 역할들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이사장님은 누가 묻는 분들이 안 계셔서, 내가 물을 게 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김광수 위원 이번에 개각한다는데 입각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김광수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광수 위원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순수 소득비례로 가지 않으면 연금의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기금이 700조 원이 넘어갔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박능후 장관께서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잠깐 언급했다가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검토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기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맞는 말인지요? 둘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광수 위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연금개혁에 있어서 연금공단하고 복지부하고 엇박자를 내는 상황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특성

상 소득재분배 기능, 이게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폐지한다는 것은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넌 만큼 받아 가는 순수 소득비례 제도, 이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적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분의 입장들이 그러니까 이것 좀 서로 입장을 여기서 정확히 밝혀서 정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입장을 각각 좀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 김성주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그전에 잠깐 하나 좀…… 말씀 잘 정돈하십시오.

정돈하시기 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로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너무 슬프다’, 들어 보셨어요? ‘지난번 나 약 쓸 때는 안 주고 가만히 있더니’…… 이게 지금 공중보건의사의 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36개월 동안 군복무를 대신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잖아요. 리베이트가 아주 또…… 이게 지금 성관계를 암시하는 몸로비인데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성상남 리베이트 파장 이게 큰 게,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하고 의료계의 윤리의식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법 리베이트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까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단편적으로 보도되다 보니 여러 오해와 억측을 낳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소강상태에 빠져서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논의는 아무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언급을 한 것이고요.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을 제시해서 국회에다가 제출한 상태이므로 정부와 공단이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그 개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단의 소속원들도 참여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나온 것은 국회에 제출한 네 가지 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그 네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네 가지 안으로 집약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개혁안은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개혁안이 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약품 리베이트는 작년, 재작년 들어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리베이트 금액이 의약품의 경우에는 13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그게 36억으로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의료기기 부분이 2016년 이후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거의 한 30배 이상 그렇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는 이게 의료기기 분야에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분야는 아마 의료기기 분야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철저하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강구되면 의원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근 위원** 1차 질의 때 안 한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집중적인 대안, 집중적인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신약 허가심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력 문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은 우리보다 한 품목당 9배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깊이 있는 심사가 어렵습니다.

또 신약 판매허가 수수료도 문제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신약 출시가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수수료는 좀 올려도 인력을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처장님, 다행히 식약처가 허가심사 인력을 3년 안에 두 배로 늘리고 또 판매허가 수수료도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력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보도에 나온 그런 제안들이 현실화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님의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지금 상황은 너무나 부족한데 지금 상황을 얘기하세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지금 저희 식약처가 정규직이 2000명인데 계약직이 10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에 참여하는 인력 중의 한 60%는 계약직입니다, 물론 그중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의 책임성이라든지 전문성 향상 측면을 위해서 일단 공무원 인력의 확충 그리고 저희 수수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심사관들의 채용, 이런 어떤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저희가 앞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저한테만 부탁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해야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들께 깊이 부탁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다음은 처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권에 대한 WTO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1심 판정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승소 결과에 대해 식품안전의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이번 WTO 분쟁에서 승소를 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분쟁 대응에 최선을 다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성원을 해 주셔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더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스엔지바이오텍에서 제조·생산하는 인공혈관 스텐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언제 허가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승희 위원 허가 언제 나왔어요? 2007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2007년 이렇게 두 번에 나왔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제가 과거 일이라 허가 날짜를 모르는데 담당 과장……

○김승희 위원 아니, 됐어요. 2007년도경에 허가가 나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품목이 몇 개가 허가가 나왔는지 아세요? 247품목 정도 됩니다. 스텐트가 모양이 다르면 단일품목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지요? 모양을 바꾸거나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사이즈에서 구경이 달라질 때는 이게 굉장히 안전성과 유효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럴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김승희 위원 이게 몇 등급 의료기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승희 위원 몇 등급 의료기기냐고요. 이게 4등급이거든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이게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았어야만 되는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병원에 공급이 돼 가지고 환자한테 지급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지금 저희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한 8500명을 스텐트를 시술했고 비허가 품목이 한 1700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비허가·무허가 품목이 시술이 됐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일단 저희가 조치한 것은 무허가 스텐트를 다 수거를 해서 그것의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김승희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됴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것이 사실상 병원에 유통돼서 환자한테 적용이 됐으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판매정지 시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판매정지 시켰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이미 그것을 시술받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건보재정이 들어갔잖아요, 수가가 적용이 됐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포장은 똑같은데 그 안의 내용물이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기허가품목한테 하는 똑같은 박스에 다른 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것도 의사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게 100% 회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식약처가 조치한 게 뭐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성능을 시험했고요. 그다음에 환자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자한테 안전성 정보를 알리고 그다음에 그 환자와 관련된 장기 추적조사를……

○김승희 위원 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능시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별

써 무허가·비허가의 제품이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것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 환자한테 적용되고 그리고 이것에 보험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심평원에다 자료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된 것하고 비허가해서 보험재정이 된 것을 심평원에서 발라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라내서 그것은 그것대로 청구를 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복지부장관님, 이것 얘기 들으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잘 들었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요. 알고 계셨느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복지부가 어떻게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스텐트 시술을 한 환자하고……

○**김승희**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시간만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충분히 토론하겠는데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으로 해서 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얼마이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환수조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보험재정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러나 환자 수는 8522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발사르탄 문제도 마찬가지로, 발사르탄이 그때 대체조제 되는 바람에 보험재정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지금 보험재정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많은, 보험적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자라는 재정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돈들이 나간 것을 환수를 하는 조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야무야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발사르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한테 청구해 가지고 받으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부분은 우리가……

○**김승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식약처에서 위해성평가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른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많아서 제가 질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수율이 굉장히 적어요. 식약처와 복지부가 재정에 대해서 끝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리고 식약처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장관님, 저출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합계출산율이 0.98명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문 정부 출범할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사무처장이 업무추진 과정에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협의 조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책의 재탕에 재정을 쏟아붓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본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실무회의는 있었지만.

장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17명 중에 20대나 30대가 몇 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0대는 청년 1명으로 기억하는데 30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20대는 1명도 없고 30대만 1명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20대·30대 의견 반영이 정말 중요한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원회에서 20·30대 합해 가지고 1명밖에 없습니다.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해결책도 현실성 있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종필 위원 그 세대의 고민을 공유하지 않고는 해결방안이 나오기 어렵고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국가 존립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정례화시키고 대통령께서도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연령별·성별로 재구성하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기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회의에 대통령이 참석 못 하셨지만 재정전략 회의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몇 차례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러시더라도 한번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확고하게, 저출산에 대해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피력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리고 장관님, 조현병 환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종필 위원 조현병은 발병 초기에 개입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고 또 일상생활로 복귀할 확률도 높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정신질환자의 42%가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에 발병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기가 교육부나 여가부의 그거라고 관심을 덜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현병 관리의 적기, 골든타임 이 부분이 청소년기니까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확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항목을 실태조사에 꼭 좀 포함시켜 주시고 청소년 관련 부처와 협의하셔 가

지고 세부계획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종필 위원 청소년들의 조현병에 대해서 호주 정부가 헤드스페이스(headspace)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들어 봤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유사 기능을 가진 곳을 설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연결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종필 위원 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 고양,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위탁 운영에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어려움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조현병의 세계적 유병률이 1% 수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100명 중의 1명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가능한 질병이고요.

그래서 국민 정신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서 조현병 치료에 골든타임 좀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나 기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용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대책은 지난번에 임시 대책을 발표했었고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신질환 실태조사라든지 또 정신센터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제세 위원 장관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 등급제를 1·2·3등급 중증과 4·5·6등급 경증으로, 대체적으로 둘로 나눈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렇게 등급제 폐지를 하고 중증·경증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장애계에서는 찬성하고 만족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장애계에서 전반적으로는, 원래 등급제 폐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 요청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정책이 설계되었고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지만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불만을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주된 목적 내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하고요, 등급제에 따른 수혜 혜택이 다를 텐데 그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폐지를 요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폐지를 해서 결국은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서 혜택을 늘리는 데 따른 소요 예산을 한번 대충 산정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장애계에서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과거에 3등급에 해당했던 장애인들이 그때 과거 제도에서는 받지 못했던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급까지도 중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 늘어나야 될 예산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 주된 요망 사항인데, 그 두 가지를 장애계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늘릴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들어가는 합시다마는 비용 추산은 되어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추산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예산이 2016년에 1조 9000억, 2017년에 2조 600억 이고요, 2018년에 2조 2000억이 돼서 약 1500억이 늘고, 2019년에 2조 7800억 해서 560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조 3000억으로 해

서 5000억이 또 증가하는 걸로 부처에서 올렸는데 아직 심의는 안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 부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오제세 위원 5200억을 증액 요청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정도는 다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오제세 위원 반영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보니까 장애인 총예산이 2조 원 수준에서 2019년에 5000억이 늘고 내년에 또 5000억이 늘어서 약 1조가 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3조가 돼서, 아마도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혜택이 5000억 이상 돼서 연금과 활동지원 예산이 5000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등급제 폐지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한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아직 좀 더 미흡하다고 느낄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많이 부족합니다.

○오제세 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왜냐하면 장애계에서 요청하는 3급 장애인들, 과거의 3급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을 주려고 그러면 거의 1조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그 돈만.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늘어난 예산만 가지고도 실제 장애인당 평균 활동지원서비스가 7시간 늘어납니다. 현재는 102시간인데 1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바라보는 상대적인 차이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29%나 늘려 가지고 많이 늘렸다 생각하지만 장애계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너무 높으면 항상 실망이 따르듯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그만큼 부담을 엄청 많이, 요구가 높아지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확보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3차 질의하실 위원님들 파악을 하니까 일곱분이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식시간 없이 바로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자 위원** 장관님,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조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하고 양로시설만을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사망자 장례 목적으로 쓰였는지, 또 장례 후에 잔여재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중 중요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실태조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유류금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구 북구의 한 재활원이 유류금품을 부당 처리한 것이 인권위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양평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망자 예금을 장례 목적이 아닌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사망자 예금 잔액을 시설회계에다가 포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을 마감한 장애인은 1222명인데 이 중 친·인척, 상속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425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시설 사망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남긴 예금이라든지 물품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도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시설들에서 관련 지침을 숙지 못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지침 교육을 좀 정확히 잘 시켜서 유류금품 처리가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도 사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무연고자들이 사망했을 경우 유류금품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민법에 의거해서 저희들 지침에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자들이 그런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도자 위원** 지도점검도 지금까지 이런 시설에 안 나갔잖아요.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안 나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지침을 숙지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도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아까 저하고 논란을 일으켰던 공문 두 장 여기에 제가 갖다 댔습니다. 하루 전에 폐쇄조치를 했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5월 17일 자로 복지부에서 경기도로 내렸고요. 20일 자로 오산시에서 폐쇄명령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공문이 나가기 전날 폐쇄조치가 나갔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공문이 가기 전에 허가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안민석 의원의 녹취 중에 병원 취소시켜야 된다는 등의 내용은 ‘나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그러면 지금 안민석 의원이 장관님의 말씀을 팔면서 말씀 안 한 것을 하고 다닌 것이라고 제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안하신 거라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지요, 안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이것이 저희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까 녹취록이 나왔었잖아요. 안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됐습니다.

처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코스라는 쉐련형 담배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줄코리아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순례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업무보고 때도 ‘줄코리아가 오니 성분 유해성 검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진행을 하셨나요, 유해성 검사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이미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그 유해성……

○**김순례 위원** 명을 내리셨지요? 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런데 더 아주 위험한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줄랩스 흡폐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흡연자, 그러니까 JUUL을 피우는 사람하고 비흡연자의 어떤 생체적인 임상시험을 했더니 변화가 없더라. 그만큼 JUUL은 안전하다’ 이런 걸 가지고 줄코리아가 마케팅 선전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가 되는 것은, JUUL은 아주 스마트하고 슬립하면서 예쁜 향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약처 분석이 하루빨리 돼서 국민들에게, 지난번에 아이코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주 안전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코스에 중독이 되는 동안에도 우리 정부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JUUL 등 액상담배의 점유율이 10%가 증가될 때마다 우리는 세수를, 건강증진기금이 2000억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에서 지금 많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갖고 들고 와라 이런 내용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식약처에서는 즉장 대응이 아닌 발 빠른 대응으로 이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하셔서 한국 JUUL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지금 분석대상, 분석성분, 분석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별다른 말씀 없습니다.

○**김순례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장관님이 진실인가 안민석 의원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놓지 않고 다음 기회에 또다시 의견 제기…… 그 때까지 장관님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2차 질의 말미에 성형정보 앱 다 끝을 못 맺어 갖고요.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성형외과병원들에게 법 위반을 경고했고요. 그다음에 강남 보건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복지부의 견해는 뭡니까, ‘강남언니’ ‘바비톡’ 등의 성형정보 앱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환자 유인행위라든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의 위반행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복지부의 견해는 무엇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성형 앱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인순 위원** 예, 성형 앱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이게 과장 광고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해 봐야 하고 그리고 의료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서면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이라든지 환자 유인·알선 이런 부분은 의료법 저촉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이다라는 것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좀 질의할 텐데요. 지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제정법률안 2건이 공청회를 했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울·경기·경남·대구, 4개 광역시에 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이 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광역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총 11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145억 원을 예산편성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청회도 거쳤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요.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95억 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다 올리지 못한 게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할 거니까 이것 챙겨 주셔야 되는데, 보육교사·보조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95억 원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86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한 인력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급여감소 보전이 필요한데 이것도 1336억 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의 효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줄기세포의 응용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잘 개발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줄기세포의 효능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아직은 경계할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 이게 2004년에 황우석 사태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손혜원 위원** 그리고 그것이 사기라는 것이 이미 끝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치병, 난치병 치료에 쓴다라는 그런 핑계로 줄기세포 얘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참으로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치료하고 관계가 없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줄기세포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 말에 여러 가지 국정조사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된 황우

석 교수가 어떤 유력한 병원에 로비를 한 정황, 함께 들어 공동체로서 로비를 한 정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된 사항으로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규제 프리존과 규제 샌드박스하고는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프리존은 지역적인 개념이고요, 샌드박스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겁니다.

○**손혜원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의 재생의료 관련 규제완화 지원 내용에서 제가 이 규제 프리존과 규제 샌드박스를 한번 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송 지역 화장품회사들의 규제를 푼다라는 그 바이오의약 관련되는 것이, 이 규제 프리존의 화장품에 있던 것이 위로 살짝 올라가서 바이오의약 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화장품에 들어 있는 어떤 성분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한다든지 주름살 개선을 한다든지, 치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종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성분이고 그런 효능에 대한 얘가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치료하고는 달리 여기서 어떤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아무도 안 주셨나요?

○**위원장 金世淵** 예. 그냥 마이크 없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분하고 관계없이 효능을 측정하지도 못하는 화장품 쪽의 이 줄기세포를 갖고 규제를 풀어서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규제 프리존과 샌드박스가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기능성화장품의 표기사항이라든지 성분에 대한 설명 부분들을 완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화장품회사들이 몰려 있는 어느 지역에서 나왔던 규제 프리존이 이제 살짝 빠져서, 그 지역에서 빠져서 마치 샌드박스의 다른 내용인 척하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규제가 풀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정 기업의, 지난번에 국조에서도 증인으로까지 나왔던

어떤 분이 관련된 그 기업의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기업의 규제들이 풀어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전체를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아주 불길한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과 처장님과 그리고 이사장님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프리존이든 규제 샌드박스든 이것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지역 내에서 제한적인 기간 내에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해서 6개월이든 1년 뒤에 그것이 맞지 않거나 효과가 없으면 그것은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일반화될 것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안전이라는 것을 우회해 간다거나 그것을 허물어트려서는 절대 안 되지요.

○**손혜원 위원** 장관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이 치료로 갔을 때는 안전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화장품은 안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줄기세포의 효능을 과대포장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냥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화장품 허가할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 그러면 처장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줄기세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배양액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손혜원 위원** 배양액은 줄기세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좀 다릅니다. 저희가 안전성의 측면에서 세포 공여자로부터 질병 감염이라든지 제조공정의 오염 우려 이런 것들 다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허위·과대 광고도 식약처에서 사이버조사단

을 신설해서 그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지금 한번 온라인을 보십시오, 줄기세포가 어떻게 화장품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배양액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때 황우석 박사랑 함께 그 줄기세포에 관여했던 미즈메디의 노성일 원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줄기세포가 지나간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효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줄기세포가 가짜인 것같이 배양액도 그다지 큰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화장품에 무작위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효능을 지금 온라인에서 보시면요, 줄기세포 화장품을 한 번만 쳐 보십시오. 지금 식약처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신 건가 저는 의심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사들과 그리고 광고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것이 가격을 더 받으면서 뭔가 기능이 있는 척, 그 규제는 풀어지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그 기능에 대한 규제가 심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풀어 주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주는 사람인데 왜 그 규제 프리존을 그렇게 반대하던 대통령께서 샌드박스로 이렇게 이것을 풀어 주고 있는지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규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얘기인지, 그것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사실 19대 때 제가 줄기세포 화장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배양액을 사용한 것이었고 그 배양액이 효과가 있는지를 식약처에 질의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렇고.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 방식은 어떤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 방식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 허가를 받고 산업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규정하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간에 끊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먼저 설명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가 끊어졌는데 심평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을 연계해 가지고 생기는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포괄적인 관리 대책을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알겠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디스 십 코드를 작년에 어떤 재벌에도 적용을 했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버닝썬 때문에 난리가 난 YG라든지 또는 SM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주식 지분을 최근에 막 확대를 했습니다. 이미 문제가, 국민들 눈에는 과연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 될 것으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나중에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령화사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역사회돌봄이 빨리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선도사업을 불과 8개 지역만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해당 지역의 10% 정도의, 적어도 26개나 30개에 가까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장 사업을 빨리 올해도 같이 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의료법에 1인 1개소를…… 원래 한 사람은 한 병원에만 근무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만 진료하게 되어 있고 개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반 때문에 건보공단이 패소해서 그동안에 진료한 행위에 대해서 치료비를 돌려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1인 1개소의 개원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탈법해서라도 수익이 더 생기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막말로 이런 불법한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건보공단은 그동안에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계속 이것은 커져 가고 있는데 이제 사무장병원은 그동안은 규제를 했지만, 지난번 대법원 판례로 봐서는 앞으로 사무장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건보공단에서 그동안에는 환수조치를 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환수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게 해당하는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20개소를 개소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일반 지자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8개 시범사업을 하는데 한 45개 지자체에서 응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 추경안에 이것이 좀 반영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은 곧바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인 1개소 개업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은 환수 청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 위반으로 인한 환수는 없지만 의료법상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는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일규 위원 건보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우선 1인 1개소하고 사무장병원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1인 1개소 법 위반은 어쨌든 개설자는 의료인이고 의료인이 1개소 이상을 개설한 형태이고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판례를 사무장병원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법에도 1인 1개소 위반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5년 이하 징역, 2000

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료법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벌을 주는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보법을 적용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큰 벌이고 큰 죄를 지은 것인데 그렇게 했더라도 건보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충돌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2개 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일규 위원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은 환자가 정당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그 개설된 기관이 불법인가 문제를 떠나서 그 환자는 치료라는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료수가 자체는 배상을 해 줘야 된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개설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것은 분리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사무장병원이라는 그 문제도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정당한 의료행위를 해 가지고 그 이익을 환자가 취득했다면 당연히 그 이익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른…… 예를 들면 그 진료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개설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좀 요하고 저희도 법률적인 검토를 상세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컨대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것이 1000억이 지급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한 800억 정도는 정당한 의료행위에 의해서 지급된 것을 보상해 준 것인데 저희들이 환수율을 정할 때는 1000억 전체를 다 환수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률은 아주 낮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국민연금에서는 YG 그것 어쩔 겁니까? 머닝션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YG, SM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왜 투자를 확대하셨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들 엔터기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운용사들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위탁운용사가 특정 종목을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모니터링하면서 ESG 자문기관의 분석보고서를 참고해서 관련 기업의 등급을 조정했고요. 향후에도 관련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일규 위원** 저는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문제로 볼 때 그런 중요한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지금같이 소극적 태세로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많은 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탁한 것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는 답변을 갖고는 지난번에 대기업에 대해서 규제했던 것에 비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위원님. 같은 생각이구요.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요. 올해 첫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책임투자 원칙과 ESG를 확대 적용해 나가면서 새로운 원칙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데 또 별도로 4차 질의까지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3차 질의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장정숙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金世淵** 지금 아직 세 분이 남아 계셔서요.

○**장정숙 위원** 질문보다는 장관님의 확답을 좀

듣고 싶어서.....

○**위원장 金世淵** 그런데 지금 순서가 일단은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좀 마친 다음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장정숙 위원**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근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인재근 위원** 지난해 9월부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9월부터 했는데 시행 이후 12월까지, 9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18명 지원받았습니다.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고, 올 3월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의 실태 파악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발달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자들 공공후견인 사업에 비해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심판청구부터 심판결정까지 소요일이 너무나 깁니다. 신청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신중한 검증 절차도 중요하지만 치매노인들에게 하루빨리 공공후견인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으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후견 대상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후견 대상자를 65세 이상 중증 치매에만 한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60세 이상 경증까지도 다 포함을 시켰고 또 후견인도 만 60세 이상만 후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나이 제한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도 보다 쉽게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견 심판청구 심리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 같은 것을 좀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더 할 질의 많은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식약처장님께, 아까 제가 급하게 질의 마무리하다 보니까 조금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공혈관 스텐트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사람의 몸에 삽입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적합한, 커스터마이징드(customized)된 그런 제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로 다 품목허가를 받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분명히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됴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불법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에 어떤 심사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다시는 이렇게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든 아니면 우리 의원실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비허가 아니면 무허가된 제품이 실질적으로는 허가된 제품처럼 포장을 해서 지금도 시중에 유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협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을 좀 하셔서 이게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시리즈로 일괄 허가를 내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이 뭔지를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성능 평가나 이런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비허가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보사 문제 관련해 갖고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많이 하셔서 제가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약처도 그렇고 코오롱생명과학도 그렇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지금 자기네가 15년 동안에 그 세포가 신장세포인 것을 연골세포인 것으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위원장 金世淵 마이크 없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그 세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미국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임상시험을 한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 취소 되고 난 다음에 또 소송까지 했고.

그게 저는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런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대든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단호하게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식약처에 대해서도 의심과 또는 책임을 물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묻는 건 묻는 거라 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 자기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그게 바뀐지도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속인 거거든요. 그 속인 것을 왜 식약처는 발견을 못 했느냐라는 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미국의 FDA는 2017년도에 알았거든요. 식약처는 왜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오늘 제가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짚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이 짚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면으로 짚기에는 건보 관련 부분이 있어서 안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만 되고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분명히 잘할 수 있었는데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솔직히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방에 설명을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승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좋은 제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민해서 개선안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스텐트 의료 기기는 위반 제품 회수, 사용중지, 출하금지 이런 조치를 5월 9일 자로 했었고 더욱더 면밀히 점검해서 마무리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미국 FDA도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FDA는 알았는데 식약처는 왜 몰랐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것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이번에 많이 깊이 생각하고……

○**김승희** 위원 2017년도에 안 것은, 미국에 있는 티슈진이 그것을 안 것은 그러면 스스로 안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스스로 안 겁니다. FDA도 저희랑 똑같이 올해 4월 2일 자로……

○**김승희** 위원 그렇다면 스스로 알았다면 분명히 FDA의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스스로 알게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안 거지 그냥 안 건 아닐 거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저희가……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미국에서는 어쨌든 FDA가 알았든 티슈진이 스스로 알았든 알았는데 한국 코오롱생명과학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승희** 위원 그게 왜 한국에서는 몰랐고 미국에서는 알았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뭐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이렇게 한 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실사만 제대로 했어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10초만……

○**위원장 金世淵** 마무리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장관님, 의료 이용량 증가 관련 해 가지고 복지부가, 이것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 케어 관련인데요. 지금 의료 이용량 증가 관련해서 신포괄수가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희**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시켜서 신포괄수가제 확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신포괄수가제 확대한다고 그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승희** 위원 아니, 지금 부작용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의료량이 증가하고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한다는 것은 누차누차 지적한 것이고 의료 이용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했고 발표 당시에 42개이고 2018년도에 56개로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니까 문 케어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신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게 의료비 절감이 아니고……

○**위원장 金世淵**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승희** 위원 신포괄수가제가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금 현재 자료를…… 지금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世淵**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열의에 넘치시는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끊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 60조 1항을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국회법의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언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입장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되, 하여튼 저의 기본적 입장은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되도록 끊지 않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장관님,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한번 여쭙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편의점에서 ‘한정특가 출시 후 인상’이라는 이 마케팅 실시하는 담배 알고 계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4500원짜리를 3500원에 판매한다, 이것은 원가 이하 가격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결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가격 인상했고, 흡연을 낮추는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담배가격이 오름으로써 청소년 접근성 떨어뜨리는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마케팅이 성공을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장관님, 이 광고 금지시켜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가격을 할인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가격인하 광고문구 사용 자제하고 기재부하고 협업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약처장님, 인보사 사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 원인이 식약처의 관리 부실에 있다고 봤거든요. 식약처에서는 이 2억이 바뀌었는데도 왜 몰랐나 확인해 보니까 회사에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서 몰랐다, 그러면 식약처는 그동안 서류만 보고 허가해 줬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도 문제 지적이 있었고 식약처에서도 실사를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밝히지 못했다, 결국은 식약처의 관리 부실이 지금 사태를 일으켰다……

그래서 식약처는 앞으로 허가받은 대로 치료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마련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2의 인보사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스템 관리 제대로 해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아까 짧게 시간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장정숙 위원** 예, 1분이면 됩니다.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보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석 달 만에 장관님 뵙고 다 뵙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7호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제가 뽑았습니다, 방금 나가서.

산업기술혁신산업 공동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는 연구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뿐만 아니고 이번 인보사 관련 정부 R&D 지원 규모가, 아까 과기부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요? 산업부 등 정부에서 지원한 R&D 예산이 총 147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기업의 대국민 사기극에 허탈히 낭비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잖아요, 환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관련 부처랑 부서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거의 질문이 끝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사들 간의 발언시간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실 때 7분 5분 3분으로 하고 또 추가 1분 질의는 마이크 하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1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을 보니까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또 질의를 주고받습니다. 이 부분은 하던 얘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주고받는 이것은 저는 없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냥 1분을 확실하게 더 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언론 취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위원장님 권한하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질문시간 쓰고 답변 추가하면 또 시간이 늘어납니다. 원래 우리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어쨌든 한 개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운영에서 감안해 주시기를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金世淵 감사합니다. 잘 참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워낙 밀려 있던 현안들을 오랜만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다뤄야 하다 보니까 충분한 질의시간을 보장해 드리고 싶었다는 점을,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흐름상 같은 주제에 대한 보충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의 질문으로 간주를 해서 오늘은 그렇게 재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28건의 법률안 그리고 2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해당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 위원

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윤소하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7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기 동 민	김 광 수	김 명 연	김 상 희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승 희	남 인 순
맹 성 규	손 혜 원	신 상 진	오 제 세
유 재 중	윤 소 하	윤 일 규	윤 종 필
이 명 수	인 재 근	장 정 숙	최 도 자

○청가 위원(2인)

김 명 연 진 선 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종 희
전 문 위 원	이 지 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	관	박 능 후
기 획 조 정 실 장		박 민 수
직 무 대 리		강 도 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배 병 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양 성 일
인 구 정 책 실 장		대 변 인
		김 현 주

감사관	김혜진	의약품심사부장	서경원
국제협력관	정홍근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손수정
비상안전기획관	최태봉	의료기기심사부장	오현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의료제품연구부장	박윤주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독성평가연구부장	정자영
한약정책관	이창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이사장	김용익
의료보장심의관	최종균	기획상임이사	이익희
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장기요양상임이사	임재룡
보건산업정책국장	임인택	기획조정실장	원인명
해외의료사업지원관	김혜선	국민연금공단	
복지정책관	장재혁	이사장	김성주
복지행정지원관	정충현	기금이사	안효준
사회서비스정책관	이강호	연구원장	이용하
장애인정책국장	김현준	기획조정실장	류승락
인구아동정책관	고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정책관	곽숙영	원장	김승택
보육정책관	김상희	기획상임이사	김선민
연금정책국장	류근혁	개발상임이사	송재동
사회보장위원회	김서중	업무상임이사	강희정
사무국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장	지영미
직무대리	박금렬
기획조정부장	박염섭
감염병관리센터장	유천권
감염병분석센터장	박옥
직무대리	정호원
질병예방센터장	박현영
장기기식관리센터장	
생명의과학센터장	
유전체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경석
처장	김진석
기획조정관	백혜진
소비자위해예방국장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영욱
의약품안전국장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동희
원장	황인균
식품위해평가부장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개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2019. 4. 10.
전혜숙	인재근		2019. 6. 28.

○의안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019. 4. 3. 신동근·김철민·윤일규·이종걸·민홍철·기동민·서형수·이철희·이석현·남인순 의원 발의)

4월 4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2019. 4. 4. 윤종필·김명연·기동민·남인순·박덕흠·성일종·송석준·신용현·오제세·원유철·이철규·임이자·정우택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

(2019. 4. 4. 조웅천·김성수·박정·심기준·임종성·백혜련·최재성·신창현·김병기·윤관석·서형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5일 회부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4. 5. 김상희·정춘숙·기동민·신창현·송갑석·윤호중·윤후덕·소병훈·백혜련·고용진·인재근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김상희·정춘숙·기동민·신창현·송갑석·윤호중·윤후덕·소병훈·백혜련·고용진·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김상희·이규희·신창현·김세연·김병기·변재일·전재수·이인영·유성엽·기동민·원혜영·윤종필·인재근·정성호·김관영·박주선·박지원·오제세·안호영·윤소하·신경민·이상헌·정춘숙·심기준·송갑석·이상민·천정배·신동근·이용호·서영교·김종희·김광수 의원 발의)

간호·조산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김상희·이규희·신창현·김세연·김병기·변재일·전재수·이인영·유성엽·기동민·원혜영·윤종필·인재근·정성호·김관영·박주선·박지원·김광수·오제세·안호영·윤소하·신경민·이상헌·정춘숙·심기준·송갑석·이상민·천정배·신동근·이용호·서영교·김종희 의원 발의)

간호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김세연·김성찬·김영우·정용기·김기선·윤종필·나경원·김광립·김승희·이은권·정우택·박대출·정동영·경대수·오신환·이장우·이명수·송언석·유재중·송석준·이완영·박완수·이채익·김한표·박맹우·백승주·정성호·여상규·이만희·장석춘·김재경·권성동·김상희·이용호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김세연·김성찬·김영우·정용기·김기선·윤종필·나경원·김광립·김승희·이은권·정우택·박대출·정동영·경대수·오신환·이장우·이명수·송언석·유재중·송석준·이완영·박완수·이채익·김한표·박맹우·백승주·정성호·여상규·이만희·장석춘·김재경·권성동·김상희·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8일 회부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원혜영·이춘석·김정우·이원욱·김병기·김재원·김관영·정갑윤·송영길·김세연 의원 발의)

이상 7건 4월 9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4. 9. 김세연·박명재·유승민·김석기·김선동·김상훈·곽대훈·박완수·성일종·조경태·임이자·정진석·김규환·정태욱·이철규·김광수·이명수 의원 발의)

4월 10일 회부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0. 김철민·위성곤·전재수·신창현·

임종성 · 윤후덕 · 김민기 · 신동근 · 이석현 · 안호영 · 이찬열 의원 발의)

4월 11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1. 최도자 · 이동섭 · 이찬열 · 주승용 · 김관영 · 임재훈 · 채이배 · 황주홍 · 김종희 · 송석준 의원 발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이상헌 · 신동근 · 채이배 · 정춘숙 · 윤관석 · 김정호 · 정세균 · 최재성 · 박재호 · 서형수 · 이동섭 · 이인영 · 손혜원 · 송옥주 · 조승래 · 정인화 · 김병기 · 안민석 · 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2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2. 최도자 · 이동섭 · 김병욱 · 임재훈 · 채이배 · 황주홍 · 주승용 · 김종희 · 정세균 · 강훈식 · 이찬열 · 하태경 · 신용현 의원 발의)

4월 15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5. 최도자 · 이동섭 · 김병욱 · 임재훈 · 황주홍 · 주승용 · 김종희 · 정세균 · 채이배 · 신용현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김명연 · 박명재 · 박덕흠 · 안상수 · 정유섭 · 김광림 · 정갑윤 · 박인숙 · 홍철호 · 김성원 · 민경욱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5. 이정미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여영국 · 손혜원 · 박주현 · 채이배 · 김수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5. 임이자 · 장석춘 · 김용태 · 윤종필 · 원유철 · 문진국 · 유민봉 · 박인숙 · 김승희 · 최교일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5. 신용현 · 임재훈 · 권은희 · 채이배 ·

김수민 · 최도자 · 김삼화 · 이동섭 · 황주홍 · 이찬열 · 조배숙 · 윤종필 · 박선숙 · 장병완 · 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16일 회부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6. 성일중 · 추경호 · 김성찬 · 이명수 · 정인화 · 이채익 · 정세균 · 김한표 · 최연혜 · 송언석 · 김태흠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9. 4. 16. 장정숙 · 박찬대 · 김종희 · 최도자 · 김경진 · 유의동 · 천정배 · 정인화 · 황주홍 · 이찬열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6. 오영훈 · 박찬대 · 송영길 · 송갑석 · 김병욱 · 강창일 · 김병기 · 신창현 · 표창원 · 최재성 · 정인화 · 신경민 · 김철민 · 추미애 · 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7일 회부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이상돈 · 유승민 · 김동철 · 문진국 · 윤준호 · 유승희 · 박정 · 금태섭 · 한정애 · 황주홍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7. 김재원 · 윤상직 · 박인숙 · 박명재 · 박덕흠 · 최연혜 · 김석기 · 이명수 · 정태욱 · 박맹우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7. 김광수 · 윤소하 · 장병완 · 천정배 · 박주현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정인화 · 최도자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7. 김광수 · 윤소하 · 장병완 · 천정배 · 박주현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정인화 · 최도자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김광수 · 윤소하 · 장병완 · 천정배 · 박주현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정인화 ·

최도자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
김종대·김성수·김종훈·소병훈·이철희·
여영국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18일 회부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8. 추혜선·김성수·심상정·윤소하·
이정미·김종대·김종훈·소병훈·이철희·
여영국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8. 윤호중·신동근·민홍철·이찬열·
이학영·이원욱·김상희·전혜숙·강훈식·
김현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9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9. 신보라·윤종필·이명수·성일종·
곽대훈·백승주·문진국·조훈현·주광덕·
김석기·박덕흠·이철규·김종석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9. 신보라·윤종필·이명수·성일종·
백승주·문진국·조훈현·주광덕·김석기·
박덕흠·이철규·김종석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위성곤·정세균·서삼석·홍문표·
박재호·김현권·김철민·이찬열·황주홍·
심기준 의원 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9. 함진규·이현재·박덕흠·정유섭·
송언석·이현승·홍철호·박순자·윤종필·
이완영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박정·권칠승·송갑석·신창현·
백혜련·금태섭·소병훈·윤관석·김성수·
송옥주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위성곤·정세균·서삼석·홍문표·

박재호·김현권·김철민·이찬열·황주홍·
심기준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9. 윤종필·원유철·이명수·정우택·
성일종·박명재·박덕흠·박인숙·임이자·
이종명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송석준·성일종·문진국·유민봉·
정유섭·김순례·정종섭·정태욱·유동수·
김상훈·여상규 의원 발의)

이상 8건 4월 22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4. 23. 이찬열·전혜숙·이동섭·유승희·
황주홍·김철민·정성호·유동수·신경민·
위성곤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23. 기동민·조승래·신동근·윤일규·
정춘숙·김종민·박홍근·이용득·박정·
인재근·김경협·정세균·신창현·고용진·
전현희·김상희·우원식·신경민·맹성규·
박찬대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4. 23. 기동민·조승래·신동근·윤일규·
정춘숙·김종민·박홍근·이용득·박정·
인재근·김경협·정세균·신창현·오제세·
전현희·김상희·우원식·금태섭·신경민·
맹성규·박찬대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4. 23. 황주홍·김성찬·이찬열·김학용·
최도자·김태흠·변재일·권성동·전혜숙·
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24일 회부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9. 4. 24. 장정숙·박찬대·김종희·최도자·
유의동·정인화·황주홍·이찬열·전혜숙·
박지원·윤소하·정춘숙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4. 24. 김종희·황주홍·정인화·정춘숙·
강훈식·김수민·장정숙·김성찬·윤준호·
조배숙·유성엽·손금주·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5일 회부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4. 25. 정부 제출)

4월 29일 회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이명수 · 송영길 · 김명연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중 · 김선동 · 오제세 의원 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윤일규 · 안호영 · 조승래 · 이동섭 · 이용득 · 박홍근 · 윤호중 · 기동민 · 맹성규 · 신동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송옥주 · 이규희 · 이상현 · 금태섭 · 김성수 · 임종성 · 김광수 ·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30일 회부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4. 30. 이용호 · 장정숙 · 최도자 · 이찬열 · 주승용 · 정인화 · 조배숙 · 장병완 · 김종희 · 김광수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9. 4. 30. 유성엽 · 장정숙 · 김종희 · 김광수 · 정인화 · 윤영일 · 황주홍 · 박지원 · 조배숙 · 최경환(평) · 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백승주 · 박명재 · 강석진 · 추경호 · 신보라 · 이만희 · 이현승 · 김한표 · 박순자 · 김광림 의원 발의)

5월 2일 회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제윤경 · 신창현 · 민홍철 · 기동민 · 이규희 · 표창원 · 윤후덕 · 고용진 · 최재성 · 안호영 · 임종성 의원 발의)

5월 3일 회부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최도자 · 이동섭 · 김병욱 · 황주홍 · 조배숙 · 주승용 · 정세균 · 강훈식 · 이찬열 ·

천정배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경대수 · 김종희 · 김성찬 · 이종명 · 박덕흠 · 김현아 · 이명수 · 황주홍 · 민경욱 · 여상규 의원 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오영훈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5. 3. 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김영호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오영훈 · 임종성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 김영호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5. 3. 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김영호 · 박범계 · 송기현 · 인재근 · 박주민 · 윤준호 · 오영훈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7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5. 7. 김병욱 · 이찬열 · 박정 · 김성수 · 윤후덕 · 유은혜 · 조승래 · 김해영 · 변재일 · 권철승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정춘숙 · 인재근 · 윤일규 · 신창현 · 김성수 · 이상현 · 이인영 · 강훈식 · 장정숙 · 윤소하 · 채이배 · 김상희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박대출 · 김세연 · 김정재 · 조원진 · 박완수 · 김진태 · 박순자 · 이은권 · 이연주 ·

민경욱 의원 발의)

물리치료사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여영국 · 이정미 · 정춘숙 · 윤종필 · 박지원 · 김상희 · 이인영 · 정성호 · 오영훈 · 신창현 · 전해숙 · 기동민 · 김광수 · 최도자 · 김세연 · 김종대 · 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8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5. 8. 신창현 · 박완주 · 김영춘 · 유동수 · 맹성규 · 서삼석 · 표창원 · 심재권 · 송갑석 · 전재수 · 윤준호 · 노웅래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9. 5. 8. 강창일 · 강훈식 · 김종희 · 박정 · 송갑석 · 신창현 · 오영훈 · 유승희 · 윤후덕 · 이종걸 · 정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9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9. 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9. 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김상희 · 신창현 · 윤소하 · 이규희 · 인재근 ·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 정성호 · 김경협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김영호 · 유동수 · 기동민 · 신창현 · 강창일 · 송갑석 · 박홍근 · 조승래 · 고용진 · 김종민 · 박선숙 · 김성수 · 이규희 의원 발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석현 · 안규백 · 유승희 · 김영춘 · 이종걸 · 김두관 · 김부겸 · 박재호 · 김종민 · 민병두 · 조승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10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10. 윤상직 · 강석호 · 김순례 · 김종석 · 김태홍 · 성일중 · 신상진 · 유민봉 · 정유섭 · 정종섭 · 추경호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10. 권미혁 · 박정 · 김병기 · 전해숙 · 윤종필 · 김상희 · 이학영 · 박순자 · 정춘숙 · 박완주 · 제윤경 · 이철희 · 백혜련 · 남인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권미혁 · 박정 · 김병기 · 윤종필 · 이학영 · 전해숙 · 박순자 · 정춘숙 · 박완주 · 제윤경 · 이철희 · 남인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맹성규 · 강병원 · 강훈식 · 기동민 · 남인순 · 박정 · 박찬대 · 신창현 · 윤소하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3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5. 13. 윤상현 · 문진국 · 이은권 · 민경욱 · 서청원 · 성일중 · 이채익 · 주호영 · 정유섭 · 김성원 · 조원진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

(2019. 5. 13. 김현아 · 문진국 · 주호영 · 박덕흠 · 민경욱 · 이종명 · 염동열 · 이종구 · 조경태 · 송희경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9. 5. 13. 남인순 · 이규희 · 기동민 · 신창현 · 박홍근 · 송갑석 · 김성수 · 소병훈 · 김영호 · 맹성규 · 정춘숙 · 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4일 회부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강훈식 · 이원욱 · 안호영 · 윤관석 · 주승용 · 김종민 · 김경협 · 최인호 · 추미애 ·

송옥주·정춘숙·백혜련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윤일규·신동근·안호영·조승래·기동민·이동섭·이용득·이규희·강훈식·윤호중·박홍근·신창현·이석현·안민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윤일규·신동근·안호영·조승래·기동민·이동섭·이용득·이규희·강훈식·박홍근·신창현·이석현·안민석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윤일규·안호영·조승래·이동섭·이용득·이규희·강훈식·윤호중·신창현·이석현·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5일 회부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정인화·황주홍·이동섭·홍문표·유성엽·이상현·정유섭·천정배·이용주·위성곤·성일종·오영훈·윤영일·주승용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정인화·황주홍·이동섭·홍문표·유성엽·이상현·정유섭·천정배·이용주·위성곤·성일종·오영훈·윤영일·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회부됨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강훈식·이원욱·안호영·윤관석·김영진·주승용·김종민·김경협·윤영일·최인호·고용진·기동민·추미애·조웅천·송옥주·전혜숙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김영호·유동수·신창현·이규희·송갑석·김성수·소병훈·김해영·오영훈·임종성·인재근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정인화·황주홍·이동섭·홍문표·유성엽·이상현·정유섭·천정배·이용주·

위성곤·성일종·오영훈·윤영일·주승용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최도자·이동섭·황주홍·주승용·채이배·신용현·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광수·김종희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최도자·이동섭·황주홍·주승용·채이배·신용현·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광수·김종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김동철·이동섭·최도자·박주선·권은희·이찬열·채이배·김경진·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김선동·김용태·문진국·권성동·정갑윤·김재경·김세연·정운천·이철규·김중로·윤한홍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17일 회부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7. 김종민·송갑석·강훈식·김민기·원혜영·신창현·김성수·이규희·송옥주·박광온 의원 발의)

5월 20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금태섭·최인호·송옥주·강훈식·정세균·이철희·고용진·김민기·이춘석·이후삼·노웅래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금태섭·최인호·송옥주·강훈식·정세균·이철희·고용진·김민기·이춘석·이후삼·노웅래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금태섭·최인호·송옥주·강훈식·정세균·이철희·고용진·김민기·이춘석·이후삼·노웅래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신경민·김해영·박홍근·이철희·이규희·유동수·박광운·박찬대·전혜숙·김성수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신경민·김해영·박홍근·이철희·이규희·유동수·박광운·박찬대·전혜숙·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21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안규백·김중로·민홍철·제윤경·이상현·정재호·이원욱·김병기·김두관·김성찬·유승희·이훈·안호영·심기준·채이배 의원 발의)

5월 22일 회부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김세연·김경진·유승민·장정숙·이동섭·문진국·박인숙·이현재·윤소하·김선동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인재근·소병훈·김영진·송갑석·기동민·강창일·김영호·유승희·박선숙·김상희·오영훈·우원식·이규희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천정배·김광수·장정숙·이찬열·정인화·장병완·박찬대·윤영일·조배숙·유성엽 의원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김세연·이학재·김무성·문진국·정갑윤·정운천·원혜영·김명연·유기준·김현아·김상희·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3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유승희·권미혁·김경협·박선숙·박정·송옥주·송영길·윤후덕·이석현·이종걸·이찬열·한정애 의원 발의)

5월 24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5. 24. 김광수·김종희·박지원·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정춘숙·임종성·서형수·맹성규·윤후덕·김상희·조정식·박정·이용득·강훈식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윤영석·박명재·장석춘·이현재·김도읍·박맹우·정진석·최교일·정갑윤·김상훈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신창현·김병기·오영훈·박정·강훈식·김종민·서영교·백혜련·이종걸·노응래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김도읍·김태흠·김진태·추경호·곽대훈·이완영·주호영·이채익·정점식·여상규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27일 회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5. 28. 강훈식·서삼석·황희·이원욱·이규희·맹성규·안호영·김철민·김영진·김종민·민홍철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9. 5. 28. 유의동·주승용·최교일·정진석·황주홍·김중로·김성원·권은희·정운천·이명수·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9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김순례·서청원·윤상현·정유섭·안상수·황영철·함진규·홍문중·원유철·문진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이명수·박덕흠·박명재·이은권·김재원·김성찬·성일중·김선동·김성원·경대수·윤종필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전혜숙·이춘석·강훈식·김영진·안규백·이찬열·윤후덕·김병기·김관영·신경민·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전혜숙·이춘석·강훈식·김영진·안규백·이찬열·윤후덕·김병기·김관영·신경민·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전혜숙·이춘석·강훈식·천정배·안규백·이찬열·윤후덕·김병기·신경민·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김명연·정갑윤·주호영·문진국·박명재·김성원·김상훈·김승희·김무성·박완수·안상수·이완영·박덕흠·김재원·홍철호·이명수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김명연·문진국·김성원·김상훈·김무성·안상수·박인숙·박덕흠·정갑윤·홍철호·김재원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5. 30. 기동민·김민기·맹성규·유동수·홍익표·김상희·정춘숙·강훈식·윤일규·송갑석·김해영·인재근·김성수·신창현·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31일 회부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김광수·김종희·박지원·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9. 5. 31. 최도자·김종희·정동영·손금주·주승용·이찬열·황주홍·윤소하·정세균·이동섭·윤영일·김삼화·하태경·박선숙 의원 발의)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9. 5. 31. 정부 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이명수·박덕흠·박명재·이은권·김재원·김성찬·성일중·김선동·김성원·오제세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김광수·김종희·박지원·유성엽·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금태섭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최도자·김종희·정동영·손금주·주승용·이찬열·황주홍·윤소하·정세균·이동섭·윤영일·김삼화·하태경·박선숙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윤소하·김종대·이정미·여영국·추혜선·심상정·맹성규·인재근·최도자·김종훈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5. 31. 오영훈·강창일·정세균·이찬열·신창현·송갑석·이개호·김해영·인재근·박홍근·정인화·채이배·강훈식·김현권 의원 발의)

이상 9건 6월 3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6. 3. 김명연·정갑윤·주호영·문진국·김성원·김상훈·김승희·김무성·박완수·안상수·이완영·박덕흠·김재원·홍철호·이명수·김광림·성일중·김현아·민경욱 의원 발의)

6월 4일 회부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전재수·서형수·윤준호·정세균·신창현·신동근·박재호·최인호·김철민·정재호 의원 발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윤호중·윤관석·권철승·김현권·윤영일·이학영·박정·조정식·송기현·강훈식·기동민·송갑석·이찬열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019. 6. 4. 윤호중·윤관석·권칠승·김현권·윤영일·이학영·박정·조정식·송기현·강훈식·기동민·송갑석·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5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9. 6. 5. 남인순·신창현·강훈식·김철민·맹성규·이학영·이규희·정춘숙·김성수·박주민 의원 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유재중·이철규·이진복·윤상직·윤재옥·유의동·이양수·김세연·추경호·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7일 회부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신상진·원유철·문진국·송석준·이완영·윤상현·심재철·유재중·이주영·박명재 의원 발의)
6월 10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채이배·이동섭·박선숙·최도자·김삼화·정동영·유동수·이상현·강병원·김관영·추혜선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김명연·김재원·정갑윤·주호영·김세연·김승희·이명수·김정재·김성원·이학재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남인순·신창현·송갑석·이규희·소병훈·우원식·박홍근·이학영·김병기·김병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1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2. 신보라·추경호·김현아·김정재·박순자·이현재·송언석·장석춘·김석기·유기준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2. 신보라·추경호·김현아·박순자·이현재·송언석·장석춘·김석기·유기준·김정재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정태옥·김재원·곽대훈·김성찬·김진태·박인숙·윤상직·김상훈·이종배·함진규·민경욱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2. 최교일·박명재·김중로·김용태·김성원·경대수·박순자·서청원·원유철·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3일 회부됨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3. 이명수·김태흠·강석진·김명연·김승희·김성원·박명재·이은권·김성찬·성일종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정점식·정유섭·송언석·金成泰·김재경·송석준·최교일·김성찬·추경호·김현아·이은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4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신창현·송옥주·김병기·윤준호·소병훈·김영호·전재수·서삼석·전혜숙·김철민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이철희·강창일·권미혁·금태섭·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성수·김종민·김해영·남인순·맹성규·박정·송갑석·신동근·신창현·윤관석·이종걸·채이배·추혜선 의원 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윤일규·기동민·안호영·신동근·도종환·이용득·정춘숙·이석현·이규희·김병기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4. 김관영·박선숙·최도자·주승용·김삼화·임재훈·박주선·원혜영·이춘석·

김동철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4. 김관영·박선숙·최도자·주승용·김삼화·임재훈·박주선·원혜영·이춘석·김동철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맹성규·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영호·남인순·도종환·박찬대·이규희·전해철·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17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9. 6. 17. 최운열·심기준·고용진·강창일·박완주·김병기·채이배·윤관석·송갑석·김종민·기동민·유동수 의원 발의)

6월 18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8. 유의동·권은희·신용현·이혜훈·지상욱·유승민·정운천·하태경·이동섭·김삼화·채이배·오신환 의원 발의)

6월 19일 회부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박재호·이철희·김영진·최재성·김정호·전재수·위성근·송기현·김해영·민홍철·유승희·이용득·이상현·도종환·최인호 의원 발의)

6월 21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윤재옥·심재철·김도읍·추경호·민경욱·김정재·유민봉·백승주·유재중·조훈현·강석진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4. 윤상현·박덕흠·김성원·곽대훈·최연혜·심재철·이은권·성일종·정유섭·민경욱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최인호·이상현·정세균·윤준호·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웅천·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5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5. 인재근·소병훈·우원식·김영진·김상희·기동민·송갑석·이규희·박정·우상호·김영호·윤관석·오영훈 의원 발의)

6월 26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김영춘·송갑석·정인화·민홍철·이찬열·박홍근·신창현·김종민·채윤경·고용진·정동영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윤영석·박맹우·김도읍·김상훈·김태흠·박성중·정갑윤·박완수·윤재옥·서청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7일 회부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김광수·황주홍·정동영·이찬열·장정숙·유성엽·정인화·박지원·조배숙·이용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7. 신창현·기동민·김영춘·송갑석·이수혁·신동근·서영교·이석현·윤준호·김철민·노웅래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신창현·기동민·김영춘·송갑석·이수혁·신동근·서영교·이석현·윤준호·김철민·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8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유동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인재근·한정애·민홍철·우상호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

김상희 · 윤일규 · 송갑석 · 박홍근 · 이학영 ·
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회부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윤일규 · 신동근 · 서영교 · 김병기 ·
이석현 · 기동민 · 안호영 · 윤호중 · 정춘숙 ·
안민석 의원 발의)

7월 3일 회부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찬열 · 주승용 · 전해숙 · 유승희 ·
황주홍 · 김철민 · 이동섭 · 김광수 · 천정배 ·
김진표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찬열 · 주승용 · 전해숙 · 유승희 ·
황주홍 · 김철민 · 이동섭 · 천정배 · 장정숙 ·
김광수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이찬열 · 김철민 · 전해숙 · 윤후덕 ·
김삼화 · 이동섭 · 황주홍 · 박찬대 · 김광수 ·
위성근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윤일규 · 신동근 · 조승래 · 서영교 ·
김병기 · 이석현 · 기동민 · 안호영 · 윤호중 ·
정춘숙 · 안민석 의원 발의)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명수 · 김성원 · 유민봉 · 김명연 ·
박덕흠 · 윤종필 · 박명재 · 김성찬 · 성일중 ·
홍문표 · 김승희 · 김선동 · 이은권 의원 발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세연 · 김경진 · 유승민 · 이동섭 ·
김재경 · 윤소하 · 윤일규 · 신상진 · 윤종필 ·
전혜숙 · 박인숙 · 김명연 · 김승희 · 김병욱 ·
유재중 · 김순례 · 남인순 · 오제세 · 심상정 ·
이종걸 · 기동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7. 3. 김상희 · 윤소하 · 이재정 · 정춘숙 ·
맹성규 · 원혜영 · 기동민 · 신창현 · 한정애 ·

서영교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윤일규 · 서영교 · 이석현 · 안호영 ·
윤호중 · 정춘숙 · 안민석 · 김철민 · 강훈식 ·
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8건 7월 4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7. 4. 윤일규 · 신동근 · 조승래 · 서영교 ·
김병기 · 이석현 · 기동민 · 안호영 · 윤호중 ·
정춘숙 · 안민석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7. 4. 김상희 · 이규희 · 윤소하 · 정춘숙 ·
맹성규 · 원혜영 · 기동민 · 한정애 · 신경민 ·
서영교 · 김영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김상희 · 이규희 · 윤소하 · 정춘숙 ·
맹성규 · 원혜영 · 기동민 · 한정애 · 신경민 ·
서영교 · 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5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7. 5. 이용호 · 김광수 · 박주민 · 윤소하 ·
강훈식 · 유성엽 · 설훈 · 채이배 · 이찬열 ·
김종희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7. 5. 인재근 · 소병훈 · 우원식 · 김영진 ·
김상희 · 송갑석 · 이규희 · 기동민 · 오영훈 ·
박선숙 · 강창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7. 5. 인재근 · 김철민 · 송갑석 · 박선숙 ·
김광수 · 정세균 · 정춘숙 · 소병훈 · 강창일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8일 회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립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

(2019. 7. 8. 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림 의원 발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김광림 · 김석기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림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정춘숙 · 이규희 · 송갑석 · 윤소하 · 신창현 · 기동민 · 장정숙 · 전해숙 · 이상현 · 김성수 · 김상희 · 김영춘 · 고용진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여영국 · 김종대 · 이정미 · 김상희 · 정인화 · 정춘숙 · 김광수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여영국 · 김종대 · 이정미 · 김상희 · 정춘숙 · 김광수 · 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8건 7월 9일 회부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9. 이명수 · 이만희 · 엄용수 · 김성원 · 유민봉 · 김명연 · 박덕흠 · 윤종필 · 박명재 · 김성찬 · 성일종 · 김태흠 · 홍문표 · 김승희 · 박인숙 · 김선동 · 이은권 · 신상진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9. 이명수 · 이만희 · 엄용수 · 김성원 · 유민봉 · 박덕흠 · 윤종필 · 박명재 · 김성찬 · 성일종 · 김태흠 · 홍문표 · 김승희 · 박인숙 · 김선동 · 이은권 · 신상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7. 9. 정춘숙 · 이규희 · 송갑석 · 윤소하 · 신창현 · 기동민 · 장정숙 · 전해숙 · 이상현 · 김상희 · 김영춘 · 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0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김경진 · 천정배 · 김삼화 · 김동철 · 유동수 · 김성수 · 김종희 · 어기구 · 이종걸 · 성일종 의원 발의)

7월 1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광대훈 · 광상도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성태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엄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체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현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욱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경환(한)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4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민홍철 · 김정호 · 정인화 · 주승용 · 정성호 · 강훈식 · 이학재 · 기동민 · 전현희 · 최도자 · 안규백 · 홍의락 · 함진규 · 서형수 · 이동섭 · 윤후덕 · 안호영 · 여영국 · 추미애 의원

발의)

4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박성중·문진국·정태욱·정진석·
황영철·백승주·홍철호·박덕흠·윤종필·
김석기·송언석·성일중·박명재·박순자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
김종대·여영국·손혜원·박주현·채이배·
김수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
됨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박광온·김해영·윤준호·윤관석·
권철승·김두관·김종민·송갑석·송기현·
김병기 의원 발의)

4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진태·민경욱·황영철·박대출·
지상욱·이철규·윤상직·문진국·김선동·
정태욱 의원 발의)

4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김상희·기동민·신창현·윤소하·
이규희·김경협·김영호·인재근·서영교·
정춘숙·박찬대 의원 발의)

5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이양수·이철규·황영철·김진태·
송기현·권성동·김기선·심기준·염동열·
김현아 의원 발의)

5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하태경·김정재·강석호·박명재·
송언석·김석기·장석춘·최교일·백승주·
최도자·장정숙·김광림·김삼화·유승민·
손금주 의원 발의)

5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원혜영·김상희·김종민·이춘석·
윤영일·전혜숙·서형수·정갑윤·김철민·
김경협·김세연·인재근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홍익표·송갑석·김해영·이규희·
백재현·김민기·기동민·이재정·권미혁·
박정·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
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서형수·신동근·황희·강훈식·
이상헌·김경협·한정애·이용득·송옥주·
정춘숙 의원 발의)

5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9. 5. 28. 장제원·김선동·여상규·이종배·
추경호·주호영·김규환·이완영·권성동·
이학재 의원 발의)

5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윤재욱·추경호·유재중·박명재·
안상수·홍문표·김무성·김정재·곽상도·
유민봉 의원 발의)

6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윤상현·서청원·김순례·이은권·
정유섭·김성원·성일중·이완영·원유철·
박덕흠 의원 발의)

6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19. 6. 3. 감사원장 제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0. 정갑윤·여상규·김명연·김선동·
송언석·김관영·윤상직·주광덕·문진국·
이철규·박대출·권성동·윤종필·추경호·
김석기·김현아·김도읍 의원 발의)

6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9. 6. 17. 최운열·심기준·고용진·강창일·
박완주·김병기·채이배·윤관석·송갑석·
김종민·기동민·유동수 의원 발의)

6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신창현·기동민·김영춘·송갑석·
이수혁·신동근·서영교·이석현·윤준호·
김철민·노웅래 의원 발의)

6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
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
인재근·한정애·민홍철·우상호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 기동민·정춘숙·정세균·신창현·
김상희·윤일규·송갑석·박홍근·이학영·
인재근·한정애·민홍철·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
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

(2019. 5. 23. 정해하로부터 윤상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23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19. 6. 3. 정부 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